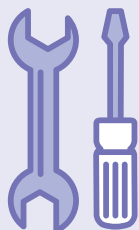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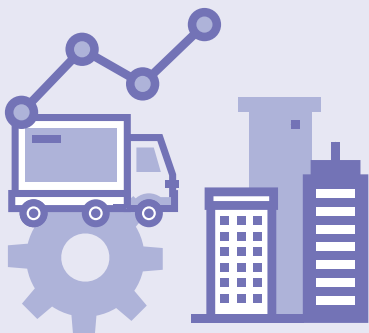




2021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CONTENTS

I 입지 가이드 개요

1. 입지의 선정	004
가. 입지 가이드 작성 목적	004
나. 기업의 입지결정 요인	005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	006
2. 산업입지의 이해	010
가. 산업입지의 개념	010
나. 산업입지의 유형	010
다. 공장총량제도	015

II 조성 목적에 따른 입지 안내

1. 산업단지	018
가.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018
나. 임대형산업단지	032
2.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역	037
가. 외국인투자지역	037
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047
다. 경제자유구역	049
라. 자유무역지역	065
3. 투자유치 중점 지역	072
가. 새만금	072
나. 기업도시	077
다. 제주특별자치도	096
4. 연구개발·기술·업종별 집적 지역	106
가. 연구개발특구(일반·강소형)	106
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14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126

라. 뿌리산업특화단지	138
마. 물류단지	144
바. 환경산업연구단지	147
사.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59
아. 벤처기업촉진지구	162
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63
차.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166
5. 국가균형발전 단지	171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71
나. 혁신도시	174
다.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177
6. 규제혁신 지구	190
가. 규제자유특구	190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196



입지관련 참고자료

1. 시·도별 개발계획	204
가. 시·도별 산업 발전 및 입지공급 방향	204
나. 시·도별 발전방향	214
2. 시·도별 입지현황	219
3. 유턴기업 지원제도	222
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222
나. 사후관리	224
다. 인센티브 요약	224
4. 산업안정을 위한 제도	226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26
나. 고용위기지역	228

입지 가이드 개요



1. 입지의 선정

▶ 가. 입지 가이드 작성 목적

- 좋은 상권을 이룰 때 흔히 '목이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때 '목이 좋다'라는 말은 위치가 좋음을 의미한다. 상권 뿐만이 아니라,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위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투자자에게 있어 입지의 선정은 투자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있어 어떤 입지가 좋은 입지일까. 입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좋은 입지의 요인을 비용절감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현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좋은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 그렇다면 투자가는 먼저 입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야 될 것이다. 본 가이드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고려중인 외국인투자가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전반적인 입지 제도 · 종류를 소개함으로써 입지 결정시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 우리나라는 1970년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국내 입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왔다.
- 지금까지의 입지 소개 방향에 더해 본 가이드에서는 국내 입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첫 부분과 마지막 참고자료로 산업입지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조성목적에 따라 최대한 많은 입지를 소개·수록 하려고 노력 하였다.

▶ 나. 기업의 입지결정요인

- 기업의 입지결정 과정에는 기업특성별(규모, 업종, 창업/이전 등)로 다양한 요인(기업내부 및 산업 환경적, 외부 정책적 요인 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조업을 비롯한 기업의 입지결정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지식기반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 산업화 시대에는 토지,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중시된 반면, 지식기반 시대에서는 지식과 인적자본 등이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즉, 과거의 생산비 관점의 비교우위에서 점차 혁신이나 학습,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과 제도, 협력과 신뢰 등 사회문화 및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기업의 입지결정은 산업별·업종별로도 그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입지결정요인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 전통 제조업은 노동공급, 교통, 부지, 원자재, 시장, 전력공급, 정부지원 등이 주요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 지식과 정보, 혁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신산업분야의 경우는 혁신의 발생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을 더욱 중시하며 가치사슬상의 각 단계별 기능 간 긴밀한 연계가 강조되면서 공간적 인접성을 중시하고 있다.
 - 대표적인 입지요인으로 전문기술인력의 풍부한 풀(pool) 형성, 연구개발 시설에의 접근성, 관련 산업의 집적도 등을 들 수 있다.
- 기업의 입지결정 과정은 공간 단위별로도 고려되는 요인이 상이하다.
 - 광역 단위의 입지 결정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특성 등 거시적 요인이 중시되고, 지역 단위에서는 교통 및 통신 등의 인프라, 노동 시장 여건, 교육 및 문화적 환경, 전후방 연관 산업에의 접근성 등이 중시되고, 장소나 건물 등 가장 세부적인 입지의 결정은 토지 및 건물의 개별적 속성이 중시된다.



▶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설립이 용이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개별입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주요 수요처와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계획 입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쉽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있다.
- 다만 국내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입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투자가가 영위하려는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종별 특성이 있는 다른 계획입지, 또는 개별입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산업입지

- 산업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 **(계획입지)** 산업단지로 대표되는 계획입지는 관련시설과 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 하에 지정·개발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공장(사업)부지 확보를 돕고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협력기업 및 인력 확보, 원활한 원자재·부품 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계획입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등 복합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 계획입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이 다양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종 관리 방식도 개별입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입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단지별로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 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지를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각 개별법을 따른다.

- 같은 맥락으로 산업단지가 모든 입지 유형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지역을 산업단지에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특수목적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인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다.
-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계획적으로 지정·개발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외의 토지나 도시·주거지역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했을시, 직접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 제조업종의 사업을 위해 개별입지를 선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지역일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2)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 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입주자격, 인센티브가 거의 흡사하며, 인센티브 적용에서 일부 다른점이 있다.
-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 구역으로도 활용된다.
- 자유무역지역 :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3) 기타 입지

가) 투자유지 중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에도 새만금,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새만금은(2018.4.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 새만금 특별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연구개발·기술·업종별 집적 지역

연구개발·기술·업종별로 산업단지와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산업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과 특화, 연계산업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정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산업기술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벤처기업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등이 있다.

다) 국가균형발전 단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산업입지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에 포함된다.

라) 규제혁신 지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과, 특정산업의 혁신기술에 규제특례, 규제혁신을 적용하여 지역별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투자자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

계획입지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임대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 지역	새만금,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기술·업종별 집적지역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산업기술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벤처기업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국가균형발전 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규제혁신 지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별입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공장건축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운영	

* 상기 분류는 본 가이드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분류한 것임

※ 참고자료

조혜영 외(2013), 제조업의 입지결정 요인분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2. 산업입지의 이해

▶ 가. 산업입지의 개념

- 산업입지(location of industry)란 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며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입지정책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산업입지정책 관련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산업입지의 유형

- 산업입지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계획입지와 기업이 스스로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개별입지로 분류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를 크게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입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계획입지

- 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다수의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입지이며, 대부분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 계획입지의 개발과 조성은 후진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 지역별 계획입지 개발은 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 계획입지는 기업이 산업용지를 쉽고 간편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의 협동화·계열화 촉진 등에 유용한 입지로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한정된 국토를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지역간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에 기여한다.
 - ② 유사업종 또는 관련 산업을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의 협동화와 계열화를 촉진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③ 제조시설과 관련된 연구·교육·유통·복지시설 등을 인근에 배치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④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로·항만·용수·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반시설 투자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적절한 녹지공간과 각종 지원시설 등이 확보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⑥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⑦ 관련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용지의 수용이 가능하며 국·공유지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2) 개별입지

- 개별입지는 산업입지 중에서 계획입지를 제외한 입지로서 개별 기업이 스스로의 필요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개발한 모든 산업입지를 의미한다.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부지조성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개별입지의 위치가 결정된다.



- 개별입지 제도는 산업단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입지의 자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개별입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개별입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교

- 입지유형에 따라 설립절차, 입지여건, 토지이용의 용이성, 기반시설의 정비,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있어서 상대적인 강·약점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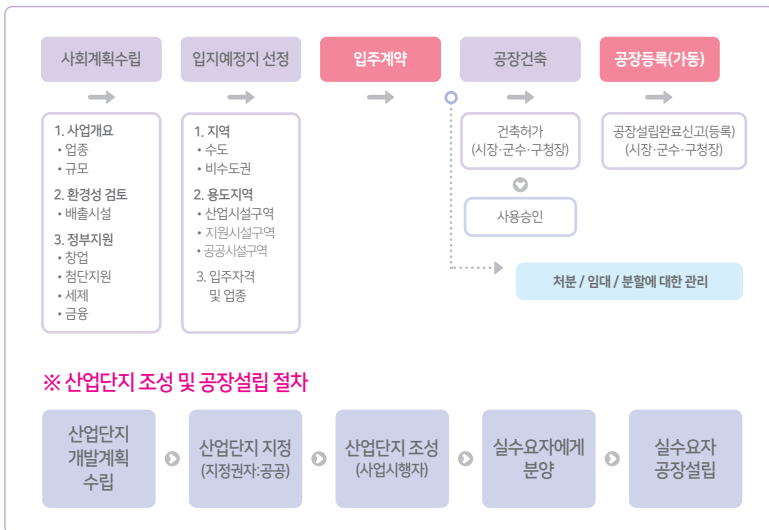
구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목적	국가, 지방의 계획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기업입지 수요의 탄력적 대응과 유희토지의 적기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 산업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 ·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적용 ·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 면제 · 공동방지사설 설치로 공해배출업종 입주 용이 · 집적화로 기업상호간 정보·기술교환 용이 ·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클러스터 활성화 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산업집적으로 인한 상권 형성, 경제적·문화적 혜택 · 신개념 산업단지(융복합산단, 스마트산단 등) 활성화시 분양률 및 고용증가 기대 · 공장시설의 집단적 배치로 사회적 비용·환경문제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 ·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 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 · 계획입지에 비해 업종 제약 약함 · 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탄력적인 입지확보) · 공장용지의 처분, 확장(증축) 용이 · 첨단기술업종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로 선택이 용이 · 기업규제완화 등 공장설립규제의 완화 · 지자체별 지원정책 강화 · 입지관련 규제법령의 완화추세 · 취업난에 따른 구직인력의 증가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단지개발로 적기·적소에 확보 곤란 · 개별입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격 · 입주 후 공장 등 시설확장 한계 · 입주업종 제한 · 공장부지의 매각 등 처분 제한 · 주변 공장과의 임금수준 및 후생시설 등의 차이로 근로자 만족도 저하 우려 ·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산업단지 분양률 저하 우려 · 분양률 저하 장기화시 금융비용 증대 · 산업단지 증가로 따라 입주업무의 일관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 공장부지의 용도 전용이 어려움 · 기업 간 정보교환에 제약 · 계획입지에 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부족 · 산업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및 교육·문화 등 지원시설 미비 · 입지주변의 환경요소 통제 곤란 · 부동산경기 불안정에 따른 지가변동 · 공장설립 반대 민원의 소지(마찰시 장기 간 소요) · 환경관련 법규의 강화와 오염원의 개별 처리 비용 증가

4) 입지유형별 공장설립 절차

(1)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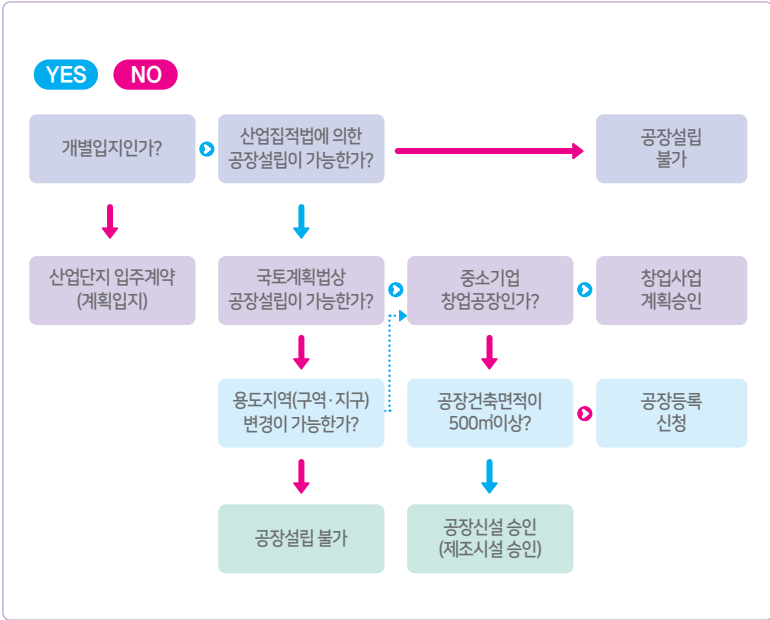


(2) 산업단지(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3)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검토

공장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와, 개별·계획입지 관리 담당부서는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 가능여부, 환경관련 규제 등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 다. 공장총량제도

1) 수도권외의 공장입지 제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를 말하며,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외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분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공업지역의 지정 ·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등 예외 가능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 ·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 ·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행위제한 완화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3·별표1·별표2·별표3



[수도권권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안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삼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성리·죽흥리·하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향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간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월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술리·내강리만 해당)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3. 용인시(김광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흥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2) 총량규제

가) 목적과 법적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2018년~2020년)

구분	수도권(천㎡)	서울특별시(천㎡)	인천광역시(천㎡)	경기도(천㎡)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외의 공업지역	1,982	25	502	1,455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다)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5~'17)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집행조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 참고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조성 목적에 따른 입지 안내



1. 산업단지

▶ 가. 산업단지(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1) 조성목적 및 종류

가)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교육연구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산업단지 종류별 기본개념]

구분	내용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절한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 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산업입지법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자료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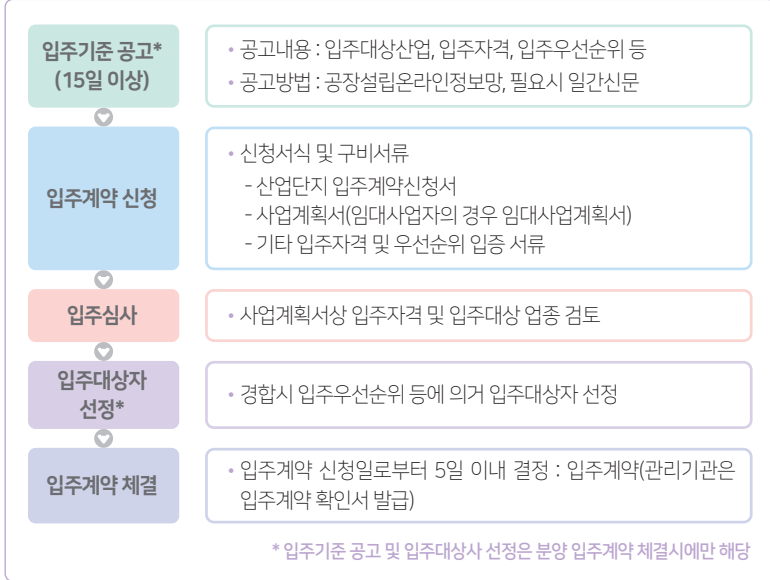
**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약칭

2) 주요특징

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산업집적법 제38조).

[입주계약체결 절차]



나) 산업용지는 처분에 제한이 있다.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산업집적법 제39조, 시행령 제49조).

산업용지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시 취득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가능).

(2)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 경과 후 처분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동일업종* 영위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가격제한이 없으므로 시세를 적용한다.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함

다) 산업단지(산업용지) 내에서의 임대업에 제한이 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은 그냥 임대할 수 없다. 공장 전체를 임대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기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전환 가능)을 해야 한다. 부분 임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공장등록, 사업개시(비제조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만 가능하다. 미등록 공장을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공장등록이 불가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할 최소 면적이 있다.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한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다만, 관리기본계획 등에 1,650㎡ 미만으로 분할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마) 관리기관은 입주기업과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산업집적법 제42조).



입주계약 해지사유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
 - * 정당한 사유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②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③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 ④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장(사업장) 소재지(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을 변경한 때
- ⑤ 법 38조(입주계약 등), 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에 따른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⑥ 임대사업 또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 ⑦ 산업용지의 분할규정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바) 다른 법령으로 산업단지 내에 또 다른 용도로 추가 지정이 가능

예를 들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단지에 지정한다. 산업단지 내에 또 다른 특별지역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구미국가 제4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품 소재형 외국인투자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이런 특징 때문에 같은 산업단지라도 규제가 다른 구역이 여러 곳 존재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리기관에 정확한 규제관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사) 산업단지에는 5가지 구역의 구분이 있다.

산업단지는 5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다.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복합구역인데 이 중 제조업이 가능한 구역은 산업시설구역과 복합구역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들기



전에는 그곳이 공장 운영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업종에 따라 기업 입주를 제한한다고 하는 구역이 바로 산업시설구역으로 공장이 밀집된 구역이다.

아)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관리된다.

산업단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이라고 한다.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산업집적법 제33조). 관리기본계획으로 알 수 있는 중요 사항은 해당 구역에 어떤 업종의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등 업종과 건축물이다. 이 외에 관리기본계획 마다 다르지만, 최소 필지 분할면적이나 분양 한도를 명시해 두기도 하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건축물의 외관 등을 관리기본계획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각 산업단지별로 관리기본계획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기본계획은 꼼꼼이 읽어봐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 판단은 관리기관에서 한다.

*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https://www.industryland.or.kr>)에 접속하여 ‘산업단지 ➔ 산업단지 고시 / 공고’에서 검색 가능.

참고사항

관리기관의 업무는 공장과 관련하여 핵심 사항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해당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산업단지마다 규정되어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가능 업종, 업종별 배치 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기관은 이 관리기본계획으로 기업의 입주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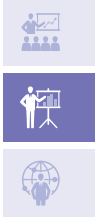
다만, 지자체가 아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임대, 분할, 매각 정도를 중점 업무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무 대부분은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로 관리, 녹지지역 관리, 환경규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다. 즉, 관리기관이 하는 일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3) 산업단지 지원사업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내용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산학 연합의체 구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R&D 공동과제를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장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서비스(기업진단, 과제해결지원, 정책연계, 중견 기업육성 등)를 제공함
구조고도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WL 밸리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11년부터 민, 관 합동의 'QWL 밸리 펀드' 사업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대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공장 건축물 등의 기능향상과 외관개선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실내건축 등 재개발 사업비를 지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부족한 기업 기술·경영 등 관련 혁신지원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건물을 구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산업단지의 청년 유입 기능 강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리를 지정, 특화 디자인이 적용된 산업단지형 미관거리를 조성함



사업명	내용
산학융합지구 및 캠퍼스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융합지구 -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해 학교와 기업, 학생과 재직자가 참여하는 기업 수요 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구조고도화사업 대상단지 및 혁신산업단지(시범사업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됨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만으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고용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대학-기업 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추진됨
지방투자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 -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해 일부 지원 · 세제지원 - 지방이전기업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 · 금융지원 - 한국산업은행에서 이전 기업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지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재자원화 실증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를 보급하고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이 높은 범용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다수 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단지형) 산업단지 공동활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의 설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산업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오페수처리장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간 온실가스 감축 연계시스템(공동이용 에너지사용 설비, ESS 등)을 지원함 - (개별형) 산업단지 입주기업 내 노후화 설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로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4)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가) 세제지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대장치가 있는데, 그 중 각종 세제 우대조치가 가장 일반적임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지입지 유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조특법 및 지특법에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관련 조세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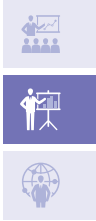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산업단지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 감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 경감 위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75%) 감면 	지특법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지정일로부터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조특법 제64조



[지방이전 관련 조세지원제도]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공장의 지방이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021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면제 •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특법 제80조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 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조특법 제60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 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불산입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조특법 제61조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p>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p>	<p>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p>조특법 제63조</p>
<p>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 으로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2023년 12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50% 감면 	<p>조특법 제63조의2</p>
<p>법인의 지방이전</p>	<p>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021년 12월 31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 면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p>지특법 제79조</p>



나) 금융지원 종류

-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②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⑤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융자

5) 지정현황

(1) 유형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

단지유형	단지수 (개)	지정면적 (천㎡) 용	산업시설구역(천㎡)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47	806,620	285,324	250,185	241,590	8,595	96.6
일반	676	531,882	322,608	255,299	236,468	18,831	92.6
도시첨단	30	8,297	4,267	1,979	1,356	623	68.5
농공	472	76,716	57,967	56,066	53,543	2,523	95.5
총합	1,225	1,423,515	670,166	563,529	532,957	30,572	94.6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20년 3분기

** 전체면적은 미개발면적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미개발면적 제외), 분양률은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임



(2) 지역별 산업단지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계
서울특별시	1	2	-	-	3
부산광역시	1	30	4	1	36
대구광역시	1	16	2	2	21
인천광역시	2	12	2	-	16
광주광역시	2	9	1	1	13
대전광역시	1	3	-	-	4
울산광역시	2	22	-	4	28
세종특별자치시	-	12	1	4	17
경기도	5	170	8	1	184
강원도	1	24	4	44	73
충청북도	2	78	2	43	125
충청남도	5	59	3	92	159
전라북도	6	22	1	59	88
전라남도	5	30	1	68	104
경상북도	6	72	-	69	147
경상남도	9	114	1	81	205
제주특별자치도	2	1	-	3	6
계	47	676	30	472	1,229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20년 3분기

** 국가산업단지 중 2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산업단지(4개 단지)의 경우, 각 지역에 별도로 집계하여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이 유형별 산업단지 현황보다 4개 많음

- 4개 단지 : 한국수출산업단지(서울·인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광주·전남), 아산국가산업단지(경기·충남),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경남)



(3) 지역별 산업단지 지정 및 분양현황

(단위 :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서울	국가	1	1,925	1,448	1,448	-	100
	일반	2	1,282	853	667	186	78
부산	국가	1	8,841	4,317	4,317	-	100
	일반	30	33,591	16,976	14,841	2,135	87
	도시첨단	4	946	133	133	-	100
	농공	1	258	189	189	-	100
대구	국가	1	8,559	-	-	-	-
	일반	16	35,285	18,246	17,434	812	96
	도시첨단	2	316	98	18	80	18
	농공	2	353	293	293	-	100
인천	국가	2	11,361	7,377	7,377	-	100
	일반	12	9,165	4,908	4,811	97	98
	도시첨단	2	1,404	516	171	345	33
광주	국가	2	11,838	2,643	2,643	-	100
	일반	9	20,100	9,896	9,896	-	100
	도시첨단	1	486	-	-	-	-
	농공	1	324	262	262	-	100
대전	국가	1	67,809	4,398	4,398	-	100
	일반	3	3,479	1,787	1,787	-	100
울산	국가	2	74,383	51,138	51,138	-	100
	일반	22	15,264	6,198	5,893	305	95
	도시첨단	4	592	458	458	-	100
세종	국가	12	8,205	4,638	4,507	131	97
	일반	1	898	228	140	88	61
	도시첨단	4	563	439	439	-	100
경기	국가	5	172,181	30,299	30,299	-	100
	일반	170	70,065	33,402	32,144	1,258	96
	도시첨단	8	1,554	378	351	27	93
	농공	1	117	117	117	-	100
강원	국가	1	4,030	1,226	1,148	78	94
	일반	24	14,472	7,526	6,412	1,114	85
	도시첨단	4	352	113	107	6	95
	농공	44	7,019	4,945	4,686	259	95

(단위 :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시설구역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충북	국가	2	8,806	2,507	2,507	-	100
	일반	78	67,131	26,374	25,578	796	97
	도시첨단	2	263	188	111	77	59
	농공	43	6,223	4,992	4,851	141	97
충남	국가	5	28,139	11,555	8,485	3,070	73
	일반	59	68,953	36,765	35,334	1,431	96
	도시첨단	3	1,633	204	204	-	100
	농공	92	14,750	10,573	10,364	209	98
전북	국가	6	86,970	20,682	19,166	1,516	93
	일반	22	33,585	21,071	19,121	1,950	91
	도시첨단	1	110	39	39	-	100
	농공	59	11,110	8,331	7,399	932	89
전남	국가	5	174,890	50,302	50,050	252	100
	일반	30	39,600	18,871	13,859	5,012	73
	도시첨단	1	190	-	-	-	-
	농공	68	11,488	7,738	7,373	365	95
경북	국가	6	83,853	34,256	30,577	3,679	89
	일반	72	47,945	22,103	21,307	796	96
	농공	69	11,701	8,640	8,218	422	96
경남	국가	9	61,088	27,662	27,662	-	100
	일반	114	63,563	25,597	22,789	2,808	89
	도시첨단	1	145	82	82	-	100
	농공	81	11,906	8,849	8,654	195	98
제주	국가	2	1,947	375	375	-	100
	일반	1	197	88	88	-	100
	농공	3	312	240	240	-	100
계	국가	47	806,620	250,185	241,590	8,595	96.6
	일반	676	531,882	255,299	236,468	18,831	92.6
	도시첨단	30	8,297	1,979	1,356	623	68.5
	농공	472	76,716	56,066	53,543	2,523	95.5

*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2020년 3분기

6) 문의

- 국가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000)

* 새만금, 자원비축기지 등 일부 국가산단 제외

- 제외산단

: 대덕연구개발특구, 동두천, 보은, 고정, 대죽자원비축, 새만금지구, 전주탄소소재, 삼일자원비축, 빛그린(전남구역), 월성전원, 옥포, 죽도, 지세포자원비축, 명지녹산(녹산-주거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 제주천담과학기술2단지

- 일반·도시첨단산단·농공단지 :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관리 부서

7)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단지공단(<https://www.kicox.or.kr>)
- 산업입지정보센터(<https://www.industryland.or.kr>)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나. 임대형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는 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을 위해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지역으로 보통 산업단지 내에 일부 지정된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

가) 개요

(1) 기본개념

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최장 50년 까지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임대

(2) 조성목적

중소기업 및 U턴기업 등의 투자활성화 및 입지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기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3)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지정, 운영하려는 경우 지정계획 수립 후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를 거쳐 지정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전경]



포항블루베리국가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나) 주요특징

(1) 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의미하며, “유턴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의미

(2) 안정적인 임대기간

임대전용산업단지는 5년 단위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3) 입주대상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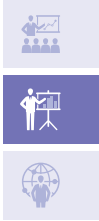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지정된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입주업종이 정해지며,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경우 우선 입주가 가능

(4) 저렴한 임대료(공급가격의 3% 수준)

연간 임대료를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3%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고지원을 받는 경우 1%까지 인하가 가능하며, 매년 지가변동률에 연동함

(5) 기타사항

- ① 임대계약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므로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산업단지의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따라간다.
- ② 일정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다) 인센티브

(1) 조세감면(산업단지 인센티브와 동일)

구분		내용	비고
입주 기업	국세 법인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3년이상) → 수도권 외(광역시외의 경우 산업단지限)로 이전시 법인세 감면 - 1+6년간(광역시 이전시 1+4년간) 전액, 그 이후 3년(광역시 이전시 2년) 50% 경감 	조특법 제6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균분 -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로 이전시 공장 대지, 건물 양도차익을 2년후 2년간 균분 	조특법 제85조의8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 산업용 건축물(부속토지) 등 취득시 50% 경감(~22년말) • 재산세 - 산업용 건축물(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5년간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경감 <p>* 지자체에서는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추가 경감 가능</p>	지특법 제78조

(2)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초기 임대료가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3%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년 1년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어 임대료가 책정된다.(2007년 이전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공급가격의 1% 수준) 따라서 산업단지의 높은 지가가 부담스러운 기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설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산업단지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지정현황

임대유형	지구명	소재지	지정면적(천㎡)	지정년도
임대전용 I (’06~’07)	북평공단	강원도 동해시	93	2007
	제천산단	충청북도 제천시	82	2007
	군장군산3	전라북도 군산시	983	2006
	전주첨단	전라북도 완주군	53	2007
	대불공단	전라남도 영암군	326	2006
	포철4연관	경상북도 포항시	605	2006
	사천	경상남도 사천시	392	2006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331	2007
임대전용 II (장기임대) (’08~)	남양주팔아	경기도 남양주시	31	2008
	부천오정산단	경기도 부천시	30	2008
	오산가장2	경기도 오산시	304	2008
	충주산단	충청북도 충주시	217	2008
	석문국가	충청남도 당진시	468	2009
	장항국가생태	충청남도 서천군	319	2009
	군장군산3	전라북도 군산시	355	2008
	전주첨단	전라북도 완주군	69	2008
	정읍첨단	전라북도 정읍시	196	2009
	광주첨단2	광주광역시 북구	581	2008
	대구테크노	대구광역시 달성군	571	2008
	영천산단	경상북도 영천시	257	2009
	경산진량2	경상북도 경산시	42	2008
	포항블루벨리	경상북도 포항시	500	2020
	창원일반	경상남도 창원시	232	2009
	밀양사포	경상남도 밀양시	294	2008

* 수자원공사에서 임대전용 1차 운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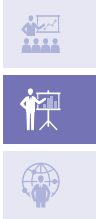
마)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23)
* 구미, 사천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바)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46조의7, 동법 시행령 제47조의6~제47조의7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 운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4호)
-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 구미, 사천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참조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2) 국민임대산업단지

가) 조성목적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에 소재한 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미분양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 현재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제도로, 추가적인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정이 없는 상태

나) 특징

임대전용산업단지와 유사한 제도로써 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운영중에 있다.

다) 지정현황

[국민임대산업단지 현황]

단지명	소재지	지정면적(천㎡)	지정년도
달성2차(구, 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71	2003
강릉과학	강원도 강릉시	377	2003
맹동(임대전용)	충청북도 음성군	419	2003
계룡1(구, 입압)	충청남도 계룡시	180	2003
해룡	전라남도 순천시	209	2003
나주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299	2003
광양명당	전라남도 광양시	174	2005
진주(구, 사봉)	경상남도 진주시	181	2003
구미(4단지)	경상북도 구미시	144	2003
여수국가	전라남도 여주시	300	2003
군산2(구, 군장)	전라북도 군산시	137	2003
북평	강원도 동해시	11	2003
전주과학	전라북도 완주군	119	2003
제천	충청북도 제천시	57	2003
대불	전라남도 영암군	137	2003

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23)

* 달성2차 ~ 여수국가는 해당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일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마)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2.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역

▶ 가. 외국인투자지역

1) 개요

가) 기본개념

외국인투자지역은 공장용지 매입을 원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나) 조성목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다) 지정절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전경]



구미(부품)외국인투자지역



대불외국인투자지역

2) 세부유형

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외국인 투자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4년 도입하였다.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현재는 임대 목적으로만 입주가 가능하다.



가-1) 부품·소재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한 유형으로 일본 및 독일 등 첨단 부품·소재 기술을 가진 외국인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8년에 제안되어 도입되었다.

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대형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개의 공장 단위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시설 등 서비스 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3) 입주자격 및 지정요건

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제11조제4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축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일 것.
5.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1) 지정기준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2) 지정요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투자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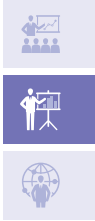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금액기준	업종기준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다) 서비스형

(1) 지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구분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 상 투자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관광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3, 별표4

(2)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고금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4) 주요특징

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만 입주(임대) 가능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되려면 '1억원 이상 투자 & 지분의 10%이상 보유' 하거나 '1억원 이상 투자 & 외국인이 기업 주식 등 소유 & 기업에 임원파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참고).

* 세부기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참조

나) 장기 임대형으로 운영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이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입주대상 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 허용 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조세특례제한법」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산업발전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집배송 센터 운영사업「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된다.(세부업종 상단 지정요건 참조)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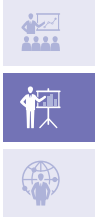
라) 국·공유지의 실 임대료 대비 저렴한 임대료(취득가액의 1% 수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의 임대료가 취득가액의 5%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과 달리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추가적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에서 더욱 감면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산업단지를 확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저렴한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임

마) 일정기간 내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장건축 실현

임대하려는 부지 가액의(단지형 1배, 개별형 1/2배) 해당하는 FDI가 새로 투자되어야 하며, 영위 업종에 따른 기준공장면적율(최소12%)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투자하기로 한 FDI 금액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최소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장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치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즉 1%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5년치에 해당하는 4%의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FDI는 해외에서 새로 들어와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계약 하기 전에 들어온 FDI는 투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주의하여야 한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려는 외국인 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등을 위한 FDI는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FDI로 인정한다. 다만 다른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도입된 FDI는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지 면적 대비 최소로 지어야 할 공장 건축 면적이 있는데, 이를 5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조업 업종별로 최소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비율은 「공장 입지 기준 고시」에 나와 있다(12% 이하일 경우 12%적용).

바) 입주기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투자 비율 유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신청을 하려면 기업의 지분 중 외국인 투자(FDI) 지분이 최소 30% 이상 되어야 하며 입주 기간 내내 이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

사) 협력업체 입주제도 존재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감면율	사업구분	조건		비고
		투자금	상시근로자수	
0%	입주기업	정상임대료(취득가액의 1%)		-
75%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70-150명 미만	-
90%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150-200명 미만	
100%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소재부품단지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200명 이상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

* 감면율은 정상임대료에서 감면되는 비율(국·공유 재산 임대)이며, 세부적인 감면율은 해당 관리기관 사전 문의 필수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입주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한다.

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 기타 조세감면

구분	단지형	개별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1천만불 ↑ 물류업 · 항만업: 5백만불 ↑ <p>➔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p> <p>*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자료 처리: 3천만불 ↑ 관광업 · MICE: 2천만불 ↑ 물류업 · SOC: 1천만불 ↑ R&D: 2백만불 ↑ & 연구원 10인 ↑ 공동사업: 3천만불 ↑ <p>* 지정요건과 동일</p> <p>➔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2년간 50%</p> <p>* 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에 한함</p>
취득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p>*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최장 15년)(취득세, 재산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 비율은 소득세 감면기준과 동일 <p>* 다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최장 15년)(취득세, 재산세 등)</p>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p>*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p>

* 세부적인 감면비율은 해당 지역의 세무관계부서 문의 필수

6) 지정현황

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구분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합계
지정현황	28개	78개	3개	109개



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28개 단지)

연번	단지명	최초지정일	지정면적 (천㎡)	입주면적 (천㎡)	임대료 (원/㎡, 월)	
1	천안(충남)	1994-10-13	510.1	491.4	320	
2	대불(전남)	1998-08-29	1,150.7	1,101.2	74	
3	사천(경남)	2001-08-17	495.2	495.2	234	
4	구미(경북)	2002-11-06	332.4	232.2	171	
5	오창(충북)	2002-11-28	446.3	446.3	227	
6	장안1(경기)	2004-09-30	418.2	282.2	262	
7	인주(충남)	2004-12-21	164.8	159.5	165	
8	당동(경기)	2005-09-12	239.4	239.4	383	
9	지사(부산)	2005-11-30	297.1	239.5	446	
10	장안2(경기)	2006-12-29	369.0	227.6	303	
11	달성(대구)	2008-09-10	104.2	104.2	241	
12	오성(경기)	2009-09-03	353.9	169.1	323	
13	천안5(충남)	2012-12-21	336.6	309.3	207	
14	월전(광주)	2013-05-15	99.1	99.1	1차: 214 2차: 250	
15	문막(강원)	2013-12-10	95.8	45.4	249	
16	진천(충북)	2014-08-20	108.4	108.4	144	
17	송산2(충남)	2015-10-12	134.0	100.0	290	
18	국가식품(전북)	2015-10-12	116.0	23.1	122	
19	충주(충북)	2016-07-18	334.7	219.8	160	
20	송산2-1(충남)	2017-01-31	165.3	91.4	290	
21	광양세풍(전남)	2017-11-02	82.6	82.6	248	
22	송산2-2(충남)	2019-03-20	117.9	40.0	290	
23	대전(대전)	2020-09-16	83	-	374	
24	소재 부품	구미	2009-03-09	246.3	174.9	155
25		포항	2009-09-03	264.9	221.2	127
26		익산	2010-03-12	319.4	124.9	103
27		창원	2010-10-14	71.3	40.5	451
28		미음	2011-11-28	299.6	164.3	470

* 입주면적 : 천안(19천㎡), 대불(13천㎡), 인주(5천㎡) 지원시설면적 등을 제외

** 개별형,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 → 외국
인투자지역 운영 → 지정 및 관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

7)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72)
- 경기도시공사(031-681-6474~5)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051-979-5326)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061-760-5441)
- 익산시 투자유치과(063-859-5229)
- 포항시 투자유치관실(054-270-2826)
- 개별형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8)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8호)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www.bifez.go.kr)
-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www.gfez.go.kr)
- 익산시(www.iksan.go.kr)
- 포항시(www.pohang.go.kr)



▶ 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1) 조성목적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경기도에만 4곳 지정되어 있으며, 조성목적 및 특징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유사하나 입주기준, 인센티브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전경]



평택 어연한산



평택 포승

2) 특징

입주조건으로 건폐율과 용적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 및 임대료가 감면된다.

3) 인센티브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가 있다. 다만 조세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만 감면된다(외국인투자지역과의 차이).

(1) 조세감면 기준

구분	감면내용
법인세, 소득세	해당없음
취득세, 재산세	해당없음(신성장동력사업만 감면)
관세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2) 임대료 감면 기준

구분	감면율	감면요건
기본임대료		조성원가의 1%(공시지가가 높을 경우 공시지가의 1%)
국가소유분	50%	투자금액 100만불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50%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제조업
경기도 소유분	50%	투자금액 500만불 ~ 1,000만불 미만 제조업
	75%	투자금액 500만불 ~ 1,000만불 미만 제조업
	100%	투자금액 2,000만불 이상 제조업
		투자금액 2,000만불 이상 제조업

4) 입주기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입주 기준]

구분	어연한산	추팔	포승	현곡
임대료(원/m)	4,572	3,996	3,996	4,080
	※ 고도기술수반업종인 경우에는 임대료 면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으로 1년분 임대료 선납			
임대한도	100만불당 3,305㎡(추팔, 현곡), 120만불당 3,305㎡(어현 · 한산, 포승)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임대기간	최대 50년(매 10년 마다 다시 계약)			
외투비율	30%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전용임대단지 입주 가능 업종]

지역	입주 가능 업종
평택 어연한산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집적법」에 의한 첨단 업종 3) 연구개발(R&D) 센터 4) 일반제조업
평택 현곡	화학물질, 화학물질 제조업(20), 고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광학기기,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30)
평택 포승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집적법」에 의한 첨단 업종 3) 연구개발(R&D) 센터
평택추팔	4) 물류시설업 5) 일반제조업(24~31)

5) 지정현황

[임대면적, 잔여면적, 입주기업, 입주율]

단지명	조성시기	조성면적 (m)	임대면적 (m)	잔여면적 (m)	입주기업 (개사)	입주율 (%)
어연·한산	'93~'99	324,392	266,859	57,533	21	82
추팔	'94~'00	88,976	86,476	2,500	7	97
포승	'91~'98	95,774	95,774	-	5	100
현곡	'96~'06	500,709	477,198	23,511	31	95

6) 문의

- 경기도시공사 외투단지관리센터(031-681-6474~5)

7)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사업정보 ➡ 산업단지조성 ➡ 외국인투자 지역 및 임대단지'
- 인베스트 경기(<https://invest.gg.go.kr>)
 - 투자환경, 투자정보, 경영지원 등 안내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자료제공 :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www.gh.or.kr>)

▶ 다. 경제자유구역

1) 조성목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경자법 제1조)

* 경영환경 : 외투기업에 관세·지방세 감면, 외투기업에 노동·경영 관련 특례, 외투기업에 수도권 규제 적용 배제

**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등의 특례 제공

2) 특징

산업·상업·주거·교육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산업용지 공급 중심의 타 특구와 근본적으로 차이

* 경제자유구역 용지별 비중(%) : 공공용지(42.9), 산업·유통용지(30.2), 주택용지(7.9), 관광시설(6.6), 상업(3.7) 등



[경제자유구역 전경]



부산진해(남문외투단지)



경기(시흥배곧지구)



광양만권(세풍산단)



동해안권(옥계지구)

3)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가) 조세감면

구분		감면 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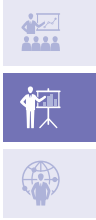


나) 각종 규제완화

구분	감면내용
노동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 조항 적용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외환거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다) 재정·입지지원

구분	감면 내용	감면요건
현금지원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 평가하여 결정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국비 50% 지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국가발전기여도, 명성도 등 평가요소 충족
임대지원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50~100%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4) 지정현황

- 동북아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총 9개 구역(총면적 275km²)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 * 최근 광주·울산이 경자유역으로 공식지정·신설되었으며, 수도권·충청·강원·영남·호남 등 전국적으로 분포
-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08년 경기(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을 지정하였으나, 2018.4월 새만금·군산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되어 해제하였음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명칭	위치	면적(km ²)	공항·항만	중점유치업종
인천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122.44	인천공항 인천항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부산·진해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51.06	김해공항 부산신항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 부품, 여가,휴양
광양만권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군)	59.80	광양항	석유화학소재, 철강·에너지신산업, 항만물류·해양관광·레저
경기	경기 (평택·시흥)	18.45	평택항	IT 융복합, 첨단부품소재, 첨단의료

명칭	위치	면적(km ²)	공항 · 항만	중점유치업종
대구 · 경북	대구 · 경북 (경산 · 영천 · 포항)	5.24	대구공항	자동차부품, 물류·유통, 관광·의료,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실증
동해안권	강원 (강릉 · 동해)	4.44	동해항	비철금속, 신소재, 첨단소재부품, 관광레저
충북	충북(청주)	4.96	청주공항	바이오, 항공정비·부품, 복합물류

*2020년 신규지정 지역 제외

5) 경제자유구역별 현황 및 특징

가) 인천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122.44km ²	545,803명	2003년 ~ 2030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송도 국제도시 (면적: 53.37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BT, R&D의 첨단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 개발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기구 지역본부 입주
영종 국제도시 (면적: 51.26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물류, 레저, 관광의 복합레저관광도시 개발 LOCZ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등 복합리조트 개발 진행 중
청라 국제도시 (면적: 17.8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자동차부품 제조와 연구 등 첨단자동차산업 핵심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청라하나금융타운, 로봇랜드, 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 진행중

(3) 특장점

글로벌 비즈니스 프린티어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 경제권 구축을 위한 '글로벌 경제 플랫폼' · 글로벌 교육, R&D, MICE 복합관광, 금융· 지식서비스, 해양 레저, 문화 예술 콘텐츠, 첨단유통· 물류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허브' · 바이오메디컬, 첨단기술 융복합, 첨단자동차산업 중심의 '융· 복합 산업 허브' · 스마트시티, 친환경경관특화, 저탄소 에너지절감도시 구현의 '스마트 도시'
국제기구와 세계적 기업이 선택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녹색기후기그세계은행,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15개 국제기구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잉· BMW· GM 등 16개국, 87개 글로벌 기업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유리한 위치 · 비행거리 3시간 내에 인구 100만이 넘는 167개 도시 접근 가능
물류· 교통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연속 '세계최고공항' 선정된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 1만 2000TEU급 초대형 화물선 입항 가능한 최첨단 항만 인프라, 인천항 · 1시간 내 대한민국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망
외국인 거주에 최적인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대학 :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SUNY KOREA, SUNY FIT 최고 수준의 교육 · 국제학교 : 송도채드윅, 청라달튼학교 · 5천여명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외국인정주여건 개선 ·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로 안전· 편리 효율적 스마트 도시 건설

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51.1km ²	182,000명	2003년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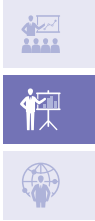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신항만 지역 (면적: 11.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및 원활한 물류· 유통지원 서비스 제공 · 물류거점항만 건설(2030년까지 총45선석 완공 예정)
명지 지역 (면적: 12.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첨단 IT기반의 국제업무 중심단지, 컨벤션 센터 등 국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대륙물류기지 및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건설

구역명	특징
웅동 지역 (면적 : 9.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관광 레저 단지 조성 • 신항 주변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 할 산업 · 물류용지 조성
명지 지역 (면적 : 12.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부품, 기계, 조선 기자재 및 첨단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연계, 최고의 제조기반시설 및 R&D 센터 건립 •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AU) 대학원 과정 부산분교 개교(2010년)
두동 지역 (면적 : 4.3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자 중심의 첨단복합물류도시 조성 • 세계최대의 심해공학수조 건립중 • LG CNS Data Center 운영 중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3) 특장점

국제물류의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63항, 중국 40항, 러시아 6항 등 주요 피더항과 연계된 수출입 환적지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공항운영 효율성 평가 1위(2014)의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물류 경쟁력 지원 • 총 45선석 규모 터미널 및 2,200만 TEU 이상 물동량 처리 가능한 부산신항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등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의 약 90%가 위치 • 현대, GM, 르노삼성 등 세계 5위 한국자동차산업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메카 • 국내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부품공급의 80% 차지
풍부한 고급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FAU 대학(대학원 과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 설립 • 인근 지역에 800만명에 이르는 소비자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풍부한 시장과 고급노동력을 제공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휴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APEC 정상회담, 2008 람사르 총회, BIFF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적 국제이벤트의 장 • 한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해운대를 비롯하여 경남 남해안의 300리 아름다운 바닷길,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 • 골프장, 호텔, 리조트 및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국제 비즈니스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 • 외국교육·외국의료·외국연구기관 유치 • 복합상가 건설



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59.8km ²	83,831명	2003년 ~ 2022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광양 지구 (면적: 12.8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북미-유럽을 연결하는 간선항로상 위치 광양항을 통한 수출·물류 수송 원활 가공·조립시설, 국제전시장 등 국제종합물류단지 개발
울촌 지구 (면적: 18.03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된 철강·석유화학 산업클러스터와 연접, 시너지 효과 용이 광양항과 함께 광양만권의 양대 컨테이너 중심 항만 조성 가능
신덕 지구 (면적: 7.87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주거·교육·의료·레저 시설을 갖춘 신대배후단지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바이오 패키징 산업 유치·조성계획 전국 최초 도시 순환경 생태회랑 조성
하동 지구 (면적: 9.70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CO광양제철(2km이내)의 후판생산에 따른 조선 기자재 물류비용 절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입주 확정으로 연구개발·교육·생산의 기능집적 해양 식물 시험 및 연구소 개설 예정과 함께 R&D, 교육 및 생산 기능 집중
회양 지구 (면적: 8.97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휴양 및 해양관광, 레저복합관광 단지조성 골프클럽, 휴양형 콘도 개발 중
경도 지구 (면적: 2.1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유일의 섬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과 충분한 잠재력 광양만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관광 명소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한반도의 웅장한 경관을 살린 관광 및 레저 시설 설치로 해양 관광 단지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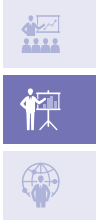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3) 특징점

<p>동북아 최적의 해운물류기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항로인 중국-북미 항로 등 동북아 및 태평양의 기간 항로상 위치 • 상하이·홍콩·오사카·카오슝 등 동북아 주요 항만 최단거리 위치, 환적 화물의 거점으로서 최적의 입지조건 보유 • 최대 수심 41m로 30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박 입출항 가능 • 시베리아횡단철도(TSR)·만주횡단철도(TMR)·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 통한 북미-동북아-동남아-유럽을 잇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부상 가능
<p>글로벌 기업이 주목한 최적의 산업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3백만 톤(2017년 기준) 처리 가능한 세계적인 국제항만 • 전국 13.52%(189.6km)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산업배후시설 • POSCO 광양제철소·여수국가산업단지 • 38개 인근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연 8,000여명 고급 산업인력 육성
<p>동북아 시장의 관문으로 항만· 항공·도로·철도 등 편리한 접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사천·광주·무안공항 등 4개 공항이 1시간 거리에 위치 • 수도권과 3시간대 접근 가능한 5개의 고속도로와 8개 국도·18개 지방도로 및 간선도로 연결 • KTX로 광양만권에서 수도권으로 2시간 30분대 접근 가능
<p>편안하고 쾌적한 정주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학교를 통한 글로벌 교육환경 제공 • 종합·일반병원 634개소 및 7,000여개 병상 보유, 편안한 정주환경을 위한 의료시설 • 순환형 생태회랑 및 골프장 등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순천만 국가정원

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18.45km ²	76,000명	2008년 ~ 2022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면적: 7.26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 연구기관 집적을 통해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내륙 첨단 과학 벨트(R&D 특구) 구축 IT, NT, BT, 지능형 자동차 및 산업용섬유 등 특화된 고급인력 (*특성화대 52개, 이공계 졸업생 1만7천명 배출)
수성의료 지구 (면적: 0.9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력 인프라가 완비된 첨단 연구개발 활동의 최적지 프리미엄 의료서비스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 지식기반산업을 이끄는 최첨단 IT/SW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창조경제의 메카
신서첨단 의료지구 (면적: 1.05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핵심 연구지원시설과 입주국책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지원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중개 지원 파격적인 규제특례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창출 여건 제공 (첨복특별법)
국제패션 디자인 지구 (면적: 1.1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션어패럴산업의 고도화, 집적화, 네트워크화 통한 연관 산업 시너지효과 기대 풍부한 관광 레저, 교육,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완비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면적: 1.22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첨단 메카트로닉스 산업단지 및 지능형 자동차 생산 위한 첨단부품물류센터 조성) 한국 최대 자동차부품 벨리의 중심지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계획
영천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면적: 1.46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대 부품·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내 최저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 기계금속, 자동차 등 다양한 R&D기반에 인접하여 첨단기술 상용화
경산지식 산업지구 (면적: 3.83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1조원 국책사업) 동남권 R&D 거점 및 풍부한 고급 R&D 인력 자동차부품, 철강 및 신약,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포항융합 기술산업 지구 (면적: 1.4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기반 및 나노기술·생명공학·지능로봇 연구센터 등 첨단 과학 연구센터 소재 세계적 글로벌 기업과 연대·협력: 비철산업, 자동차, 조선 관련 부품 기업들 다수 이전

(3) 특징점

<p>대한민국 주력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전장)-대구(메카트로닉스)-영천-경주-울산(완성차)-부산(조선)-창원(기계금속)으로 이어지는 AUTO VALLEY의 중심 •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클러스터(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 의료 국책산업 클러스터(총 사업비 4.6조원/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 • IT/SW 산업 집적 클러스터(삼성전자, 엘지디스플레이, 다쏘시스템)
<p>신성장산업 지원 R&D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R&D기관 135개 • DGIST, POSTECH 및 2개의 연구개발특구 위치(대구테크노폴리스, 신서첨단의료복합단지)
<p>풍부한 인적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지역 내 총 52개 대학 및 단과대학에서 매년 70,000명의 졸업생 배출(이공계 졸업생 연간 17,000명) • R&D기관 135개, 연구인력 4,800명

마) 경기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5.24km ²	28,796명	2008년 ~ 2027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p>평택 포승 (BIX)지구 (면적: 2.04km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항 배후단지와 연계한 최적의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 반경 10km내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2017년 가동
<p>현덕 지구 (면적: 2.32km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교 · 병원 등 최적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중국그룹 투자

※ BIX : Business and Industry Complex의 약자로 경기도만의 특화된 산업단지 브랜드



3) 특징점

국제수준의 첨단기술 산업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3M, Siemens, Sony, Bosch 등 약 3,350여개 글로벌 기업 입지 IT,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등 국내 지식기반 제조업의 40% 보유
최적의 대중국 및 동북아 수출입 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 위치 (평택-영성 396km) 동남아, 중국 등의 주요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평택항(63선석)
인접 우수한 접근성과 최고의 투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와 고속철도(KTX)의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2시간내 동북아 주요도시 접근 가능한 인천공항 및 충주공항 수도권의 거대한 배후시장과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한·중 비즈니스 밸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자본 투자를 통한 상업, 관광, 의료, 주거 등 정주환경 조성으로 대중국 교류의 거점화 국제 비즈니스와 휴양·문화 복합시설 제공 황해 산업벨트의 중심

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4.44km ²	23,790명	2013년 ~ 2024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북평 첨단부품·복합산업단지 (면적: 0.5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동해권 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수출입 용이 첨단 부품산업 및 페로알로이 전문단지 개발 비철금속 특화산업 연계 앵커기업 입주 : 동부메탈, LS전선 등
망상 국제복합 관광도시 (면적: 3.9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계절 명품 해양·복합 관광도시 국내 최고의 맑은 바다, 청정한 산림과 대기환경
옥계 첨단소재·부품 융복합 단지 (면적: 0.38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 첨단소재 클러스터(2.2km²) 비철금속 관련 앵커기업 입주 : 포스코 마그네슘 (단일규모 세계 2위)

(3) 특징점

<p>첨단소재부품 특화산업 최적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경량 비철금속 클러스터 조성 • 국내·외 자원을 활용한 첨단소재산업 최적지 • 인접 R&D 센터를 통한 기술지원(강원테크노파크, KITECH 강원본부 인접 위치) •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p>환동해권 물류산업의 중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항과 일본(사카미미나토),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중국(동북3성)을 연결하는 물류산업 중심 • 환동해 경제권 인구 약 3억 600만명 • 2020년 예상 경제 규모 12조 2천억 달러 (EU 대비 51%)
<p>동북아 관광산업 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 제공 • 국내 최고의 맑은 바다, 청정한 산림과 대기 환경 • 동해안 유일의 경자구역으로 북방경제권의 매력있는 투자 지역으로 부상 •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접한 동북아시아권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

사) 충북경제자유구역

(1) 기본 현황

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4.96km ²	31,532명	2013년 ~ 2022년

(2) 프로젝트 현황 및 특징

구역명	특징
<p>오송 바이오 밸리 (면적: 4.41km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집적된 보건의료 행정타운 및 국가 4대 핵심·연구개발 지원시설 입주 •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및 120개 민간으로 연구기관 입주 • CJ, LG생명과학 등 60여개 제약·의료기기 첨단기업, BT대학 입주
<p>청주 에어로폴리스 (면적: 0.55km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 • 공정기간 최단기화가 가능한 최상의 입지, 항공정비비범단지 지정(2009년), 항공MRO 유망거점지역 지정(2010년) • 도내 5개 대학, 1개 특성화고에서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

(3) 특장점

<p>국토 중앙에 위치,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 7개 고속도로 관통,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전국을 X자로 연결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위치 • 지방 유일 화물전용 항공기가 취항하는 24시간 운영 공항 •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1~3시간 내 접근 • 신행정수도 세종시와 10분거리, 해운물류의 중심지인 평택·당진항과 1시간 거리
<p>국내 최대 IT기반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IT클러스터 구축(SK하이닉스, 매그나칩, 동부하이텍 등 국내 우수기업 입주) • 국내 최초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국내 셀·모듈의 60~70% 생산 • 자동차 전장부품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p>국내 유일 산업화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바이오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유일 바이오 전문 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입주한 '보건의료행정 타운' 등 동북아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핵지대 • 국가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및 바이오메디컬시설 집적 • 60여 개 바이오기업 및 120여개 연구소, BT대학(4개학과, 3개 대학)등 바이오 인프라 구축 통한 임상, 인허가, 제조·유통까지 R&D 전 과정 원스톱 지원



6) 신규 지정 경제자유구역 현황

가) 광주 경제자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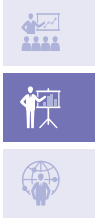
- 비전 : 상생과 시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 위치 · 면적 : 광주 남·북·광산구 일원 4,371km²
- 총사업비 : 12,433억원 (국비 1,125, 지방비 1,125, 민자 10,183)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6년간)
- 지구 : 4개지구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I·II, AI 융복합)
- 개발구상 : 시 기반 및 혁신성장, 광주형일지리를 통한 투자유치
- 유치업종 : AI, 미래형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생체의료

나) 울산 경제자유구역

- 비전 :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위치 · 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울주군 일원 4,70km²
- 총사업비 : 11,704억원 (국비 300, 지방비 10,748, 민자 656)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11년간)
- 지구 : 3개 (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트로켄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 발구상 : 수소산업 허브화를 통한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
- 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추가 지정)

- 비전 :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
- 위치 · 면적 : 0.88km²(시흥시 배곧동 일원)
- 총사업비 : 16,681억원(국비 1,397, 지방비 2,192, 민자 13,092)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8년간)
- 지구 : 1개(기존의 평택 포승(BX)지구, 현덕지구에 추가 지정)
- 개발구상 : 4차산업 R&D 클러스터 및 생산시설 거점 조성
- 유치업종 : 육해공 무인이동체 R&D, 의료복합연구 등



7) 문의

- 경제자유구역기획단(1577-0900)
-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312)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000 / 055-320-5000)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060-760-5651)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 : 031-8008-8633 / 현덕 : 031-8008-863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053-550-1500)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033-539-7800)
-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12)
- 광주경제자유구역청(062-613-6022)
- 울산경제자유구역청(052-120)

8)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http://www.fez.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청(<http://www.ifez.go.kr>)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http://www.bjfez.go.kr>)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http://www.gfez.go.kr>)
 - 경기경제자유구역청(<http://ggfez.gg.go.kr>)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http://www.dgfez.go.kr>)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http://www.efez.go.kr>)
 - 충북경제자유구역청(<http://www.cbfez.go.kr>)
 - 광주경제자유구역청(<http://www.gwangju.go.kr>)
 - 울산경제자유구역청(<http://www.ulsan.go.kr/ufez>)
- ※ 자료제공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http://www.fez.go.kr>)

▶ 라. 자유무역지역

1) 기본개념

가) 국가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관세유보,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이 보장된 지역

** 임대부지, 표준공장 등 저렴한 생산입지 제공으로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임대형 경제특구

나) 정부가 직접 현장에서 입주상담, 임대계약, 공장건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One-Stop Service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생산시설만 갖추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표준공장, 그리고 금융·세무·회계 등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업무지원등으로 구성

자유무역지역 발전 연혁

- 1970년 : 수출자유지역으로 출범(마산)
- 2000년 : 생산·물류·판매·전시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
- 2004년 : 물류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통합

*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중심인 반면,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두 지역이 각각 분리·운영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유사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일원화함

2) 주요특징

가) 입지조건 및 관리권자*에 따라 산업단지형 7개(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등), 항만형 5개(부산, 포항, 평택·당진, 광양, 인천 등), 공항형 1개(인천공항) 등 총 13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음

* 관리기관 : 산업부(산업단지형), 해수부(항만형), 국토부(공항형)

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물류업의 경우 복합물류관련 사업의 영위가 가능해 다국적 물류기업의 생산·물류 복합활동이 가능하고, 수출입 거래 목적 도매업 영위자 등의 입주가 가능함



[자유무역지역 전경]



마산자유무역지역



울촌자유무역지역



부산항자유무역지역



평택·당진항자유무역지역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인천공항 물류단지 개발계획

3) 입주자격

입주자격	내용
수출 주목적인 제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수출 주목적 국내복귀 기업(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 중소기업 100분의 30 이상, 중견기업 100분의 40 이상

입주자격	내용
외국인투자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수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 입주계약 신청일 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 로 하는 도매업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 대비 수출입 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복합물류관련 사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의 물류업 및 국제운송 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수출 창업기업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 업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

※ 입주절차



4) 인센티브 및 지역별 임대료

가) 인센티브

입주자격	특징
관세유보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으로 간주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환급 * 시설재, 원재료, 건축자재, 기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은 비관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외국물품,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제공 *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입주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외국법인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

입주자격	특징
공장대지 및 표준공장의 저렴한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간(50년 연장가능) 대지 또는 건물가격의 1% 수준에서 저가임대 * 임대료 : (공장부지) 월 61원/㎡ ~ 월 452원/㎡ (표준공장) 월 355원/㎡ ~ 월 784원/㎡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제조업 1천만불, 물류업 5백만불 이상 투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조세 감면 혜택 부여(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항)) • 임대료 감면 : 지원대상 업종 및 신규 투자규모에 따라, 토지 및 공장 무상임대 또는 75% 감면 혜택 10년간 제공
역외작업 허용	생산제품 공정의 일부를 국내 관세지역에서 가공·수출 가능,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등의 외국 물품은 국내관세 지역 반출 가능
부담금 면제 등 특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외투기업에 대해 취업보호대상자(고령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용의무 미적용
일괄처리 지원	입주허가, 건축허가 등 입주 전 과정을 일괄 처리 * 입주허가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5) 지정현황

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김제	울산
지정일	'70.03	'00.10	'02.11	'05.12	'05.12	'09.01	'08.12
면적(천㎡)	957	1,256	1,157	248	344	991	819
부지	607	1,007	949	172	252	716	404
표준공장	96	113	85	28	17	35	82
분양률(%)	96.1	92.6	97.9	59.2	63.9	52	93.4
부지	100	93	99	55	64	52	96
표준공장	82	89	84	94	65	55	65
주요업종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정밀기계, 기계 등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기계·금속, 전기·전자 조선 등	비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산 가공 등	화학, 기계, 금속 등	기계·금속, 탄소소재, 특장차 등	기계,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등
소재지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강원 동해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울산 울주군

(1)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지역	임대료
마산	공장부지: 월 452원/㎡ / 표준공장: 월 639~784원/㎡
군산	공장부지: 월 96원/㎡ / 표준공장: 월 497~603원/㎡
대불	공장부지: 월 76원/㎡ / 표준공장: 월 546~694원/㎡
동해	공장부지: 월 61원/㎡ / 표준공장: 월 355~430원/㎡
울촌	공장부지: 월 103원/㎡ / 표준공장: 월 652~718원/㎡
김제	공장부지: 월 65원/㎡ / 표준공장: 월 439~476원/㎡
김제	공장부지: 월 233원/㎡ / 표준공장: 월 414~748원/㎡

* 임대료 감면사항은 지역별 별도 문의 필요

나)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현황

구분	부산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01	'08.12	'09.3	'02.01	'03.01	'05.04
면적(천㎡)	9,364	925	1,429	8,880	1,837	3,050

* 기준일 : '19.12월

(1)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가) 부지

항만명	구분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포항항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당 월 117원	'20. 7.30. - 21.12.31.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등	공시지가 x50/1,000(국유 재산법)	
평택·당진항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 제외)	㎡당 월 700원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외국 인투자기업	㎡당 월 500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등	공시지가 x50/1,000(국유 재산법)	

항만명	구분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	기본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m ² 당 월 482원	'20. 7.30. - 21.12.31.
	우대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 5호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m ² 당 월 321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등	공시지가 x50/1,000(국유 재산법-연간)	
광양항	기본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우대 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m ² 당 월 258원	
	우대 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 5호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m ² 당 월 129원	
	공시지가 임대료	입주기업 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등	공시지가 x50/1,000(국유 재산법-연간)	

* 자료 : 지역별 임대료 공고문

(나) 임대료 감면 적용

항만명	적용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 광양항, 당진평택항, 포항항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	각 기간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 자료 : 지역별 임대료 공고문

(다) 건물

항만명	임대료	적용기간
부산항(신항개발지구항만배후단지 포함)	재산가액의 1%	'20. 7.30. - 21.12.31.
광양항	재산가액의 1.5%	

* 자료 : 지역별 임대료 공고문

※ 공항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는 인천공항공사 별도 문의 필요

6) 문의

가)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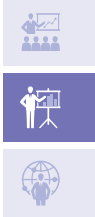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혁신지원팀(044-203-4633)
-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055-294-2661)
-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063-464-0702)
-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원(061-464-0741)
-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원(033-522-6113)
- 울춘자유무역지역 관리원(061-727-9791)
-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063-545-4811)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052-240-6001)

나)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6)
- 부산항만공사(051-999-3000)
- 여수광양항만공사(061-797-4300)
- 인천항만공사(032-890-8000)
- 포항지방해양수산청(054-242-1812)
- 평택당진항(031-683-0313)
- 인천국제공항공사(1577-2600)

7)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만형(부산·광양·평택·당진·포항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공고문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 * 정책·정보 → 정책브리핑 → 무역·투자 →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활성화
 - 자유무역지역관리원(<http://www.motie.go.kr/ftz>)
 - * 지역별 관리원 링크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https://www.airport.kr>)
- ※ 자료제공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혁신지원팀)



3. 투자유치 중점 지역

▶ 가. 새만금

1) 기본개념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km²)와 호소(118km²)를 조성 하고, 방조제 외부 고군산 군도 3.3km²와 신항만 4.4km²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최근 친환경 미래차 클러스터의 조성 및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등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다.

2) 투자환경

구분	장점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활한 국가소유의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민원, 무규제, 수요자 중심의 토지분양 · 특별법인 새만금사업법으로 제도적 지원 ·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이며, 중국과 최단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시간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도시 5개, 500만도시 13개, 약 7억명 이상의 배후 시장이 인접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한·EU간 FTA 체결 · 종합보세구역 지정 · 저렴한 고 장기적인 토지임대 및 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가(3.3㎡당) 50만원, 100년간 임대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 추진 · 국내 최고의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최대 300억원 지원 · 풍부한 용수 및 전력공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량 21억㎡/년, 345m²kV 공급시설 완료 · 우수한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대학 13만명, 277개 연구기관 83백명, 25천명 기술인력 공급가능
부동산 개발업	<p>[관광단지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된 산·섬·바다가 조화된 해양관광지 · 부동산투자 영주권제 도입 추진 <p>[관광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지가 및 원형지 분양 가능 · 게이트웨이 매립완료 및 대부분의 땅이 드러나 즉시 투자 가능 <p>[고군산군도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자원 및 청정한 자연환경 보유 · 방조제와 연결되어 접근성 향상· 월 76원/㎡ / 표준공장 : 월 546~694원/㎡
관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관광지(변산국립공원) ※대명리조트의 전국 시군최고의 객실 이용률(74%, 전국시군 50%평균) · 고군산군도 마리나 개발 및 선도시설 확충 계획

3)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 내용	관련근거	
입지지원	· 국·공유 재산 최장 100년간 임대	· 새특법 제46조, 제58조	
현금지원	· FDI 금액의 40% 내(R&D 경우 50%)	· 외촉법 제14조의2	
조세감면	국내기업	·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2년간 50% 감면 (군산에 한함, 산업위기지역, 2021.12.31까지)	· 조특법 제99조의9
	외투기업	·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2년간 50% 감면 (군산에 한함)	· 조특법 제99조의9조
		· 조례로 최대 15년간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조특법 제121조의2 · 지특법 제78조의3
		· 관세(자본재) 5년간 100%	· 조특법 제121조의3
	*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감면	· 시조례 제6조	
보조금지원	국내기업	· 투자보조금 (투자금액의 10%내, 최고 80억원)	· 도조례 제7조④1
		* 대규모투자의 경우 최대 300억 지원	· 도조례 제8조①
		· 고용보조금 : 10억원 이내	· 도조례 제10조①
		· 교육훈련보조금 : 5억원 이내	· 도조례 제11조
	외투기업	· 입지보조금(입지금액의 50% 내)	· 도조례 제13조
		· 투자보조금(투자금액의 10%내, 최고 80억원)	· 투자,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은 도조례 제14조(국내기업 지원 규정 준용)
		· 고용보조금 : 10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 5억원 이내	
정주여건 조성	·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새특법 제59조, 제60조	
	·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외국인 전용 약국	· 새특법 제61조, 제62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 새특법 제64조, 제65조	
경영환경 개선	· 외국인투자음부즈만 제도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	
	· 외국투자가 등 민원사무 처리 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	

* 조례명

- 조세감면 도조례 :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 조세감면 시조례 : 군산시·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 보조금지원 도조례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지정현황

가) 총괄 현황

- 면적 : 409km²(서울 면적의 2/3, 여의도의 140배)

* 용지 291km²(71%), 호소 118km²(29%)

- 토지이용계획 : 6대 용지 조성

용지명	면적(km ²)	비율(%)	용지별 조성계획
① 산업연구용지	41.7	14.3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R&D시설 집적지 조성
② 국제협력용지	52.0	17.9	경협단지 조성 및 국제업무기능 육성
③ 관광레저용지	36.8	12.6	대규모 복합관광레저공간 조성
④ 농생명용지	94.3	32.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농업 육성
⑤ 환경생태용지	42.0	14.4	생태비오톱, 습지 등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 배후도시용지	10.0	3.4	새만금 활성화에 대비한 배후주거지 조성
⑦ 기타	14.2	4.9	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합계	291.0	100	

나) 주요 용지별 세부 현황

(1) 산업연구용지(새만금 산업단지)

구분	내용
사업개요	18.5km ² 규모로, '23년까지 2.6조원을 투자하여 '지식창조형 산업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 자동차부품,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 바이오식품 등을 유치 ** 용지 남서측에 상주인구 3만인 규모의 국제교류거점 마련
추진현황	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08.9)하여 '09.3월 9공구로 분할, '23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 중
단지개발	1·2공구 조성 완료, 5공구 매립 진행중(98%), 6공구 매립 진행중(89%)
업종	친환경 자동차, 첨단소재,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데이터센터 등
스마트 그린산단	목표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자립 산단을 실현하고 스마트 그리드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탄소중립 산단 조성 전략 : RE100 산단 조성,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100MW, 22년-27년)
토지공급	1공구 : OCI(57만m ² , '13.3), 장기임대용지(5.3만m ² , '15.6), 2공구 : OCI(57만m ² , '13.3), OCI SE(16만m ² , '13.9), 도레이(21.5만m ² , '14.1), 솔베이(7.0만m ² , '15.2), ECS(0.7만m ² , '15.2), 유니텍코리아(1.3만m ² , '18.5), 네모이앤지(6.6만m ² , '19.1), 아이코튼(4.0만m ² , '19.9), 다스코(6.6만m ² , '19.10), 참플랜트(4.1만m ² , '19.10), 이씨스(2.0만m ² , '19.12), 한국산업기술시험원(2.1만m ² , '19.12), 건설기계부품연구원(1.7만m ² , '19.12), 에디슨모터스(9.9만m ² , '20.1), 청운글로벌팜스(3.1만m ² , '20.2) 등
공장가동	ECS('15.9), OCI SE('16. 3), 도레이('16.7), 솔베이('16.11) 가동

[산업용지 내 기반시설]

종류	공급원	규모	비축량	비고
산업용수	군산시 오식도	80,000톤/일	25,000	
생활용수	군산시 오식도	14,000만톤/일	6,000	
폐수처리	군산시	43,000만톤/일	10,000	
전력	한국전력 군장변전소	154kv		
증기/온수	OCI SE	증기 : 860톤/시 온수 : 11천여 세대		전지역 공급, 303MWh 발전용량 보유
가스	군산도시가스	70,000m ³ /시간당		

(2) 국제협력용지

구분	내용
사업개요	52.0km ² 규모로산업·물류, 국제협력, 문화·관광기능, 국제업무기능 등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복합개발 추진 *토지이용구상 : 주거용지 6.1%, 산업용지 25.1%, 상업·업무 4.0%, 관광·레저 1.7%, 농업 16.0%, 기반시설 28.1%, 생태·환경 19.0%으로 계획
추진현황	사전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뢰('18.8) 및 조사 결과 통보(기재부 → 새만금개발청, '19.5), 사업시행자 지정('19.8,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착공('20.12)

(3) 관광레저용지

구분	내용
사업개요	36.8km ² (관광레저 1,2지구 31.6km ² , 신시-야미 지구 1.9km ² , 고군산군도지구 3.3km ²) 규모의 면적으로, 국내·외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를 통해 대규모 복합 관광레저공간 조성 각각의 지구가 연계되어 시너지효과 극대화
추진현황	집객 및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의 초입지 부지(1.1km ²)를 관광선도지역으로 조기 개발을 추진중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km ²)를 농어촌공사에서 우선 매립하고, 대회 이후 숙박, 쇼핑 및 레저의 복합관광단지로 활용
	관광레저용지 2지구(21.7km ²)는 골프장, 복합리조트 등 관광레저시설을 설치·운영할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

(4) 농생명용지

구분	내용
사업개요	첨단 농업기술과 R&D 육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94.3km ² (농업용지 89.7km ² , 농촌도시용지 4.6km ²)의 규모로 조성
개발방향	농어업 수출형 첨단복합 농산업 허브 조성
개발전략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농업클러스터로 육성
도입기능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산업 원예단지, 대규모농어업회사법인 등 수출 전진기지, R&D 및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생태관광 기반구축, 말 방목지 및 승마관광단지 조성

다) 기반시설 추진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향후계획
도로	동서도로	연장 16.47km, 4차로 도로 건설	'20년 개통
	남북도로	연장 27.1km, 6~8차로 도로 건설	1단계 '22년 개통, 2단계 '23년 개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연장 55.1km(새만금-완주JCT), 4차로 도로 건설	2023 잼버리대회 이전 조기 개통 예정
항만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3.5km, 도로 4.1km, 부두 9선 석, 부지조성 451만㎡ 등	1단계 '30년 완공
공항	새만금 신공항	군산공항 확장 등 (공항용지 6.0km ² 계획)	
철도	새만금~대야 철도	연장 43.1km 단선철도 신설	

5) 문의

- 산업용지 :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063-733-1251)
- 국제협력용지 : 개발사업국 국제도시과(063-733-1170)
- 관광레저용지 : 개발사업국 관광진흥과(063-733-1061)
- 외국인투자유치 : 개발전략국 교류협력과(063-733-1235)

6)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새만금개발청(<http://www.saemangeum.go.kr>)
- 전라북도청(<https://www.jeonbuk.go.kr>)

* 첫화면 → 전북소개 → 전라북도 새만금

※ 자료제공 : 새만금개발청(<http://www.saemangeum.go.kr>)

▶ 나. 기업도시

1) 기본개념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하여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 연구, 관광·레저 등 기업에 필요한 주된 경제적 기능과 함께 정주에 도움이 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 종전에는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재는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유형 통합(15.6.22. 기업도시법 개정)

[현재 개발중인 기업도시 유형별 분류]

유형	주된기능	소관부처	해당 기업도시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국토교통부	없음
지식기반형	연구개발 등 사이언스 파크형		충주, 원주
관광레저형	관광레저 문화 위주의 도시	문화체육관광부	태안, 영암·해남

2) 특징

가) 기업도시는 기능, 형태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 주체별 : 개별기업, 기업컨소시엄, 민간기업+공공기관 합동
- 기능별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 형태별 : 완전한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

나) 기업도시는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구분	기업도시	산업단지
개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원칙 • 민간 + 공공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원칙 • 민간은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 가능
개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 + 분양 동시진행 (산업입지와 기업투자 동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先 개발, 後 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시행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자기자본비율 규정 (총사업비의 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 없음 • 민간 : 직접사용에 한함
단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로 최소규모 규정 (100만평 ~ 200만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업단지 : 15만㎡ 이상 • 국가산업단지 : 없음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장기간 소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소요
생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교육·의료·문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다) 도입배경

-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유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투자 촉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03년 기업도시 제도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5년 총 6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후 무안·무주 기업도시가 지정 해제되어 현재는 4개 도시가 개발 중에 있음

국가균형발전전략과 기업도시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 정부기관의 분산(충청권)
 - ② 혁신도시 → 공공기관의 분산(비수도권, 행정중심도시 주변 제외)
 - ③ 기업도시 → 민간기업의 분산(비수도권, 행정중심도시 주변 제외)
-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3) 지정현황

구분	면적 (만㎡)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사업자	출자사	주요시설	소관 부처	
충주	701	'07~'12	5,343	충주기업도시(주)	포스코건설, LH 공사, 임광토건, 엠코 등	산업용지, 연구시설, 연수원 등	국토 교통부	
원주	529	'07~'19	9,722	원주기업도시(주)	롯데건설, 경남 기업, 강원도, 원주시 등	산업용지, 연 구시설, 기업 지원센터 등		
태안	1,547	'07~'25	12,201	현대도시개발(주)	현대건설	골프장, 테마 파크, 첨단 복합단지 등	문화 체육 관광부	
영 암 · 해 남	삼 호	866	'08~'25	4,403	서남해안레저(주)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관광 공사, 전라남도		골프장, 리조트단지, 마리나, 승마장 등
	구 성	2,096	'06~'25	9,835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주)	보성건설, 한양, 전라남도, 전남도개공		골프장, 테마파크, 위터파크, 컨 벤션센터 등
	삼 포	429	'07~'21	4,402	1단계: KAVO, 전남도개공 2단계: 사업자 물색중	전라남도, SJ건설, 전남도개공	1단계 F1경기장	

* 2020년 12월 기준

4) 기업도시별 세부 현황 및 인센티브

가) 원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 기업도시 현황

사업목적	첨단의료기기, 제약 등 연구개발 중심지 및 중부권 거점도시 조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주거,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건설
위치	원주시 지정면·호저면 일원
사업기간	2006 ~ 2019년(도시조성 : '25년까지)
면적	5,281천㎡(160만평)
총사업비	9,722억원
주요용지	첨단의료기기·제약 등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공용지
사업시행자	(주)원주기업도시

- 개발방향 : 건강도시, 생활문화도시, 웰빙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 총 5,281천㎡ 부지조성 완료
 - 토지이용계획 : 총 5,281천㎡(유상공급 2,731천㎡ 무상공급 2,558천㎡)
 - 45개 기업 입주, '20년까지 분양 마무리 예정

[주요입주시설]



학교



기업도시 전경



공동주택



중부발전

(2) 인센티브

- 국비지원 대상(수도권 이전, 신증설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인정)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수도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3년 이상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참조)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300억원) 이상 •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독립된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지역</td> <td>설비투자 8%</td> <td>입지 10% 설비투자 11%</td> <td>입지 30% 설비투자 14%</td> <td>65%</td> </tr> <tr> <td>수도권 인접 지역</td> <td>설비투자 6%</td> <td>설비투자 8%</td> <td>입지 9% 설비투자 11%</td> <td>45%</td> </tr> <tr> <td>지원 우대 지역</td> <td>설비투자 11%</td> <td>입지 20% 설비투자 19%</td> <td>입지 40% 설비투자 24%</td> <td>75%</td> </tr> <tr> <td>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td> <td>설비투자 14%</td> <td>입지 25% 설비투자 24%</td> <td>입지 50% 설비투자 34%</td> <td>75%</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입지 10%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1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입지 9% 설비투자 1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20% 설비투자 19%	입지 40% 설비투자 24%	75%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설비투자 14%	입지 25% 설비투자 24%	입지 50% 설비투자 34%	75%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입지 10%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1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입지 9% 설비투자 1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20% 설비투자 19%	입지 40% 설비투자 24%	75%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설비투자 14%	입지 25% 설비투자 24%	입지 50% 설비투자 34%	75%																										
국내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20인 이상 	<p>※ 국비 한도 기업당 100억원</p> <p>※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할 수 없음</p>																												
개성 공업 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했던 123개 기업 • 지방, 수도권 투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지역</td> <td>설비투자 8%</td> <td>입지 20% 설비투자 21%</td> <td>입지 30% 설비투자 24%</td> <td>65%</td> </tr> <tr> <td>수도권 인접 지역</td> <td>설비투자 6%</td> <td>입지 10% 설비투자 18%</td> <td>입지 19% 설비투자 21%</td> <td>45%</td> </tr> <tr> <td>지원 우대 지역</td> <td>설비투자 11%</td> <td>입지 30% 설비투자 29%</td> <td>입지 40% 설비투자 34%</td> <td>75%</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입지 20% 설비투자 21%	입지 30% 설비투자 2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입지 10% 설비투자 18%	입지 19% 설비투자 2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29%	입지 40% 설비투자 34%	75%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입지 20% 설비투자 21%	입지 30% 설비투자 2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입지 10% 설비투자 18%	입지 19% 설비투자 2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입지 30% 설비투자 29%	입지 40% 설비투자 34%	75%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 신규 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대기업 300억)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 	<p>※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입지 지원 한도 5억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지역</td> <td>설비투자 8%</td> <td>설비투자 11%</td> <td>설비투자 14%</td> <td>65%</td> </tr> <tr> <td>수도권 인접 지역</td> <td>설비투자 6%</td> <td>설비투자 8%</td> <td>설비투자 11%</td> <td>45%</td> </tr> <tr> <td>지원 우대 지역</td> <td>설비투자 11%</td> <td>설비투자 19%</td> <td>설비투자 24%</td> <td>75%</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9%	설비투자 24%	75%					
유형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4%	65%																										
수도권 인접 지역	설비투자 6%	설비투자 8%	설비투자 11%	45%																										
지원 우대 지역	설비투자 11%	설비투자 19%	설비투자 24%	75%																										

* (일반 지역)강릉, 속초, 동해 / (수도권 인접지역)원주/ (지원우대 지역)그 외 시군, 기업도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지방비 지원대상(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내용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타시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 원 이상(제조업,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부지 매입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15%	3	
		투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15%	30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40%	60	
		일대료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본사 이전	중소기업	30%	10	
			5년내 임대료	30%		
교육 훈련	본사 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신증설	내용	기준	총 투자액의 20%	한도 (억원)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	60					

유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중대 규모 (이전,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금액 500억원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이전, 신설, 증설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중대 규모 (이전, 신·증설)</td> <td>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원 이상</td> <td>총 투자액의 40%</td> <td>80</td> </tr> <tr> <td>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원 이상</td> <td rowspan="4">총 투자액의 50%</td> <td>100</td> </tr> <tr> <td>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원 이상</td> <td>150</td> </tr> <tr> <td>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원 이상</td> <td>200</td> </tr> <tr> <td>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td> <td>300</td> </tr> <tr> <td>올류</td> <td>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td> <td>윤충비 50% (3년)</td> <td>30</td> </tr> </tbody> </table> <p>※ 타시도이전 지원 중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각 10억 한도내 지원</p>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중대 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40%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50%	10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원 이상	150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원 이상	2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300	올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윤충비 50% (3년)	30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중대 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40%	80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50%	100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원 이상		150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원 이상		200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300																																			
올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원 이상	윤충비 50% (3년)	30																																			
산업 발전 침체 지역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시도 1년 이상 경영 상시고용 이전 전·후 10인 이상 또는 투자 10억 원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공장, 분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부지 매입</td> <td>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td> <td>15%</td> <td>3</td> </tr> <tr> <td>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td> <td>15%</td> <td>30</td> </tr> <tr> <td>50명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td> <td>40%</td> <td>40</td> </tr> <tr> <td>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td> <td>50%</td> <td>60</td> </tr> <tr> <td>대기업</td> <td>10%</td> <td rowspan="3">30</td> </tr> <tr> <td>중견기업</td> <td>20%</td> </tr> <tr> <td>중소기업</td> <td>34%</td> </tr> <tr> <td>임대료</td> <td>5년내 임대료</td> <td>30%</td> <td>10</td> </tr> <tr> <td>본사 이전</td> <td>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td> <td></td> <td>10</td> </tr> <tr> <td>교육 훈련</td> <td>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td> <td></td> <td>10</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부지 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15%	30	50명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	40%	40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50%	60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4%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 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 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부지 매입	10명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투자	15%	3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15%	30																																			
	50명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	40%	40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50%	60																																			
	대기업	10%	3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4%																																					
임대료	5년내 임대료	30%	10																																			
본사 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10																																			
교육 훈련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내)		10																																			
산업 발전 침체 지역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통 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신증설</td> <td>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td> <td rowspan="4">총 투자액의 20%</td> <td>10</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td> <td>20</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td> <td>40</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td> <td>60</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	60																						
		내용	기준	비율	한도 (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원 이상	총 투자액의 20%	10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원 이상		20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원 이상		40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원 이상		60																																			

- 조세감면
- 법인세

구분			투자규모 · 조건	입주사항	감면내용
신설 · 창설 기업			제조업 : 100억 이상 연구개발업 : 20억 이상 항만 · 물류 등 : 50억 이상	2015년까지 입주	3년간 100% 2년간 50% (투자비의 70% 이내)
이전 기업	과밀 억제 권역	중소 기업	2년 이상 사업영위	2017년까지 입주	수도권 이전
		중견 기업 대기업	3년 이상 사업 영위	2017년까지 부지 매입 및 2020년 까지 입주	5년간 100% 2년간 50%

- 취득세 · 재산세

구분	감면내용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5년간 100% + 3년간 50%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	내용
부지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액 : 부지 공시지가의 1% · 투자금액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업종은 임대료 100% 감면 ·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은 임대료 75% 감면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소득세 : 사업개시 후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은 5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사업개시 후 15년간 전액 감면 · 종합토지세 : 사업개시 후 5년간 공제, 공제 후 3년간 50% 공제 · 관세 :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조례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투자 및 고용시 보조금 지원 - 시설보조금 : 30억원 이상 공장 신증설시, 2억원 범위내 지원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고용 후, 초과고용시 6개월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고용 후, 교육 훈련시 6개월 지원

나) 총주기업도시(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 기업도시 현황

사업목적	친환경, 자족형 복합신도시 *총주첨단형 기업도시 건설 * 지식균형발전, 투자활성화, 고용창출,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족적 복합신도시 건설
위치	총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
사업기간	2007~2020년(기반조성 2012년, 도시조성 : 2020년)
면적	7,009천㎡(212만평)
총사업비	6,352억원
주요용지	R&D 및 첨단 전자·정보 부품소재산업 등 산업용지, 주거상업용지, 공공용지
사업시행자	총주기업도시(주)

- 개발방향 : 지식기반도시, 생태환경도시, 유비쿼터스 첨단정보도시
- 입주대상(자격) : 제한사항 없음
- 총 7,009천㎡ 부지조성 완료
 - 토지이용계획 : 총 7,009천㎡(가용 3,494천㎡ 비가용 3,515천㎡)
 - 26개 기업 분양완료

[주요입주시설]



기업도시 전경 조감도



코오롱 생명과학



주거용지 조감도



상업용지 조감도

(2) 인센티브

(가) 보조금 지원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범위			지원금액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	
수도권 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투자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7%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2%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나) 세제혜택

구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일몰기한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중소기업 (조특법, 63조, 본점과 공장 이전기업)	4년 100% 2년간 50%	-	-	2017.12.31.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 (조특법 63조의2, 본점이나 공장 이전기업)	4년 100% 2년간 50%	-	-	2017.12.31. or 2020.12.31
③ 기업도시내 신설, 창업기업 (조특법 121의17조)	3년간 100% 2년간 50%	15년간 면제	5년간 100% 3년간 50%	2015.12.31
④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 (조특법 60조, 61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 후 5년간 분할납부 일몰 : 2017. 12. 31까지 양도해야 함			

※ 주의사항

- 세제 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 ②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은 2017.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2017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2020.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 ③투자비 100억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시행령 제116조의21)
- 취득세 감면 :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 재산세 감면 :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
- 법인세 혜택은 계약 전 기업의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을 통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다) 태안기업도시(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 기업도시 현황

사업목적	관광·레저·웰빙 시설이 복합된 고품격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 생태와 삼림이 공존하는 "Dream City"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사업기간	2007~2020년(시설조성 : 2025년)
면적	15,464천㎡(468만평)
사업비	1조 2,201억원
주요용지	복합휴양시설,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무인조종 교육·연구단지(UV랜드 등)
사업시행자	현대도시개발(주)

- 개발방향 : 고품격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발전 도모
* 비전 : 자연과의 소통, 삶의 활력 창출, 꿈꿔오던 삶, 미래를 향한 진취성
- 입주대상(자격) : 제한사항 없음
- 기업도시 내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 진행중
* 골프장 1단계·2단계, 관광숙박시설, 화훼보존화센터 준공, 자동차부품 산업 연구시설 공사완료

[주요입주시설]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골프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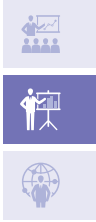
국제비즈니스단지

(2) 인센티브

(가) 기업이전 지원

●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대기업은 300억원)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공장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p>※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1,000만원 이내</p>
신·증설 기업 지원 (수도권 이전과 관련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영위하는 사업이 주력산업, 광역협력권 산업, 지역별 집중 유치업종 등에 해당 신규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범위 및 기준

구분	분담비율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우대지역 (태안 등)	75 : 25 (25%- 도:12.5%, 군:12.5%)	- 투자(11%)	입지(20%) 투자(19%)	입지(40%) 투자(24%)

- 입지보조금은 투자보조금(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 하나에 지원하는 국비 총합은 100억원 초과 불가
- 입지보조금은 수도권이전기업, 국내복귀 기업만 가능하며, 신청시 설비보조금을 동시에 신청
- 신청시기 :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투자보조금 신청시),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지보조금 포함 신청시)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 신청 필요

※ 주의사항

- 입지보조금 : 기존사업장 면적 X 5배 X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투자보조금(설비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 기계장비 구입비(고정형 한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 등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 및 기계장비 구입비의 10% 범위 내 인정)의 일부

(나) 세제혜택

구분	내용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업, 항만시설운영업, 항만물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업

구분	내용
법인세 및 소득세 (조세특례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업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관련 업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이용 전기 생산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5명 이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업, 항만시설운영업, 항만물류업 •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업

라) 영암해남기업도시(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 기업도시 현황

사업목적	“솔라시도”, 태양·바다·호수의 삼중주 월드 클래스 휴양·레저도시 * ‘솔라시도(SolSeaDo)’는 음계의 높은음자리 ‘솔,라,시,도’와 같은 소리의 값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일원에 조성되는 관광레저 기업도시 브랜드	
위치	구성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삼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원
	삼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사업기간	구성	2006~2025년
	삼호	2006~2025년
	삼포	2006~2021년
면적	구성	20,899천㎡(632만평)
	삼호	8,648천㎡(262만평)
	삼포	4,289천㎡(130만평)
총사업비	구성	4조 9,842억원(도시조성비 1조 4,383억원)
	삼호	1조 6,025억원(도시조성비 4,473억원)
	삼포	1조 9,451억원(도시조성비 4,402억원)
주요용지	구성	골프장, 호텔, 휴양문화시설, 신재생산업단지, 첨단농업단지 등
	삼호	골프장, 골프러닝센터, 리조트, 승마장, 상업시설 등
	삼포	F1경주장, 튜닝밸리, 자동차 테마파크 등
사업시행자	구성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삼호	서남해안레저(주)
	삼포	KAVO(주), 전남개발공사

- 개발방향 : 휴양형 관광레저도시,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도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 종합 스포츠레저도시
 - * 비전 : 미래 문명의 혜택을 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유 도시 건설(사람 중심 친환경 생태도시)
- 입주대상(자격) : 제한사항 없음
- 추진상황 : 구성(태양광발전단지 준공, 씀가든 정원조성), 삼호(사우스링스 골프장 준공), 삼포(F1 경주장 1단계 준공)

[주요입주시설]



태양광발전소(구성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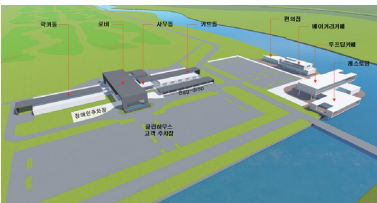
파인레이크 골프&빌리지(구성지구)



산이정원(구성지구)



솔라시도ESS(구성지구)



파크카운티 조감도(삼호지구)



썬카운티(삼호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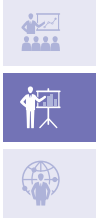
F1 경주장(삼포지구)



카트경기장(삼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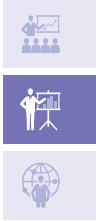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2) 인센티브

구분		내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제 감면 (법인세, 소득세)	외국인 투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3천만불 이상), 입주 기업(1천만불 이상) · 감면비율 : 3년간 100%면제, 이후 2년간 50%
		국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1천억원 이상), 입주 기업(1백억원 이상) · 감면비율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 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 투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3천만불 이상), 입주 기업(1천만불 이상) · 감면비율 : 15년간 100%면제
		국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 : 사업시행자(1천억원 이상), 입주 기업(1백억원 이상) · 감면비율 : 2022년까지 50%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예산의 지원, 선수금 수령 가능	-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개발지원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영주권 부여	· 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경우	
국고지원	진입도로/하폐수/용수시설 간선도로/공원/공동구	·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 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기업 임대 조건) · 고용훈련비 우선지원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대학교) ·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 진료 가능) · 외투기업 특례 - 사증발급 간소화 및 기간 연장 - 노동규제완화 : 의무고용, 유급휴가배제, 파견 근로자 규제완화 -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광시설 투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 관광업 1천만불 투자시 국세 3년 100% / 2년 50%, 지방세 15년간 감면 · 기반시설 : 관광업 2천만불 투자시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지정 및 개발 소요 자금 지원), 도로, 용수시설, 도시가스, 전력 및 폐수처리장 	



구분	내용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도비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유형: 수도권기업지방이전, 국내복귀기업, 지방신·증설기업 - 입지보조금: 설비 투자를 위한 토지매입가액 일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신·증설기업제외 - 설비투자보조금: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 • 지원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수도권기업 지방이전</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국내복귀 기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지방신·증설 투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td> <td>수도권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td> <td>「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7 조의 지원대상기업</td> <td>국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수행요건 (투자 사업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업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동일업종 영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td> <td>상시고용 30인 이상(특례 업종·지역: 10인 이상)</td> <td>신규 고용 20인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td> <td colspan="2">10억원 이상 투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 colspan="2">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td> </tr> </tbody> </table>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국내복귀 기업	지방신·증설 투자	지원대상	수도권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7 조의 지원대상기업	국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수행요건 (투자 사업장)	업종	동일업종 영위		고용	상시고용 30인 이상(특례 업종·지역: 10인 이상)	신규 고용 20인 이상	투자	10억원 이상 투자		기타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구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국내복귀 기업	지방신·증설 투자																		
	지원대상	수도권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30인 이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제7 조의 지원대상기업	국내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인 이상																		
수행요건 (투자 사업장)	업종	동일업종 영위																				
	고용	상시고용 30인 이상(특례 업종·지역: 10인 이상)	신규 고용 20인 이상																			
	투자	10억원 이상 투자																				
	기타	사업장 이전 * 기존사업장 폐쇄, 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기업당 국비 최대100억원 한도 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30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 최대150억원 한도 내)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3) : 목포, 영암, 해남 																						
지원비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대기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중견기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중소기업</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분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원비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입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일반: 10% 이내 우대: 20% 이내 특별: 25% 이내</td> <td>일반: 30% 이내 우대: 40% 이내 특별: 50% 이내</td> <td>일반지역: 국 65%, 지 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설비</td> <td>일반: 8% 이내 우대: 11% 이내 특별: 14% 이내</td> <td>일반: 11% 이내 우대: 19% 이내 특별: 24% 이내</td> <td>일반: 14% 이내 우대: 24% 이내 특별: 34% 이내</td> <td>우대·특별: 국 75%, 지 25%</td> </tr> </tbody> </table>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담비율	지원비용	입지	-	일반: 10% 이내 우대: 20% 이내 특별: 25% 이내	일반: 30% 이내 우대: 40% 이내 특별: 50% 이내	일반지역: 국 65%, 지 35%	설비	일반: 8% 이내 우대: 11% 이내 특별: 14% 이내	일반: 11% 이내 우대: 19% 이내 특별: 24% 이내	일반: 14% 이내 우대: 24% 이내 특별: 34% 이내	우대·특별: 국 75%, 지 25%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담비율																
지원비용	입지	-	일반: 10% 이내 우대: 20% 이내 특별: 25% 이내	일반: 30% 이내 우대: 40% 이내 특별: 50% 이내	일반지역: 국 65%, 지 35%																	
	설비	일반: 8% 이내 우대: 11% 이내 특별: 14% 이내	일반: 11% 이내 우대: 19% 이내 특별: 24% 이내	일반: 14% 이내 우대: 24% 이내 특별: 34% 이내	우대·특별: 국 75%, 지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특례 : 업종,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최대10%p 지원비용을 가산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 하는기업 •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중복지원불가) • 지원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지원분야</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지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지보조금</td> <td>(지원대상) 분양률 80%미만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항공산업, F1 인근 자동차 튜닝기업 (지원규모) 분양가의 30%까지 지원(4억원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보조금</td> <td>(지원대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토지매입비 등 (지원규모) 20억원 초과액의 5%까지 지원(5억원 한도),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용·교육훈련 보조금</td> <td>(지원대상) 2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 (지원규모) 1인당 월 60만원, 12월까지 지원(10억원 한도) * 정보기술 업종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5억원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보조금</td> <td>(지원대상) 혁신도시 개발구역과 일반산업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월 임차료 합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 3인 이상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지원규모) 연 임차료(월세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이행보증증권 수수료지원</td> <td>(지원대상) 지투보조금 수혜기업(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증설 기업 등) (지원규모) 증권 수수료의 2%(기업·도시군 = 50:25:25)</td> </tr> </tbody> </table>	지원분야	지원기준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분양률 80%미만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항공산업, F1 인근 자동차 튜닝기업 (지원규모) 분양가의 30%까지 지원(4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토지매입비 등 (지원규모) 20억원 초과액의 5%까지 지원(5억원 한도),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2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 (지원규모) 1인당 월 60만원, 12월까지 지원(10억원 한도) * 정보기술 업종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5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혁신도시 개발구역과 일반산업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월 임차료 합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 3인 이상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지원규모) 연 임차료(월세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이행보증증권 수수료지원	(지원대상) 지투보조금 수혜기업(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증설 기업 등) (지원규모) 증권 수수료의 2%(기업·도시군 = 50:25:25)									
	지원분야	지원기준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분양률 80%미만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항공산업, F1 인근 자동차 튜닝기업 (지원규모) 분양가의 30%까지 지원(4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토지매입비 등 (지원규모) 20억원 초과액의 5%까지 지원(5억원 한도),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2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 (지원규모) 1인당 월 60만원, 12월까지 지원(10억원 한도) * 정보기술 업종은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6개월 범위 내 지원(5억원 한도)																				
시설보조금	(지원대상) 혁신도시 개발구역과 일반산업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월 임차료 합계 3백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고용 3인 이상 정보기술업종 영위기업 (지원규모) 연 임차료(월세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 1년 단위로 투자내역 확인 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																					
이행보증증권 수수료지원	(지원대상) 지투보조금 수혜기업(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증설 기업 등) (지원규모) 증권 수수료의 2%(기업·도시군 = 50:2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투자 국내기업 특별지원 - 500억원이상 투자, 고용규모100명이상시 우대지원-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 등 포괄적 지원가능, 20억원 초과 투자액의10%(100억원한도) 																						

구분	내용															
<p>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도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국내·외기업과「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지원에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유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금액 미화 5천만불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국내투자기업)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100명 이상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고, 전·후방산업파급효과가 큰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 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지원범위: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포괄적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8e7cc3; color: white;"> <th colspan="2">지원기준</th> <th>지원한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8e7cc3; color: white;"> <th>투자금액</th> <th>상시고용인원</th> <th></th> </tr> </thead> <tbody> <tr> <td>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td> <td>고용100명이상~ 200명미만</td> <td>최대100억원</td> </tr> <tr> <td>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td> <td>고용200명이상~ 500명미만</td> <td>최대500억원</td> </tr> <tr> <td>5,000억원이상</td> <td>고용500명이상</td> <td>최대1,000억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금액: 보조금지원액(억원) = 투자액적용보조금(30%) + 고용규모적용보조금(70%) * 시·군과 협의하여 부지장기임대 및 무상제공·설비이전비용·기반시설·편의시설·인력양성 및 공급비용 추가지원 가능 	지원기준		지원한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고용100명이상~ 200명미만	최대100억원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고용200명이상~ 500명미만	최대500억원	5,000억원이상	고용500명이상	최대1,000억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고용100명이상~ 200명미만	최대100억원														
1,000억원이상~ 5,000억원미만	고용200명이상~ 500명미만	최대500억원														
5,000억원이상	고용500명이상	최대1,000억원														
<p>국내복귀(U-Turn) 기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② 동종의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기업**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이 30% 이상 지분보유, 실질지배(최대 주주, 대표자등)하는 기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입지(10~50%) 또는 설비(8~34%) 보조금지원(국비 100억원한도) - 조세감면 : (법인·소득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관세) - 100% 감면 : 설비도입, 사업장청산·양도시 - 50% 감면 : 사업장축소시 - 인력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해외인력고용지원) 비자발급지원, 병역특례 - 입지지원 : (국공유재산사용특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최대 50년), 임대료산정 특례 및 감면(최대 100%) (임대공장입주지원) 국가산단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산업단지지정) 동반복귀기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거 전용산업단지 지정요청 가능 - 금융지원 : 시설투자(최대 80%), 금리우대(수출촉진자금의 최대 0.3%), 보증보험 -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시설운영자금지원) 정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시 국내복귀기업에 가점 부여 <p>* 자동화솔루션구축사업(3점), 제조기업로봇도입공정혁신사업(2점) 등</p>															



구분	내용
<p>공익사업 투자미진제 적용지역</p>	<p>기본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 • 5년 이상 투자유지 시일정 기준에 따라영주(F-5)체류자격부여
	<p>공익사업 투자미진유형 (손익발생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기업도시'(2020년기준영암·해남, 태안의2개지구)
	<p>유형별투자미진 기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미진 : 5억원 이상 • 55세 이상의 은퇴투자미진 : 3억원 이상 *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체류자격 취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체류자격변경시 국내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p>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p>	<p>기업도시특별법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근거법 : 기업도시특별법30조「관광진흥법에 관한특례」 • 승인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레저가주된기능인기업도시 - 기업도시실시계획에반영완료 -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카지노업허가 •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의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5천억원 이상 - 카지노업 허가신청시 3천억원을 투자한 경우 * 관광사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 총 5000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자에게 카지노 허가

5) 문의

가) 원주기업도시

- 원주시청(033-737-3982)
- 원주기업도시(주)

(주거·상업·기타 1899-5218 / 산업용지 1577-5286)

나) 충주기업도시

- 충주시청(043-850-0750)
- 충주기업도시(주)(1544-8962 / 043-911-2007~11)

다) 태안기업도시

- 태안군청(041-670-2273)
- 현대도시개발(주)(041-674-6076)

라) 영암해남기업도시

- 솔라시도(전라남도, 전체정보)(061-286-3123)
- 영암군(삼호지구, 삼포지구)(061-470-2781)
 - 서남해안레저(주)(삼호지구)(061-464-0098)
- 해남군(구성지구)(061-530-5355)
 - 솔라시도(구성지구)(1644-4228 / 061-812-8114)

6)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나) 원주기업도시**

- 원주시청(<https://www.wonju.go.kr>)
- (주)원주기업도시(<http://www.wonjuec.co.kr>)

다) 충주기업도시

- 충주시(<https://www.chungju.go.kr>)
- 충주기업도시(주)(<http://www.nexpolis.com>)

라) 태안기업도시

- 태안기업도시(<http://www.taeane.com>)
- 현대도시개발(주)(<http://http://www.latierra.kr>)

마) 영암해남기업도시

- 솔라시도(전남도 운영, 전체정보)(<http://solaseado.go.kr>)
- 영암군(삼호 · 삼포지구)(<https://www.yeongam.go.kr>)
- 해남군(<http://www.haenam.go.kr>)
- 솔라시도(구성지구)(<https://www.solaseado.com>)

※ 자료제공 : 기업도시별 해당 지자체 및 사업시행사



▶ 다. 제주특별자치도

1) 개요

가) 조성목적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입지

(1) 제주투자진흥지구

-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육성 및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자유도시 구현하기 위하여 세제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1단지 :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경제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 2단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와 연계하여 IT·BT·CT·ET 등 첨단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3)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

- 제주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 지역 전략사업, 산·학·연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클러스터 구축

2) 입지별 세부내용

가) 제주투자진흥지구

(1) 세부유형

(가) 개별형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개의 사업 단위로 지정

(나) 단지형 투자진흥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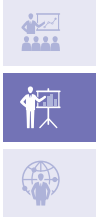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이 유원지 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 중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

(2) 주요특징

내·외국인 동등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지정이 가능

(3) 지정요건

구분	요건	내용		
개별형	대상자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대상업종 (28개 업종)	관광분야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 보세판매장 제외), 전문·종합휴양업(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첨단분야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사업, 연구개발업(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 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에 한함)	
		서비스분야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제조분야	식료품·음료제조업(공장), 화장품제조업	
		의료분야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교육분야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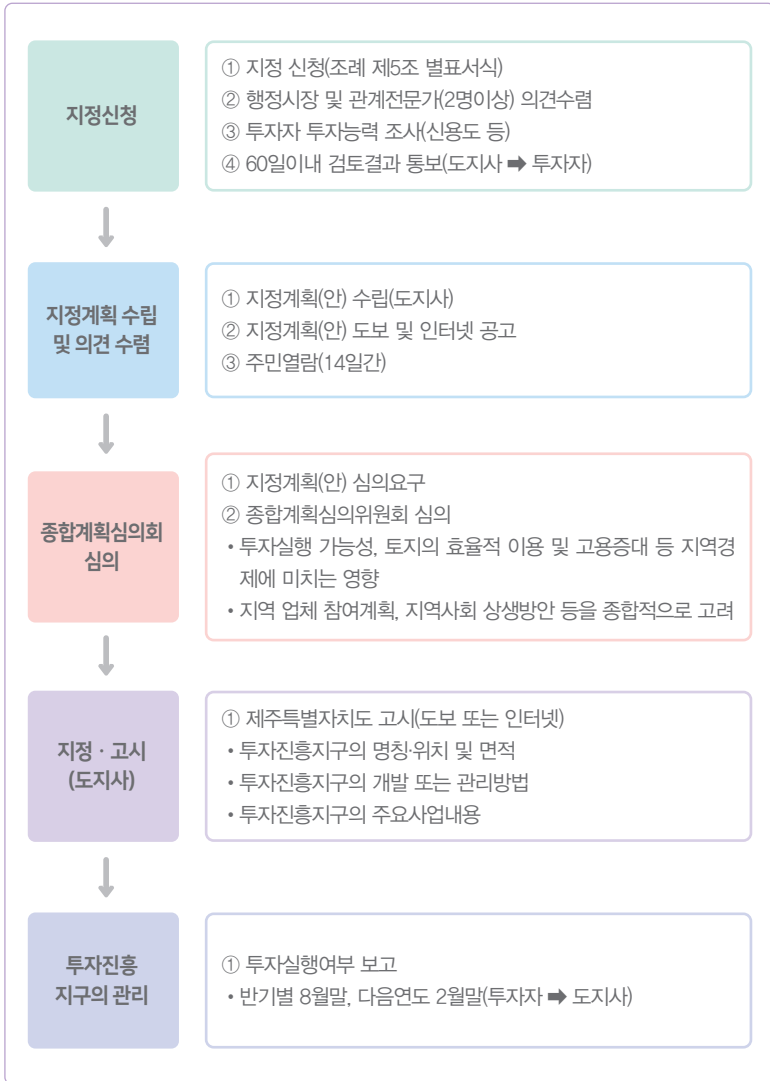


내용	요건	내용
개별형	투자액 (신청일 기준 환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분야 사업: 미화 2,000만불 이상 그 밖의 사업: 미화 500만불 이상 * 투자사업비 항목: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사전조건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다만, 도지사가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만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정가능 * 도지사 외 기관의 경우 사전 지정 불가
	신청기한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지형	대상자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 법인)
	대상업종	28개 업종(개별형과 동일)
	투자액	1천억 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3항
	사전조건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역



(4) 지정절차

투자자 혹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5)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가) 조세감면 : 2021년 12월 31일까지(일몰제 적용)

조세 구분	감면율		감면근거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50%감면 • 다음 2년간 2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 수입하는 자본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지방세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한함) • 토지 취득 시 사전감면 신청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2
	재산세	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		

- ① (입주기업) 개별형의 투자기업 혹은 단지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 (임대) 입주한 투자기업을 말함
- ② (과세연도) 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말하며,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
- ③ (지방세 감면 제한)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초과 시 85%만 감면
- ④ (기산일) 개별형은 지정일, 단지형은 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일자

(나) 각종 부담금 감면

부담금 구분	감면율	감면근거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52조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대체삼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8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 제57조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부감면기준 고시 제3조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단지

(가) 일반사항

구분	내용
위치	제주시 아라동 일원
면적	1,099천㎡(33만평)
입주대상	정보기술(IT), 생물화학(BT) 관련 첨단제조업, 연구개발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경 10km 내에 제주도 · 시청 · 제주국제공항 · 제주항 등이 위치 주변 고등교육기관 등을 통한 인력 및 산업연계성 확보 용이

(나)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구분	내용
매출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 국내 · 외 네트워크 활용 대외활동 지원, 수출 컨설팅, 바이어 · 투자자 매칭 지원 JDC 투자기업 연계 판로개척 지원 JDC면세점 제주 화장품 입점 지원 BLUE BAND 활용을 통한 브랜드가치 증대 등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전시 홍보관 운영 입주기업 제품 · 서비스 통합 홍보책자 제작 · 배포 첨단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JDC - 제주대학교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업 임직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민영아파트 우선 배정 문화행사 개최 및 공연 관람 지원 레저 · 여가 등 관광업체 제휴 서비스 시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시설 전경]



스마트 빌딩



엘리트 빌딩



세미양 빌딩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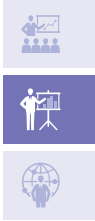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가) 일반사항

구분	내용
위치	제주시 월평동 일원
면적	848,163m ² (약 26만평)
유치업종	IT, BT, ET,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준공되어 운영중인 1단지(카카오 등 입주) 동측에 연결해 있음 • 반경 10km이내에 제주도, 시청, 제주공항, 제주항 등이 위치 • 사업대상지 주변 고등교육기관 등을 통한 인력 및 산업연계성 확보 용이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 '20.10. 부지조성공사 착공(2022.12. 공사완료 예정)

(3) 첨단과학기술단지 인센티브

구분	지원대상	보조 사업명	지원사항	
수도권 이전 기업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기업 이 분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기존 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 ※ 제외 대상 •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 업, 건설 업종, 무점포 판매업 ※ 지원 한도 • 기업당 100억 원(국비 75%, 도비 25%)	입지 보조금	대기업	해당 없음
			중견기업	토지 매입가액의 20% 이내
			중소기업	토지 매입가액의 40% 이내
		설비 투자 보조금	대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9% 이내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구분	지원대상	보조 사업명	지원사항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도비 100%)	입지 보조금	부지매입비의 25%	
		설비 투자 보조금	설비투자비의 10%	
		고용 보조금	12월 × 50만원 / 1인 (한도 1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6월 × 50만원 / 1인 (한도 1억 원)	
신·증설 기업	3년 이상 사업 실적, 10인 이상 상시 고용, 10억원 이상 투자 중 소기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사업장 영위 업종 광역 협력권 산업, 주력 산업, 지역 집중 유치 업종 등 투자 후 신규 고용 인원이 기 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 (최소 10명)이어야 함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지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100억원 (국비 75%, 도비 25%) 	설비 투자 보조금	대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9% 이내
		중소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정보통신 및 문화 산업	정보통신 및 문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해 도민 등을 상시 고용 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도비 100%)	임대료 (10명 이상 고용)	임대료의 50%, 3년간(한도 5억 원)	
		시설 장비 구입비 (10~50명 초과 고용)	초기 장비 구입비 지원 (한도 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인 초과 시 30% 20인 초과 시 40% 30인 초과 시 50% 	
		고용 보조금 (10인 초과 고용 시)	6개월 × 100만원 / 1인, 6개월 평균 임금 70% (한도 3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20인 이상 고용 시)	6월 × 50만원 / 1인 (한도 1억 원)	



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

(1) 일반사항

구분	내용
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면적	1,135,000㎡(약 34만평)
사업목적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하고 공항 및 도내 전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양호 · 도로·수도·하수도·전기·통신 시설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 지원 가능지역 · 9개 공공기관 이전 및 인근 영어교육도시 조성, 해군기지 건설,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욕구를 지닌 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이 가능

(2) 유치대상 업종

구분		KSIC*	산업명	
1순위	교육연수 산업군	연수	8564 직원훈련기관	
		교육	8530 고등교육기관	
		연구	7011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012	공학연구개발업
			7020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2순위	의료관광 산업군	의료	8610 병원	
		관광	7521 여행사업	
3순위	지역전략산업군	-	국제자유도시전략산업, 제주특별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제주특별자치도투자자유치우선산업	
	자연산업군	-	이전공공기관의 주요사업관련산업	

* KSIC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 기업 이전 시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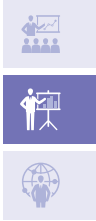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구분	인센티브	산업명
수도권 지역에서 3년이상 영업, 상시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보조금 지원	입지(45%) · 설비투자(15%) ·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 등
	중소기업자금 처리용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시설자금 30억원, 운전 자금 5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설자금 30억원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 6년간 100% 면제, 3년 간 50% 감면 취 · 등록세 : 100% 면제 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 에서 2년 이상 영업, 상시고 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	보조금 지원	입지(25%) · 설비투자(10%) ·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 등
	중소기업자금 처리용자 지원	-

3) 문의

- 투자진흥지구 :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064-710-3362)
- 산업단지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 기업과(064-710-2526)
- 혁신도시 : 제주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064-710-2714)
- 첨단단지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첨단산업처(064-797-5755)
- 헬스케어타운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의료산업처(064-797-5702)

4)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세특례제한법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u.go.kr>)
- 인베스트코리아(www.investkorea.or.kr/jeju)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제도(www.investjeju.go.kr)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www.jdcenter.com)



[제주투자진흥지구·외국인투자지역 전경]



제주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 자료제공 :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u.go.kr>)

4. 연구개발 · 기술 · 업종별 집적 지역

▶ 가. 연구개발특구

1) 개요

가) 정의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나) 조성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다) 기본개념 : “기술 · 아이디어 → 사업화(창업) → 기업성장 → 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2) 강소연구개발특구

가) 개념 :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 (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 · 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R&D특구로 지정 · 육성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

나) 연구개발특구와의 차이점

- 도입취지 : 강소특구 모델은 기존 5개 연구개발(R&D)특구가 양적요건을 맞추기 위해 광역 공간을 지정하여 미개발지 장기화 및 집적 · 연계 효과 저하 등의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하여,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신규 R&D특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기존특구와 강소특구 비교]

구분	기존특구	강소특구
지정 요건	양적 요건* 중심 * 대학 3개, 출연(연) 3개, 연구소 40개 등	질적 요건* 중심 * 기술핵심기관 및 지역의 질적 역량
육성 주체	중앙정부 주도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기술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 의무화(재정·행정 지원 보장)
연계 협력	산·학·연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부족	기술핵심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Bottom-up)
공간 규정	제한 없음 (부산 14.1km ² ~ 대덕 67.4km ²)	2km ² 개별 배후공간 상한 (전체 총량 20k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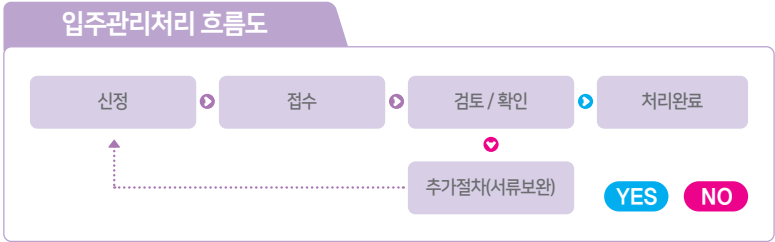
다) 운영방향

- 강소특구 중심의 지역 혁신을 위한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역할구분 : 강소특구의 주요 구성원이자 운영 동반자인 기술 핵심기관과 지자체의 역할 · 책임 명확화
 - 기술핵심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기획·집행에 공동 참여 및 혁신주체 연계·협력 등에 중요 역할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라 육성사업의 예산 부담(재정) 및 강소특구 지원 관련 조례 개정(행정) 등을 이행
- 지원 : 개별 강소특구마다 소재 지역의 특성 · 강점을 활용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플랫폼 프로그램」 체계적 추진
 - 지역 밀착형 기술사업화, 전략산업 고도화, 특화분야 전문인력 유치·양성·활용 및 지역 산·학·연 연계·협력 확대 등 추진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주체 참여 견인, 지역 이슈 해소 및 주력 산업·업종 전환의 교두보 역할 등 수행

3) 입주 관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 입주관련 서비스를 제공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won.innopolis.or.kr>



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업무

구분	내용										
특구육성사업	<p>목적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 육성</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분야</th> <th>지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특구 연구성과 사업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에 대한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시장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 및 유형별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추가상용화' → '공백 기술 매칭' → '시제품' → '사업화'의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td> </tr> <tr> <td>기업창업·성장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기업의 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 모델로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 검증부터 자금연계 까지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특구기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td> </tr> <tr> <td>강소특구 사업화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의 "기술연계-R&BD-창업-투자-특화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td> </tr> <tr> <td>지역현안해결형 R&B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R&D 현안 및 미래성장 수요를 특구 혁신자원을 통해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지역주도의 R&BD 혁신생태계 구축 </td> </tr> </tbody> </table>	지원분야	지원기준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에 대한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시장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 및 유형별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추가상용화' → '공백 기술 매칭' → '시제품' → '사업화'의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기업창업·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기업의 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 모델로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 검증부터 자금연계 까지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특구기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강소특구 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의 "기술연계-R&BD-창업-투자-특화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지역현안해결형 R&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R&D 현안 및 미래성장 수요를 특구 혁신자원을 통해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지역주도의 R&BD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분야	지원기준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연구성과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에 대한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필요 • 시장 중심의 공공기술 발굴 및 유형별 기술이전-출자를 통해 '추가상용화' → '공백 기술 매칭' → '시제품' → '사업화'의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기업창업·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기업의 설립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 모델로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 검증부터 자금연계 까지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특구기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강소특구 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의 "기술연계-R&BD-창업-투자-특화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지역현안해결형 R&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R&D 현안 및 미래성장 수요를 특구 혁신자원을 통해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지역주도의 R&BD 혁신생태계 구축 										
연구소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강소)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 • ①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②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 가치평가), ③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④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 도모 										
첨단기술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구분	내용
국제협력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해외마케팅지원,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기술 사업화 플랫폼 지원
크라우드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업, 특구제도 및 특구육성사업 참여기업, 과학벨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등 - 사회 전체 편익 제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파트너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고유 업()의 특성과 연관된 소셜 벤처를 발굴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자본조달/판로개척을 지원

* 사업별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참조

5) 연구개발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대덕특구 기준)

가) 주요혜택

구분	세부 내용																		
① 세금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특구법에 의한 연구소기업(제9조의3), 첨단기술기업(제9조)에 대한 세금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국 세</th> <th colspan="2">지방세</th> </tr> <tr> <th>소득세 및 법인세</th> <th>재산세</th> <th>취득세</th> </tr> </thead> <tbody> <tr> <td>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td> <td>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td> <td>면제 (23.12.31까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소득세 및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재산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제4조 (취득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 효과 : 부담금 감면으로 기업 지출 감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 최저한세 7%~17% 적용 	국 세	지방세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면제 (23.12.31까지)									
	국 세	지방세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면제 (23.12.31까지)																	
②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특구내 입주기관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지원규모 : 연면적당 부담 감면 및 면제 * 시설물 단위부담금(2019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타지역(원/1㎡)</th> <th>대덕특구(원/1㎡)</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3천제곱미터 이하</td> <td>1급지 : 400원</td> <td rowspan="3">350원</td> </tr> <tr> <td>2급지 : 400원</td> </tr> <tr> <td>3급지 : 350원</td> </tr> <tr> <td rowspan="3">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td> <td>1급지 : 1,200원</td> <td rowspan="3">600원</td> </tr> <tr> <td>2급지 : 1,050원</td> </tr> <tr> <td>3급지 : 650원</td> </tr> <tr> <td rowspan="3">3만제곱미터 초과</td> <td>1급지 : 1,400원</td> <td rowspan="3">900원</td> </tr> <tr> <td>2급지 : 1,250원</td> </tr> <tr> <td>3급지 : 9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타지역(원/1㎡)	대덕특구(원/1㎡)	3천제곱미터 이하	1급지 : 400원	350원	2급지 : 400원	3급지 :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급지 : 1,200원	600원	2급지 : 1,050원	3급지 : 6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급지 : 1,400원	900원	2급지 : 1,250원	3급지 : 900원
구분	타지역(원/1㎡)	대덕특구(원/1㎡)																	
3천제곱미터 이하	1급지 : 400원	350원																	
	2급지 : 400원																		
	3급지 :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급지 : 1,200원	600원																	
	2급지 : 1,050원																		
	3급지 : 6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급지 : 1,400원	900원																	
	2급지 : 1,250원																		
	3급지 : 900원																		

구분	세부 내용		
<p>②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p>	* 시설물 부담금 부과 산식(2019년 기준)		
	구분	타지역	대덕특구
	3천제곱미터 이하 ①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연도별 단위부담금(급지)×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②	①+(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연도별 단위부담금(급지)×교통유발계수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②+[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연도별 단위부담금(급지)]×교통유발계수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제4조 제2항 • 효과: 부담금 감면으로 기업 지출 감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p>③ 수도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특구내 입주기관에 대해 수도료 감면 • 지원규모: 수도료 누진(1단계) 완화 		
	구분	타지역(원/㎡)	대덕특구(원/㎡)
	0~50 이하	650원	100㎡ 초과 시 890원/㎡ 적용
	50 초과~100 이하	890원	
100 초과	1,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별표2] • 효과: 부담금 감면으로 기업 지출 감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p>④ 개발절차행정 지원</p>	<p>(1) 법률상 인허가 일괄의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실시계획의 승인시 협의, 신고, 지정 등 법률상 인허가 30여개 사무의 일괄 의제처리 • 근거: 특구법 제29조(허가등의 의제) • 효과: 일괄의제처리로 특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p>(2) 토지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가능 • 근거: 특구법 제31조(토지수용) • 효과: 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으로 빠른 사업 추진 가능 		
	<p>(1) 특구 녹지지역내 층고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층고 완화 - 4층(건폐율 20%, 용적률 80%) → 7층(건폐율 30%, 용적률 150%) • 근거: 특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제3항, 제50조 제3항 • 효과: 연구 관련시설의 건축 제한 완화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p>⑤ 특구지역층고 완화</p>	<p>(1) 특구 녹지지역내 층고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층고 완화 - 4층(건폐율 20%, 용적률 80%) → 7층(건폐율 30%, 용적률 150%) • 근거: 특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 제3항, 제50조 제3항 • 효과: 연구 관련시설의 건축 제한 완화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구분	세부 내용
⑥ 자금지원	(1)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개발사업시행자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의 부담금 감면 · 근거: 특구법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 효과: 부담금 감면으로 기업 지출 감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2) 특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용지매입비, 시설건설비 등 비용보조(50%범위내에서 보조) · 근거: (기반시설) 특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 (비용의 부담) 특구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 효과: 사업비 감소로 시행자의 사업성 제고 및 연구·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가능

* 특구 입주 시 주요혜택 각 지자체 세금감면 조례 참조

나) 제한사항

구분	세부 내용	제한대상
① 건축 행위 규제	(1) 건축물의 건축제한(별첨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내용: 특구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이외의 건축제한 · 근거: 특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효과: 허용 건축물제한으로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 유지·보전 가능 	특구내 해당구역 입주자
	(2) 건축물의 설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 근거: 특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효과: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 및 기반시설 범위내 개발 가능 	특구내 건축물 소유주
② 입주 업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내용: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 · 근거: 특구법 제34조 및 특구관리계획 · 산업시설구역 입주제한업종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배출업종, 지정악취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된 업종 · 효과: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연구·주거 환경 유지·보전 가능 	특구내 해당구역 기업 및 연구소
③ 부지 양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내용: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양도가격 제한 -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저렴한 부지공급 등을 위해 부지(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한함) 양도가격 제한 · 근거: 특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효과: 저렴한 부지 공급을 통한 연구개발시설 유치 활성화 및 부동산 투기 방지 	특구내 해당구역 기업 및 연구소

6) 지정현황

가)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구분	지정일자	지정목적	면적	범위	특화분야
대덕	'06.06.30	미래 첨단융합 산업 허브(HUB) 구축	67.5km ²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광주	'11.01.24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18.7km ²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 친환경 자동차부품, 스마트 그리드, 디자인문화 콘텐츠, 바이오 소재
대구	'11.01.24	IT기반 소재부품 융복합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22.2km ²	대구광역시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스마트IT융복합, 의료용기·소재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부산	'12.11.12	R&D 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14.1km ²	부산광역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도구·사하구·부산진구·연제구 일원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그린해양기계
전북	'15.07.13	그린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화	16.3km ²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일원	융복합 소재부품, 농·생명 융합

나)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19년 지정)]

구분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지정면적	특화분야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0.84km ²)	사업화촉진지구(0.18km ²) 사업화거점지구(0.71km ²)	1.73km ²	ICT융복합 부품소재
경남 김해	인제대(0.28km ²)	기술사업화지구(0.40km ²) 고도화거점지구(0.44km ²)	1.13km ²	의생명·의료기기
경남 진주	경상대(1.14km ²)	R&D융합지구(0.21km ²) 기술사업화지구(0.82km ²)	2.17km ²	항공우주 부품·소재
경남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0.20km ²)	기술사업화지구(0.43km ²)	0.65km ²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	포스텍(1.67km ²), 포항산 업과학연구원(0.36km ²)	사업화지구(0.14km ²) 생산거점지구(0.58km ²)	2.72km ²	첨단 신소재
충북 청주	충북대(1.41km ²)	사업화지구(0.79km ²)	2.20km ²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20년 지정)]

구분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지정면적	특화분야
경북 구미	금오공대(0.66km ²)	기술사업화지구(0.88km ²) 창업실증지구(0.08km ²) 제조생산지구(0.95km ²)	2.57km ²	스마트 제조 시스템
서울 홍릉	KIST(0.27km ²) 고려대(0.62km ²) 경희대(0.41km ²)	기술사업화지구(0.06km ²)	1.35km ²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1.02km ²)	이전사업화지구(1.23km ²) 창업생산지구(0.76km ²)	3.01km ²	미래형 전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0.26km ²)	기술사업화핵심지구(0.50km ²) 기술생태계순환지구(0.93km ²)	1.69km ²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저장
전북 군산	군산대(0.86km ²)	R&D 융합지구(0.05km ²) 사업화지원구(0.24km ²) 성과확산지구(1.55km ²)	2.70km ²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충남 천안 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0.24km ²)	R&D 창업융합지구(0.47km ²) 기술사업화지구(0.61km ²)	1.32km ²	차세대 자동차 부품

7) 문의

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5대특구, 강소형, 042-865-8800)

- 대덕(042-865-7013)
- 광주(062-603-5000)
- 대구(053-592-8364)
- 부산(051-293-4853)
- 전북(063-905-9742, 9745)

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자체 담당

구분	부서	연락처
경북 포항, 구미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	054-880-2431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	경상남도 신산업연구과	055-211-3173
경기 안산	경기도 과학기술과	031-8008-4006
충북 청주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팀	043-220-3424
서울 홍릉	서울특별시 특구기획팀	02-2133-8742
울산 울주	울산광역시 미래신산업과	052-229-6911
전남 나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061-286-6621
전북 군산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063-280-2178
충남 천안·아산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041-635-3959

8)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특구별 지정고시문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https://minwon.innopolis.or.kr)

※ 자료제공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 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1) 기본개념

가) 정의 및 조성배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과학벨트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다.
-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 거점지구 : 대전 유성구 신동(1,643천㎡), 둔곡동(1,802천㎡), 도룡동(260천㎡)
일원 총 3,705천㎡(약 112만평)

** 기능지구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일원

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위

구분	지구	면적	특징
거점지구	신동지구	1.64km ²	중이온가속기(RAON) / 연구용지 등
	둔곡지구	1.80km ²	산업·연구용지 / 주거·상업용지 등
	도룡지구	0.26km ²	기초과학연구원(IBS)
기능지구			세종시
			청주시
			천안시

다) 과학벨트 관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재단 주요임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의 수립 지원
 - 과학벨트 입주기관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
 -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배치도]



2) 거점지구 개발 · 관리

가) 정의 및 조성배경

- 추진목적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추진근거 : 과학벨트법 제12조, 과학벨트 기본계획 등

[거점지구 세부 지정현황]

구분	지구	면적	용도지역	주요시설
거점지구	신동	1.64km ²	연구용지	중이온가속기(RAON) 및 관련 연구시설
	둔곡	1.80km ²	연구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
	도룡	0.26km ²	연구용지,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기초과학연구원(IBS), 특허정보원

나) 주요시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bs기초과학연구원](#)에서 참조

다) 입주안내(승인절차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

(1) 입주신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서비스(bizbelt.innopolis.or.kr)를 통해 신청

(2) 허용업종

-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중이온가속기 등과 연계하여 전 · 후방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 11대 업종 지정·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 | |
|-------------------------|-----------------------------|
|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⑦ 기타 기계 및 장비 |
| ②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⑧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③ 금속가공제품 | 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④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⑩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⑤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⑪ 정보서비스업 |
| ⑥ 전기장비 | |

(3) 입주자격

● 기초연구구역 입주자격

기초연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 이어야 하며, 입주 전에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업구역 입주자격

산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입주 전에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함(관련 근거: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제12조의3)

- 또한 연구용지는 허용 건축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달리함

[연구용지]

1. 연구시설만 건축하여 입주하는 경우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 기관
-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구시설, 제조시설 등을 함께 건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1항을 충족 하며 동시에 2항 또는 3항을 충족하여야 함
- (1) 상기 1~7항 동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 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 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산업용지]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 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육성계획 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4) 입주혜택

- 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 등록세
3년(면제) + 이후 2년(50% 감면)	7년(면제) + 이후 3년(50% 감면)	면제

*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6년간 감면(4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8년간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자금융자이자보전, 취득세 혜택 등

보조금	자금융자이자보전 (연1~2%지원)	지방세(취득세)
지원대상 : 입지·설비 투자금액 각각 10억원 초과 투자 (지원한도 : 기업당 총액 100억원 이내)	대전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대전 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2021.12.31. 일까지 면제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용의 30% 이내	운전자금 : 한도액 5억원	
설비투자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시설투자비 : 한도액 20억원	

3) 기능지구 지원사업

가) 주요사업

구분	내용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와 기업의 제품개발을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 기능지구 내 설립된 공동연구법인 · 지원내용 : 특구-거점-기능지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연계·활용하여 단계별 제품개발 지원
대학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특구-거점지구 연구성과 연계·확산을 위한 기능지구 산·학·연의 사업화 연구역량 강화 · 지원대상 : 기능지구 내 설립된 대학 사업화 연구센터 · 지원내용 : 우수한 사업화 성과를 갖춘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 센터를 구축하여 기능지구 혁신 선도
기능지구 창업·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생력있는 창업 허브 육성 · 지원대상 : 기능지구의 이공계 분야 대학 또는 대학과 사업화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단을 구성 ·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 발굴, 사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매칭, 창업 후속지원 등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산학연계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과학벨트 미래 수요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 · 지원대상 : 이공계 분야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과 컨소시엄 · 지원내용 : 기업체 재직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체감형 리얼 프로젝트 기반 수업 및 융합형 실무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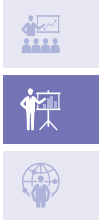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과학벨트 기술공급-수요자의 양방향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활성화 •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컨소시엄 • 지원내용: 과학벨트 유망기술 발굴, 기업수요 발굴, 기술매칭, BM 수립 등에 기술이전 제반사항 지원
맞춤형 과학사업화 종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Biz-Connect 센터 중심의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컨소시엄 • 지원내용: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기술솔루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지원하여 과학기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지원내용: 기업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공백기술 부분을 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과 매칭하여 후속 R&D 추진
과학기반 사업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발굴 및 교육, 멘토링을 통해 후속 투자연계로 기업 성장 가속화 -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컨소시엄(투자기능 갖춘 법인) -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초기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데모데이 등 스타트업 투자연계 지원 • 기능지구 기업 후속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기능지구 기업의 국내외 시장 확대, 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 지원대상: 기능지구 기업 또는 과학벨트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지원내용: 수요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시험분석 등을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밀착 지원

나) SB 플라자

- 과학벨트 사업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기능지구로 건립되는 시설물로서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로 구성된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로 건립되는 'SB플라자'를 통해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는 기능지구 별로 특화된 비즈니스 기반 과학·기술 사업화로 실현

[SB플라자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세종 SB플라자	개요	세종기능지구를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 확산의 공간적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시설
	위치	세종 조치원을 군청로 93
	준공일	2018. 7월
	건축면적	1,163㎡
	연면적	10,749㎡(지하2층, 지상10층)
	입주현황	비즈-커넥트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역산업기획단, 발명진흥회, R&D 기업 등
청주 SB플라자	개요	과학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주기능지구 핵심시설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준공일	2018. 7월
	건축면적	1,455㎡
	연면적	10,921㎡(지하2층, 지상5층)
	입주현황	비즈-커넥트센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R&D 기업 등
천안 SB플라자	개요	과학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개발연구를 통해 기업과 연계 하는 천안의 과학사업화 핵심시설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준공일	2018. 11월
	건축면적	1,821㎡
	연면적	9,970㎡(지하1층, 지상6층)
	입주현황	비즈-커넥트센터, R&D 기업 등



다) 비즈-커넥트 센터

(1) 소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3개 기능지구 SB플라자 내에 비즈-커넥트 센터(BCC)를 구축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통한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지원한다.

[위치 및 규모]

구분	세종 BCC	청주BCC	천안BCC
층별 / 면적	2층/350.96㎡(106.3평)	1층/358.59㎡(108.6평)	2층/280.93㎡(85.9평)
조감도			

(2) 역할

(가) 혁신적 기술창업의 공간제공

- 코워킹 창업공간 제공

구분	창업공간	창업지원프로그램
초기창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명 창업 공간 제공(3실) 독립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데모데이, 네트워킹 • BCC 내 프로그램 우선 지원 • 타사업연계 보육공간, R&D자금 지원, 투자유치 연계 등
Build-up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에이티브공간, 협업공간, 회의실 등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템 검증 등 창업 준비 프로그램 지원 • 기능지구별 창업경진대회 등 진행 창업기업 선정
아이디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공간제공(20좌석)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개방형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네트워크 지원 • 창업멤버 구성(게시판 활용) 팀별 멘토지원

-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능지구 내 창업붐 확산을 위한 요일별 고정적 테마 프로그램 운영

(나) 수요맞춤형 Non-Stop 전주기 지원

- 과학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운영
 - BCC를 통해 기술발굴-기술이전-창업-성장지원에 이르는 과학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 운영

[과학기술 사업화 전주기 기술발굴-기술이전-창업-성장지원 플랫폼]

구분	내용
사업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금융, 멘토링,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액셀러레이터, VC, 사업화 전문기관 등과의 컨설팅을 위한 개방형 상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예비 창업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STEP-UP공간(오픈형 → 지정성 → 개별공간) 및 소통이 가능한 창업 공간으로 구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셀프형 카페 라운지, 공유게시판, 강연 등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구성

4)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가) 지정목적 및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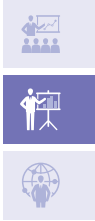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 지정목적 : 바이오가능성 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활성화, 양질의 고용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지정현황 : 2020. 9.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승인 및 지정고시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산업13블록, 산업16블록)
- 면적 : 83,566㎡

다)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 입주한도
 - 최소 투자금액 : 임차부지 가액의 1배 이상
 - 공장 건축면적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을 충족(최소 12% 이상)
- 유치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기술수반 사업
 -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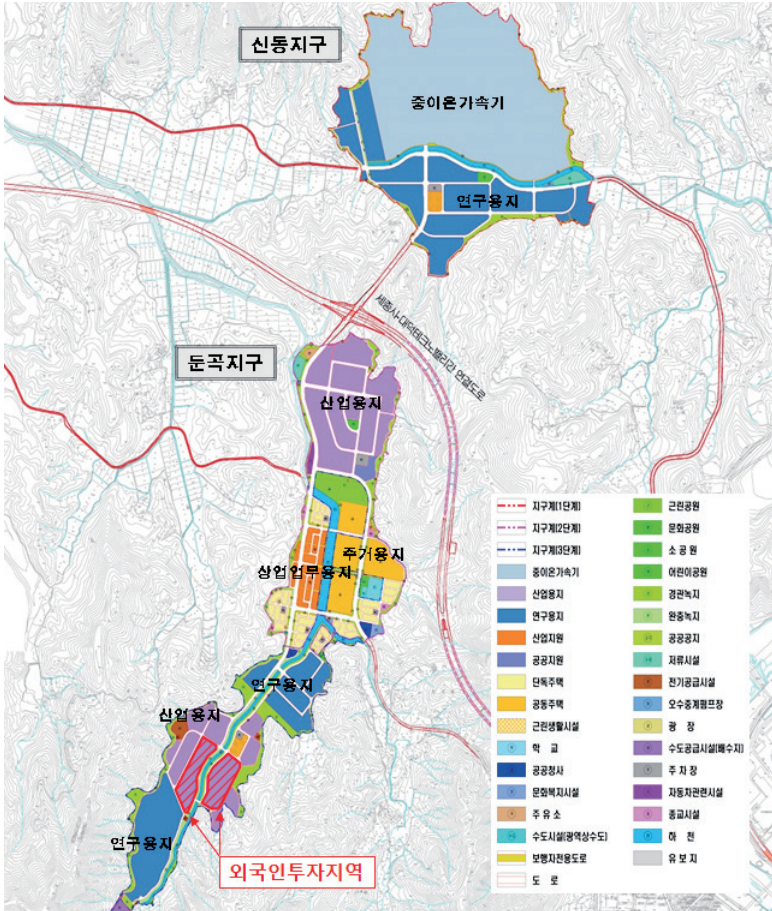


-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라) 인센티브

구분	내용
<p>조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 2백만 달러 이상 • 관세 면제: 수입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100% • 지방세 면제(취득세,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기술 수반사업: 취득세,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 만큼 감면) -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외국인투자 비율 만큼 감면)
<p>부지임대료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감면(해당 면적 부지가액의 5% 이상 → 1% 이상) • 입주 임대료 1%에 관하여 조건 충족 시, 국가 소유분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감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 100만\$ 이상, 신성장동력산업: 10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250만\$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70명 이상 제조업: 100%~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500만\$ 이상, 제조업: 75% 감면 • 입주 임대료 1%에 관하여 조건 충족 시, 市 소유분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감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 100만\$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10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2,000만\$ 이상: 100% 감면 - 전체 생산량 100% 수출하는 외투기업: 100%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 2,000만\$: 75% 감면 - 전체 생산량 75%이상 100%미만 수출하는 외투기업: 75%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 500만\$ ~ 1,000만\$: 50% 감면 - 전체 생산량 50%이상 75%미만 수출하는 외투기업: 50% 감면
<p>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2021. 12. 31.까지 등록한 기업) • 혜택: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p>대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조금: 20억 초과액의 5% 내 지원 가능(한도: 5억원) • 고용보조금: 대전시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한도: 6개월 범위, 2억원) • 교육훈련보조금: 대전시 거주 시민 20명 초과 신규고용하여 교육훈련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가능 (한도: 6개월 범위, 2억원)

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투자지역 배치도



5) 문의

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대표번호 : 042-865-8800)

나) 분야별 문의처

● 입주/분양 관련

• 입주업종 부합여부 및 입주승인 절차 안내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기획팀 042-865-8951~8952

* 입주 신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서비스 <http://bizbelt.innopolis.or.kr>” 온라인 절차로 진행

* 입주승인 취소와 착공시한 미준수 등 각종 입주민원 관련 : 과학벨트기획팀

- 공사 관련
 - NH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판매부(042-470-0163,0171)
 - NH대덕과학벨트사업단(042-820-7742)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대전광역시(042-270-3755~7)
- 대덕특구 인센티브
 - 과학벨트 지원사업 : 특구재단 과학벨트육성팀(042-865-8843)
 - 대덕특구 육성사업 : 사업총괄팀(042-865-8833)
 -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 : 042-865-8976

6)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지정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2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서비스(<https://bizbelt.innopolis.or.kr>)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자료제공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대전광역시(<https://www.daejeon.go.kr>)

▶ 다. 첨단의료복합단지

1) 기본개념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등이 조성돼 있는 의료 단지로서, 국가가 의료 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 의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이 최초로 결정되었고, 2009년 8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2곳이 최종 선정되어 대구 경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를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다.

2) 조성목적

-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R&D 인프라를 조성하여 보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2038년까지 8조6000억 원: (시설운영) 3.7조 원, (R&D) 4.9조 원 예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야별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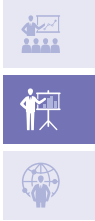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 가) **신약** : 병원·대학 등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효능 평가, 최적화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나) **의료기기** : 병원·기업 등이 개발한 첨단의료기기에 대하여 설계·시제품 제작·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다) **지원시설** : 동물실험을 위한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용 신약을 소량 생산하는 의약생산센터, 소규모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센터
- 라) **입주·편의시설** : 국내외 첨단의료 R&D 연구소, 벤처 등이 입주하여 연구개발 지원, 공동연구 수행, 정주여건 지원

4)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 :

각종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특례

구분	내용
의료법	· 외국 의료인(외국 의사, 치과의사)의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허용
건강보험법	· 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약사법, 의료기기법	·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 제조업 허가 및 시설규정 등 미적용 ·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허가 및 신고 간소화 ·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에 대한 국제규범 적용
생명윤리법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별도 심의 · 단지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연장(2년 → 5년)
특허법	· 단지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인센티브

구분	내용
세제 지원	·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지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조성 및 지원 가능 · 입주 의료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의 결성 지원 ·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
휴·겸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내용 :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근무를 위해 휴·겸직허용(3년이내)

5) 지정현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현황]

명칭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 (오송단지 내)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지정시기	2009.12.30	2009.12.16
면적	1,131천㎡	1,054천㎡
특화분야	바이오신약 / BT 기반 의료기기	합성신약 / IT 기반 의료기기
사업기간	2009년~2038년 (단지조성 2009년~2013년)	
지정목적	첨단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지정목적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 등	

* 출처 : 2020 산업입지요람(2020), 2019.12월 기준

6) 단지별 세부현황

가) 충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1) 단지개요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면적 : 1,131.054m²)
- 특화분야 : 바이오신약(의약품), B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기기)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별 면적]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1,131.1천m ² (100.0%)	768.1천m ² (67.9%)	520천m ² (46%)	116.7천m ² (12.1%)	20.1천m ² (2.6%)	111.3천m ² (9.8%)	363천m ² (32.1%)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



(2) 입주자격(절차 및 선정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가) 입주유형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분양(충청북도)
- 연구실 임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산학융합본부 등)

(나) 입주대상 및 자격

-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 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

•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 및 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 입주자격

• 연구인력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연구시설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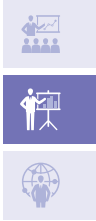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3) 인센티브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구분	내용
입주 기관 지원	• 첨단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가능
	• 해당 사업 실패로 융자금 상환 불가능 시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가능
	•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감면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자체는 입주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가능
	• 국가 및 지자체는 소유 중인 국공유 재산을 입주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가능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입주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겸직 가능

구분	내용
규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상한 기간 5년(※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해당 사증보유외국인의 체류상한 기간을 2~5년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외국 의료인은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의료봉사 관련 업무만 의료행위 가능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한 의약품 제조신청시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식약처 지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수량 등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으면 약사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식약처에게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또는 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시 첨부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약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표기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제조품목의 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가능
규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제조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연구개발 목적으로 식약처 지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품목·수량 등에 대하여 수입 승인을 받으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식약처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신청 시 첨부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에 한하여 신청서를 식약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표기가능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 기준 등에 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구 등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복단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 입주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가능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입주기관은 첨부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능



(나) 재정지원(충북도 내 투자기업 대상)

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용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신규 고용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
국내기업 투자지원	수도권, 비수도권 신증설기업, 국내복귀 기업 등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예산범위 내)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연구소의 토지 매입비, 건축비, 취득비 등 투자금의 10% 이내(최고 10억원까지) 공장, 연구소 이전시 토지매입, 건축, 시설 설치 등 총 투자비가 10억원 초과시 10% 이내(최고 50억원까지)
특별지원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해당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1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3년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	입지지원	토지를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분양가 차액 보조, 예산범위 내) 국·공유재산 임대료 100%감면(100만\$ 이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투금액 2천만\$ 이상, 1일 평균고용인원 300명 이상 사업) ※ 조건 미달시 75%, 50% 감면
	현금지원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연구시설 신·증설시(석사급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 사업)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20명 초과 신규 채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6개월 한도)
	고용보조금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6개월 한도)
	기타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파견 근로자 기간·대상 업무 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 건당 미화 2만\$ 이하 범위내 무신고 외환 거래 허용

(다) 세제지원

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용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	국세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무소득일 경우 5년간),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의료법인의 의료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20)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면(~'21)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 ~'22) 취득세, 재산세 35% 감면 (중견대기업, ~'22)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3년간, 이후 2년간 50% 감면, ~'20)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 이전시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21), 재산세 면제 (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 ~'20)
외국인 투자기업 부설 연구소 등	국세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외국인 투자비용에 따라 차등감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15년간 100%	외국인투자비용에 따라 차등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개인 지방 소득세	사업개시(무소득일 경우 5년내 소득발생일)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라) 기타지원

구분	지원구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특별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1,700억원(창업·경영안정·벤처기업지원자금 등)
	우수 중소· 벤처기업 지원	경제특별도 펀드(500억원), 바이오토피아펀드(11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 자금 지원 : 최대 30억원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입주 의료기관 연구개발비 지원(BIG 메디컬 기금 1,200억원 조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및 자녀 장학금 지원 : 인재양성재단기금(333억원)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연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나)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1) 단지개요

-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면적 : 1,026,886㎡)
- 특화분야 : 합성신약(의약품), I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기기)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별 면적]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계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1,026.9천㎡ (100.0%)	439.0천㎡ (42.8%)	326.5천㎡ (31.8%)	62.4천㎡ (6.1%)	23.4천㎡ (2.3%)	26.7천㎡ (2.6%)	587.9천㎡ (57.2%)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감도]



(2) 입주자격(절차 및 선정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가) 입주대상 기관

- 입주대상 기관
 -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 연구기관
 -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산업에 부합한 기관의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
 - *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련된 기관
- 입주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이 단지의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공해·용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한 기관

(나) 입주자격 기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시설 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연구인력 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 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항상 확보해야 함
 -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 2018. 10. 23(3명 → 1명)
- 연구시설 기준
 -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1개 이상의 연구실
 - 연구 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 공기정화, 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3) 인센티브

(가) 세제지원

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용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	국세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8년부터 10년간 85% 이후 3년간 50%
외국인투자비 영리법인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	국세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특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면제 ('18년부터 85%)
		재산세	15년간 100% ('18년부터 85%)
			※ 외국인 투자비율 기준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입주기관의 유형 및 규모,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나) 재정지원

구분	지원구분	지원내용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등	입지보조금	총 투자금액의 5%
	시설보조금	총 투자금액의 10%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6개월 한도)
외국인투자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총 투자금액의 50% 이내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10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교육훈련 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기업부설연구소 10명) 초과 신규고용 후 교육훈련 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6개월 한도)
	현금지원	외국인 투자비율 30%이상 시 외국인직접 투자(FDI)금액의 일정비율 지원

(다) 규제지원

관련법	규제완화(특례) 내용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의료인에게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 허용
건강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 임상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약사법 의료기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의약품·의료기기도 품목허가 취득 가능 연구목적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및 신고 간소화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 기준 등을 국제 규범 적용
생명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심의 단지 내 기관은 공동으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활용
출입국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2 → 3년)
특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연구개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첨단의료단지법 제2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 대상 : 첨복단지 입주기관 및 기업
- 면적 : 바닥면적 3,000㎡ 이하의 생산시설
- 품 목 :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의약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에 정의된 의료기기

(마) 기타 지원사항

- 첨복단지 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 정부 R&D 과제 추진 시 행정적 지원
- 지역 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한 개발제품 시장판로 확대

7) 문의

가) 오송

- 충청북도(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 043-220-4544)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본부 지역산업진흥팀, 043-200-9052)

나) 대구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지역협력사업팀, 053-790-5168)
- 대구광역시(혁신성장정책과, 053-803-6593)
- LH(대구경북본부 토지판매부, 053-603-2582)

8)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https://www.kbiohealth.kr>)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https://www.dgmif.re.kr>)
- 대구메디온(www.medion.re.kr)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https://www.kbiohealth.kr>),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https://www.dgmif.re.kr>)

▶ 라. 뿌리산업특화단지

1) 기본개념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3년부터 지정·운영 중이다.

*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2) 조성목적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을 통해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공동 활용시설 구축 지원과 공동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집적된 뿌리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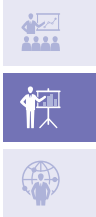
* 정부는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여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뿌리산업특화단지, 뿌리산업 선도단지 등 뿌리산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뿌리기술·뿌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원제도

- 지원한도 : 공동활용·편의시설 구축 총사업비의 최대 50%, 공동혁신활동 과제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국비 지원
- 지원대상
 - 에너지저감시설, 공동물류시설, 설계지원시설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 공동식당,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커뮤니티센터 등 특화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 공동혁신과제 기획, 기업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환경규제 대응 강화 등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들 간 협업할 수 있는 활동

4) 특화단지 지정현황

년도	특화단지명	지역	위치	특화업종	업체수 (현황)
'13년 (4곳)	안산도금협동화단지	경기 안산	반월 국가산단	표면처리	18개
	친환경표면처리센터	인천	검단 일반산단	표면처리	216개 (입주중)
	반월도금단지	경기 안산	안산반월도금 일반산단	표면처리	56개
	밀양하남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밀양	밀양하남 일반산단	주조	42개 (입주중)
'14년 (8곳)	스마트허브피앤피단지	경기 안산	시화 국가산단	표면처리	27개
	매곡뿌리산업특화단지	울산	매곡 일반산단	금형, 소성가공	45개
	온산첨단뿌리산업단지	울산	온산 국가산단	주조	50개
	남동인더스파크 청정지식산업센터	인천 남동	남동 국가산단	표면처리	25개
	진주금형산업단지	경남 진주	진주뿌리 일반산단	금형	14개 (조성중)
	장림도금단지	부산	부산장림 일반산단	표면처리	64개
	대불뿌리산업특화단지	전남 영암	대불 국가산단	용접	10개
	순천뿌리산업특화단지	전남 순천	해룡 일반산단	주조, 소성 가공, 용접, 표면처리	11개 (입주중)
'15년 (5곳)	물드벨리	경기 부천	오정 일반산단	금형	66개
	시흥도금산업클러스터	경기 시흥	시화 국가산단	표면처리	50개
	금형특화단지	광주	평동 일반산단	금형	24개
	군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군산	군산 국가산단	금형, 소성 가공, 용접	48개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완주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금형, 용접	21개



년도	특화단지명	지역	위치	특화업종	업체수 (현황)
'16년 (4곳)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	대구	성서 일반산단	표면처리	14개
	밀양용전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밀양	용전 일반산단	주조	12개 (입주중)
	광양익신뿌리산업특화단지	전남 광양	광양익신 일반산단	용접, 열처리	12개 (조성중)
	경인도금단지	경기 안산	반월 국가산단	표면처리	21개
'17년 (4곳)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경북 고령	고령1 일반산단	주조	49개
	은남도금사업협동특화단지	경기 양주	양주 일반산단	표면처리	27개 (조성중)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부산	녹산 국가산단	표면처리	12개
	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경기 화성	화성향남제약 일반산단	표면처리	32개
'18년 (4곳)	광주평동친환경 표면처리특화단지	광주	평동3차 일반산단	표면처리	20개 (조성중)
	IkSan-U주얼리특화단지	전북 익산	익산제3 일반산단	표면처리	27개
	옥천군뿌리산업특화단지	충북 옥천	옥천제2의료기기 산단(일반)	뿌리산업	14개 (조성중)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	대구	성서 일반산단	금형	37개
'19년 (4곳)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경북 구미	대구국가산단 (2단계)	금형	17개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대구	구미국가산단 (1단지)	표면처리	12개 (조성중)
	부산녹산표면처리특화단지	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표면처리	50개
	익산뿌리산업특화단지	전북 익산	익산 제2일반산단	뿌리산업	36개
총 33개 단지					1,179개

5) 뿌리산업 일반

가) 정의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6대 업종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명명

[6대 뿌리기술]

제품의 형상제조 공정				특수기능 부여공정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나) 특징

(1) 제조산업 기반

- 주력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으로 뿌리기술은 자동차, 조선, IT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어 최종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주력제조업 품질경쟁력의 핵심
- 공정산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되어 개도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선진국의 숙련기술 영역
 - *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산업에 대응하는 뿌리기술을 첨단장비로 구현하여 뿌리 산업을 선도

(2) 신산업 필수기술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바이오, 드론, 친환경 경차, OLED, 반도체 등 신산업에도 필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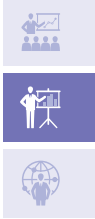
다) 뿌리산업 인프라(뿌리산업특화단지 제외)

(1)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 지역별 특화 지역별 특화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뿌리기술지원센터(파일럿 플랜트) 설립 및 공동활용 장비구축, 전문인력 활용 기술지원으로 중소 뿌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공동활용 R&D인프라인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구축하여 시험분석, 기술지도, 시제품제작, 기술자문 등 뿌리기업의 기술 개발 및 애로 해결을 지원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순번	구분	특화분야	센터위치
1	시흥	6대 분야	시화반월공단
2	진주	금형, 소성가공	정촌 일반산단
3	김제	주조, 소성가공	지평선 산단
4	광주	용접	광주 첨단산단
5	고령	주조	다산 주물단지
6	부산	표면처리	미음산단
7	울산	주조, 용접	테크노 산단
8	원주	금형, 소성가공	강원TP
9	대구	소성가공	테크노폴리스 산단
10	순천	소성가공, 표면처리	해룡산단



(2)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정·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단지 중우수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
- 선도단지 지정·육성으로 3D 이미지 개선 및 입지 문제 해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개 단지(부산장림표면처리선도단지) 시범 사업 지원 중

라) 뿌리산업 지원산업(특화단지 제외)

구분	사업목적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사업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뿌리기술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첨단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명가지정 사업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뿌리산업을 발굴·포상하여 뿌리기술의 유지 및 승계와 뿌리 산업 분야의 우수성 홍보
일하기 좋은 뿌리산업	근무/복지환경, 경영안정성,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지원함으로써 뿌리산업의 근무/복지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화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	뿌리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력 확보를 위해 이론 현장실무를 겸비한 석사급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취업 연계 지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뿌리산업 분야 숙련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대학 소속의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취업 연계 지원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 *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할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뿌리산업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서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7-4)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재직기업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뿌리산업 실태조사	뿌리산업 정책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 뿌리산업 지원 정책 실행에 따른 성과분석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지원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 뿌리업종별 스마트 공정시스템 기획·구축을 통해 HW+SW, 공정단위, 업계 문제해결 중심의 뿌리공정 혁신 촉진

* 세부 내용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문의

6) 문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44, 1646, 1628)
- 특화단지 내 입주관련 : 지역별 특화단지 소재지의 산업단지 관리기관

7)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정

-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 뿌리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re.ke) : 뿌리산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공고,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 통계 등
- 뿌리기술지원센터(ppuritech.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장비이용,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0), 2020 뿌리산업 백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자료제공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s://www.kpic.re.ke>)



▶ 마. 물류단지

1) 기본개념

가) 정의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단지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장·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임

나) 조성목적 : 물류시설의 집단화, 공동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다) 지정권자 : 국토부장관(100만㎡ 초과), 시·도지사(100만㎡ 이하)

[물류단지 세부시설 및 기준]

물류단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 : 물류단지시설용지 내 물류시설용지 60% 이상 - 물류터미널, 컨테이너시설,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상류시설 :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 복합시설 : 물류시설 + 상류시설 + 지원시설
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제조 시설 • 정보처리시설 •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주거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숙박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복합시설(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 공원 • 철도 • 녹지 • 구거 등 • 주차장(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

2) 물류단지 공급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
운영중 (23)	부산 감천항	부산 서구	206,408	'91~'09
	대전	대전 유성구	463,887	'98~'03
	음성	충북 음성군	283,934	'98~'07
	강릉	강원 강릉시	173,236	'99~'18
	여주철시	경기 여주시	264,242	'99~'10
	울산 진장(1단계)	울산 북구	453,436	'00~'07
	천안	충남 천안시	451,182	'00~'11
	평택 도일	경기 평택시	486,062	'03~'08
	광주 도척	경기 광주시	278,016	'03~'09
	서울 동남권	서울 송파구	560,694	'04~'14
	전주 장동	전북 전주시	189,151	'04~'07
	안동	경북 안동시	225,411	'05~'07
	부천 오정	경기 부천시	457,856	'08~'16
	남대전 종합	대전 동구	558,868	'08~'13
	광주 초월	경기 광주시	682,398	'09~'14
	안성 원곡	경기 안성시	682,398	'09~'14
	이천 패션	경기 이천시	796,706	'09~'13
	영동 황간	충북 영동군	263,179	'09~'15
	김포 고촌	경기 김포시	894,454	'10~'13
	경인아라뱃길 인천	인천 서구	1,145,026	'10~'14
	화성 동탄	경기 화성시	460,670	'10~'15
	울산 진장(2단계)	울산 북구	206,429	'11~'18
	안성 미양	경기 안성시	136,554	'14~'15
공사중 (8)	무등	경남 고성군	273,799	'13~'20
	익산 왕궁	전북 익산시	434,085	'13~'21
	울산 삼남	울산 울주군	137,227	'14~'20
	광주 직동	경기 광주시	571,410	'16~'21
	광주 오포	경기 광주시	189,597	'16~'19
	군산	전북 군산시	329,452	'16~'21
	남여주	경기 여주시	207,399	'16~'19
	김해 상동	경남 김해시	97,745	'18~'20
합계		31개소	12,143,042	-

* 자료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www.nlic.go.kr)



3)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9)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044-201-4015)

4)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s://www.nlic.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s://www.nlic.go.kr>)

▶ 바. 환경산업연구단지

1) 조성목적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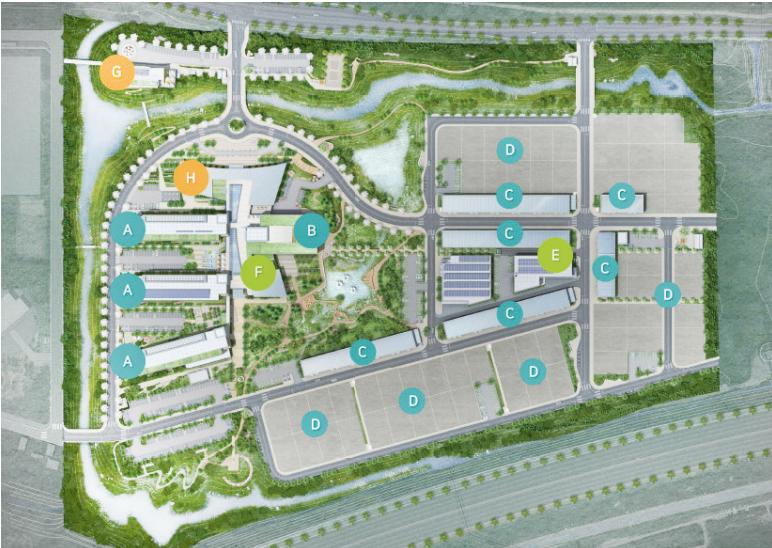
- 환경기술개발부터 모형실험, 시제품 제작, 현장적용 실증실험,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의 사업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단지 조성
 - 환경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신산업 발굴 등에 기여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나) 주요기능

-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최적의 기술개발 환경 제공
- 환경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토대 마련

2) 시설개요

가) 주요시설



(1) ㉠ 연구시설, ㉡ 창업·벤처시설



연구사무실(76실, 100㎡ 내외)



환경벤처센터(27실, 70㎡ 내외)

(2) ㉢ - ㉤ 실증·실험시설

- ㉢ 파일럿테스트동 6,661㎡ / ㉤ 테스트베드 23,770㎡(부지)



파일럿테스트(56실, UNIT당 110㎡ 내외)



(3) ㉥ - ㉦ 지원시설

- ㉥ 시제품 제작시설(3D프린터, 3D스캐너 등, 입주기업 대상 이용료 무료)
- ㉦ 강당(251석 및 4개 동시통역실), 세미나실(56인용, 2실), 회의의실(20인용, 3실), 중회의실(10인용, 3실), 홍보전시관(기업 제품 전시)

(4) ㉧ - ㉨ 편의시설

- ㉧ 게스트하우스(총46실, 싱글·트윈·스위트룸 / 장기이용 가능)
- ㉨ 체육시설(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실), 구내식당(220석), 매점, 카페 등

3) 환경벤처센터 운영

가) 환경벤처센터

(1) '환경벤처센터' 설치·운영

-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아이디어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
 -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집적화한 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업역량강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IR자료 컨설팅 및 제작, 1:1 IR 전략 컨설팅, 모의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중장기 기술 로드맵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획득비용 지원 등
컨설팅 지원	종합상담센터 컨설팅 서비스 연계지원 (기업닥터 등)

[환경벤처센터 내부]



환경벤처센터 비즈니스 라운지



환경벤처센터 사무실

나) 환경창업랩

- 초기 환경(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 제공

(1) 입주자격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접수일자 기준), 총 임직원 5인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 모집방법 : 상시모집(공석 발생 시)

(2) 공간구성

- 사무공간 : 5개실 17석, 네트워킹 공간 : 380㎡

구분	규모	총 좌석	주요용도	비고
4인실	3개실	12	사무공간	좌석 별 인원 배치
3인실	1개실	3		
2인실	1개실	2		

※ 독립형 사무공간은 제공하지 않음, 1인 1좌석 임의 배치

※ 기본 책상, 의자 제공, 인터넷 사용가능, 인터넷 전화 이용



4) 입주안내

가) 일반기업

(1) 입주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단지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2.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 「환경산업 및 환경산업 기술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8.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

(2) 입주 승인 제외 대상

1. 운영규정 제8조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계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자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7. 기타 기술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 입주기간
 - 최초 입주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함(매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입주공간
 -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파일럿테스트는 '실' 단위, 테스트베드는 '면적' 단위로 사용 가능

※ 연구사무실 및 전용실험실은 각각 기업당 최대 5개까지 사용 가능

(4) 입주절차



나) 벤처기업

(1) 입주대상

-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

1. 환경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
2.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조)
4.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5.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6. 그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2) 입주 승인 제외 대상

1. 운영규정 제8조 입주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자
2.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3. 센터와 유사한 시설에 입주경력이 있는 경우
4.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5. 휴·폐업 중인 사업자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8.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9.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 입주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입주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단, 입주 1년차 기업은 사업진행도 평가, 입주 2년차 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유지

※ 계약기간 만료 후(3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입주기간 1년 연장 가능

●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전용률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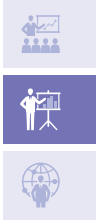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4) 성공부담금

- 성공부담금이란 센터의 각종 정보제공 및 창업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보상으로 입주자가 졸업할 때 센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함
 - 성공부담금은 졸업 시 매출신장률에 따라 일정금액의 현금을 환경벤처 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5) 입주절차



※ 임대료, 임대시설 등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5) 사업지원

가) 성장단계별 지원

(1) 연구개발단계

사업명	내용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사업 신청·선정된 입주기업 대상으로 기업부담금(현금)에 대하여 연구단지에서 지원 ※ 1건당 최대 1,700만원 지원
환경 R&D 상담 및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 단기사업화/원천 기술개발 · 공공 기술개발 · 토양·지하수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	인천지식재산센터 IP 나래 및 IP 권리화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연구단지 입주기업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기초시설 연계 연구시설 설치 지원	실증규모의 연구 및 실험이 가능하며, 개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천시 소재 환경기초시설 연계 지원
단지 내 실험원수 공급	단지 내 실험원수(상수 원수, 하수, 해수) 공급을 통한 물 분야 연구 지원

(2) 사업화단계

사업명	내용
전문가 컨설팅(기업닥터) 지원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기업경영(세무, 법무 등), 기술개발(환경기술 및 관련분야)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국내외 환경인·검증 상담 및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마크 인증 ※ 인증혜택 : 공공기관 의무구매, 인증제품 홍보,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 인증혜택 : 공공환경기초시설 신기술 우선 활용, 기술검증시 현장평가 시설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 환경성적표지인증 ※ 인증혜택 : 녹색기업 지정제도 및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가점 부여 · 녹색인증 ※ 인증혜택 : 융자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화촉진 시스템 구축 · 녹색건축인증 ※ 인증혜택 : 환경산업육성 금융 우선 지원, 친환경 건설자재 공공기관 녹색구매 실적 인정

사업명	내용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상담 및 연계 지원	환경기술 수출국에 적합한 기술성능 자료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제3자의 성능확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보호 지원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90만원 한도 기술자료 임치 비용 지원

(3) 해외진출단계

사업명	내용
해외 환경 프로젝트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원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 해외진출대상국과 공동으로 보유 기술을 현지화하여 실증 결과물을 현지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원의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연계 지원 • 수출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형 기업으로 선정·육성하는 환경산업협회의 'Green Export 100 사업'과 연계 수행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 연계 지원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운영 중인 해외 환경협력 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 기업 필요정보 제공 • 기술로드쇼, 해외시장개척단, 발주처와 1:1 매칭, 국제 환경전시회 특별 전시관 구성, 전시관 국제교류 등을 통해 마케팅 기회 제공 • 개발기술 소개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당언어 통번역 지원 추진

(4)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업역량강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IR자료 컨설팅 및 제작, 1:1 IR 전략 컨설팅, 모의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중장기 기술 로드맵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획득비용 지원 등
컨설팅 지원	종합상담센터 컨설팅 서비스 연계지원 (기업닥터 등)

나) 주요 기업지원사업

(1) 기업닥터 컨설팅 지원사업

- 목적 :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지원사항
 - 기초클리닉 : 연구단지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1:1 기초컨설팅 지원
 - 심화클리닉 : 중장기간 심층적 애로사항에 대해 1:1 컨설팅 지원

(2) 유관기관 사업

사업명	목적	지원내용
특허전략 (IP-R&D)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연계 지식재산권 기반 R&D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원천 특허 선점 및 경쟁력 강화	기업부담금(현금) 100% 지원
IP 나래 & 권리화	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 출원 비용 지원 및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 대상으로 특허출원 전 컨설팅 지원	기업추천
기술자료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임치센터(대중 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하여, 거래기업의 기술탈취 사전 예방	기업당 임치 수수료 90만 원(연간) 한도 지원 ※ 입주기간동안 지원
기술보호자문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보안 수준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해결방안 제시	기초 자문료 100% 지원

(3) 환기원 자체 사업

사업명	내용
연구단지 입주기업 대상 응자·보증 우대 지원	연구단지 방문상담회 개최, 1:1 상담연계 및 보증 우대 지원
해외 환경 프로젝트 참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과 연계 : 80~100백만원/업체, 연간 15개업체 • 해외진출대상국과 공동으로 보유 기술을 현지화하여 실증 결과물을 현지에 수출 :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연계 • 투자설명회 개최 :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 매칭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수출형 기업으로 선정 및 육성하는 「Green Export 100 사업」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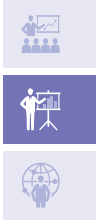
사업명	내용
해외진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운영중인 해외 환경협력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필요 정보 제공 기술로드쇼, 해외시장개척단, 발주처와 1:1 매칭, 국제 환경전시회 특별전시관 구성 등을 통한 마케팅 기회 제공 개발기술 소개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당언어 통번역 지원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내외부 전문 컨설팅 연계 지원

(4)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사항	지원내용
경영직무	재무제표 분석, 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경제	합리적인 금융생활 및 국내외 경제동향
문학 및 철학	명사 초청 강의
마케팅	기업 마케팅 및 상품 디자인, SNS활용 마케팅 등
특허	특허전략기술 및 특허정보검색 방법 등
법정필수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6) 연구지원

구분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운영시간 및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이용료 : 재료비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D 프린팅 : 산업용 장비3D 출력, 셀프제작 3D 스캐닝 : 스캐닝, STL 변환 역설계 : STL편집, 3D모델링 기구설계 : 3D모델링 가공 : CNC, 레이저커팅기 * 시제품제작 시설장비현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홈페이지 참조
공구 대여	37종 공구 대여



구분	지원내용	
시험 분석 의뢰	한국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수수료 최대 50% 감면 혜택 특이사항: 연구목적의 시험·분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첨부 (타 사업에 대한 계획서 등)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K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수수료 최대 30% 감면 혜택 특이사항: KCL 타 지부에서 진행할 경우에도, 지정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가능
	한국환경수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내용: 수수료 최대 30% 감면 혜택
	KOTITI 시험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수수료 10~30% 감면 혜택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상 제품환경성 시험 분석 수수료 50% 감면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대상 연구목적 시제품 등 시험분석 수수료 70% 감면

7) 문의

- 환경산업연구단지(입주상담)
 - 일반기업 : 032-540-2212
 - 벤처기업 : 032-540-2211
- * 지원사업관련 문의(분야별 담당자 홈페이지 내 연락처 참조)

8)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부(<http://me.go.kr>)
 - 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
 - 환경산업연구단지(<https://www.etechnive.or.kr>)
- ※ 자료제공 : 환경산업연구단지 홈페이지(<https://www.etechnive.or.kr>)

▶ 사.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 조성개요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98.12월 제정)에 의거
- 1997년 12월에 테크노파크 6개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후, 2000년 이후 테크노파크 8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 테크노파크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개의 테크노파크를 지정함
- 2007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지원이외에 지역산업 육성 기획 및 평가기능까지 수행하고,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참여한다.
- 주요 사업은 크게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 거점육성사업, 지역연구사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등이 있다.

[전국 테크노파크 지정시기(공공주도형)]

구분	대상지역	지정시기
1단계	경기, 경북, 광주, 대구, 인천(구 송도), 충남	’97.12
2단계	부산, 포항	’00.12
	강원, 충북, 전북, 전남	’03.12
	경남, 울산, 세종(2018년 지정)	’04.12

* 경기북부(대전)('05.3), 서울('05.9), 대전('08.1), 제주('10.8)는 민간주도형(국비지원 전무)으로 지정



2) 지정현황

가) 공공주도형(15)

구분	법인설립	면적	특화분야	주요시설
인천 (구송도)	'98.6	682천㎡	자동차부품,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 나노기술, 디지털설계가공	미추홀타워, 미추홀타워 별관, 갯벌타워, 시험생산동, 인천자동차부품기술센터
경기	'98.9	191천㎡	전자·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 로봇	기술고도화동, 시험생산동, RIT Center
대구	'98.12	133천㎡	나노, 바이오, 한방, 모바일,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대구벤처센터·공장, 테크노빌딩, 신기술산업지원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경북	'98.8	109천㎡	기계·자동차, IT융복합, 정보통신, 에너지, 생명자원(한방)	본부동, 제1·2·3 시험생산공장, 글로벌벤처동, R&DB센터
광주	'98.12	209천㎡	LED·LD, 광통신·광응용, 정보가전부품, 자동차부품	본부동, 생산동, 사업화동 4개, 시험생산동, 물류센터, 벤처지원센터, 과학기술교육협력센터
충남	'98.12	182천㎡	전자·정보기기, 첨단문화, 자동차부품, 농축산 바이오	종합지원관, 벤처관, 물류지원센터, 정밀가공지원센터
부산	'99.12	296천㎡	해양, 기계부품소재, 영상·IT, 첨단·미래	과학기술진흥센터, POST B동, 시험생산동
포항	'00.2	139천㎡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본부동, 제1·2·3·4벤처동, 바이오정보지원센터, 테크노빌
충북	'03.12	287천㎡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 차세대전지	미래융합기술관, 한방산업관, 생명산업관, 첨단IT산업관
전북	'03.12	66천㎡	자동차/기계, 생물, 문화, 영상, 관광, 신재생 에너지 및 RFT	본부동, 생산지원동, 벤처지원동, 방산영상기술센터, 연구개발지원센터
전남	'03.12	66천㎡	신소재(마그네슘, 세라믹 등), 조선, 생물, 문화관광, 물류	본부동, 벤처동, 생산동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강원	'03.12	73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 방재 / 플라즈마, 해양바이오	본부동(기술혁신센터), 창업보육시설, 벤처공장, 세라믹신소재 지원센터, 반도체부재공장 등

구분	법인설립	면적	특화분야	주요시설
경남	'00.6	324천㎡	지식기반기계(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조선해양), 로봇, IT융합, 바이오	경남테크노파크(본부동, 벤처동, 시험생산공장) 특화센터(로봇, 메카트로닉스센터, 항공우주센터 등)
울산	'03.6	182천㎡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본부동, 시험평가센터, 기술혁신센터, 정밀화학센터, 안전시험센터 등
세종	'18.11	18천㎡	소재, 부품, 스마트	본부동, SB플라자, 혁신센터, 창업키움센터 등

나) 민간주도형(4)

구분	법인설립	면적	특화분야	주요시설
경기 대진	'05.3	105천㎡	신·재생바이오에너지, 영상·미디어문화콘텐츠, 섬유소재, 가구디자인, LED 디스플레이, 친환경생물소재	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기술고도화센터, 시험생산1,2동
서울	'04.12	84천㎡	NIT인력양성, IT융합전문인력양성, BT	연구본부동, FAB, MSP, NIT제조장비
대전	'08.3	53천㎡	정보통신,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 및 소재	본부동,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IT전용벤처타운,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제주	'10.8	103천㎡	지역전략산업, 지식기반산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제주벤처마루,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제주바이오산업센터

3) 문의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02-6009-3800)

4)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조성운영요령
- 산업기술단지 지형도면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http://www.technopark.kr>)
-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0 산업입지요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 **아. 벤처기업육성지구****1) 조성목적**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일정 지역을 육성지구로 지정하는 제도.

2) 인센티브

- 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술·경영·창업·일자리창출지원 등

3) 지정현황

순번	구분	육성지구명칭	소재지
1	서울	영등포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		홍릉·월곡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KIST인근(이문동, 전농동)
3		성동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4	부산	대연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대연동, 남천동, 우동
5		하단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하단동, 업궁동
6	대구	동대구·성서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7	인천	주안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주안동, 도화동
8	광주	금남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9		첨단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10	대전	대덕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어은동, 전민동, 신성동
11	울산	울산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다운동, 무거동, 우정동, 반연리, 두왕동
12	경기도	인양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인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13		부천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춘의동
14		안산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15		성남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16	수원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7	강원도	춘천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후평동, 삼천동
18		원주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태장동, 흥업면
19	충북	오창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오창읍, 옥산면
20	충남	아산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1	전북	전주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팔복동, 장동
22	전남	유달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3	경북	포항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지곡동, 효자동
24		구미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공단동, 신평동
25	경남	창원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내서읍
26	제주도	제주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이도1동, 이도2동, 아라1동
	계	26개 지구	

* 「벤처기업육성육성지구 지정 통합 고시」에 지번 등 상세 내용 확인 가능

4)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5)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 조성목적

- 대학 · 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2) 인센티브 및 지원대상

가) 인센티브

※ 참고 : 시제품화까지 한 스타트업 기업

- 취 · 등록세 감면
 - 집적 지역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건축물 신 · 증축 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3항)
 - 기타
 - 건축제한 완화 : 녹색 지역 등 일정 지역만 제외<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 제1항>
 -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같은 법 제17조의4 제2항>
 - 입주기업과 지원시설 설치 · 운영자에게 국 · 공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임대 기간 우대(20년)<같은 법 제17조의4 제6~7항>
 - 5개 부담금* 면제,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배제<같은 법 제17조의4 제8항>
- * 개발 · 농지보전 · 교통 유발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나)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내 일정 지역을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산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입주할 기업은 '창업기업', 'BI 졸업기업', '벤처기업'이고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그 외 기업도 입주 가능함

3) 지정 현황

순번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재지	입주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
1	HNU Science park	한남대 산학협력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기능성 생물소재 제조업	20, 21
2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 번길 20,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산학융합 캠퍼스 기업연구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	20, 21, 24, 25, 26, 28, 30, 62
3	배재대학교 산학협력관	배재대 산학 협력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	BIT 융합	20, 21, 26, 27, 62, 63, 70
4	동국 바이오 파크	동국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식사동)	BT	21, 27, 70
5	영동 테크노밸리	영동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IT, 기능성생물소재	20, 21, 26, 27, 58, 62, 63, 70
6	HISTEC	한밭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첨단화학 및 부품 소재	20, 21, 25, 26, 27, 29
7	Eco-Green 테크노 밸리	전북대 산학 협력단	전북 군산시 오식 도동 515, 515-5, 515-6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녹색산업	26, 27, 28, 29
8	차세대 녹색기술 창업플라자	단국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S/W 및 Green IT	26, 28, 29, 58, 62, 63, 70, 72, 73

순번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재지	입주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
9	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군산대 산학 협력단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4, 515-8, 515-10, 515-12, 515-13, 515-14	기계(건설기계), 조선해양, 풍력발 전 및 녹색친환경 산업	26, 27, 28, 29, 31, 70, 72
10	벤처 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카이스트 산학 협력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융복합산업	20, 25, 26, 27, 28, 29, 33, 61, 62, 63, 70, 71, 73
11	산학융합 벤처밸리	영진 전문대 산학 협력단	경북 칠곡군 지천 면 송정수정길 57 (송정수정길)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그린에너지, 자동차	26, 27, 28, 29, 30, 31
12	부경 드래곤 밸리	부경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 대학교 용당캠퍼스 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56 부경 대학교 수산해양과 학연구단지 내	제조업, 환경복원 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정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26, 27, 28, 29, 30, 39, 41, 42, 50, 52, 59, 61, 62, 63, 70, 72, 73, 85
13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케어 집적지역	연세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업, 연구개발업	21, 70
14	KU-MAGIG 정릉	고려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61	의료용 물질· 의약품·의료기 기 제조업, 연구개 발업, 기술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20, 21, 27, 70, 71, 73, 85

4)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5)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민원24(<https://www.gov.kr>)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차.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1) 개요

- 도시형 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로써 2015년 도입되었다.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제도’는 ‘15.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동집약도와 숙련기술을 가진 소규모 제조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장비, 공동작업장 등 인프라 구축, 정책금융 우대(전용자금 편성, 금리우대), 소공인특화센터 설치, 판로 및 R&D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2) 지원대상

-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지역

[행정구역별 기준]

행정구역	기준
특별·광역시읍·면·동	50인이상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읍·면·동	40인이상
군읍·면	20인이상

*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의미한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지정혜택

- 공동인프라 구축* 및 사업지원, 센터설치 등 우대
* 시·도당 50억원 한도(국비 2/3범위내 지원, 지방비 1/3 대응출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내역]

구분	내용	우대 방안
금융	소공인 특화 자금	·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로 융자(시설·운전)
기반 조성	소공인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
	공동인프라 구축	· 분야별 필요한 공동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촉진
판로 R&D	소공인 판로개척	· 판매행사 등 마케팅 비용 80%, 3천만원 한도 지원
	소공인 기술개발	· 기술개발 비용 80%, 5천만원 한도 지원
		· 우대금리, 한도상향 등
		· 집적지구 지정지역의 센터 설치 지원
		· 공동시설 설치 소요재원의 최대 2/3 내 매칭지원
		·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4) 지정절차(소공인법 및 동법시행령 근거)

- 신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일정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중기부장관에게 요청
* 집적지역 소공인 및 유관기관 현황, 기반시설현황, 연차별(3년간) 활성화계획 등
- 검토 : 시·도지사 등이 수립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산업입주수급계획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검토(법 제15조)
- 지정 : 3년을 지정하며, 집적지구의 명칭·범위, 지정목적, 활성화계획 등을 고시(시행령 제9조)

5) 지정현황

가) 2017년 1월 31일 지정

연번	지정지역	지정업종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6가	기계금속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동 ~ 봉익동	주얼리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 총사업비는 공동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거리환경개선사업비는 미포함
세부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나) 2018년 2월 5일 지정 고시

[세부 지정내용]

연번	명칭	범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C24, C25, C29) 집적지구	문래동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기타 제품 제조업(C33) 집적지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3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가족,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집적지구	성수동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성수동
5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동 기계·금속(C29, C25) 집적지구	대야·신천동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주문진읍(산업단지 제외)
7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의류(C14) 집적지구	범일동
8	경기도 양주시 남면 섬유제품(C13)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남면(산업단지 제외)
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영덕동
1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식료품(C10) 집적지구	사천면
1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식료품(C10) 집적지구(산업단지 제외)	북면(산업단지 제외)

* 세부내용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2호) 참조

다) 2018년 12월 28일 지정 고시

연번	명칭	범위
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의류(C14) 집적지구	독산동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의류(C14) 집적지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3	경기도 군포시 군포1동 금속가공(C25) 집적지구	군포1동
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구(C32) 집적지구	가산면
5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의류(C14) 집적지구	대봉1동

* 세부내용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69호) 참조

라) 2020년 2월 19일 지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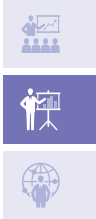
연번	명칭	범위
1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기타 제품(C33)집적지구	성내동
2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서남동
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C10) 집적지구	상대원동
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C26) 집적지구	관양동
6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비금속 광물제품(C23) 집적지구	진례면
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순창읍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제조(C13) 집적지구	유구읍
9	서울시 중랑구 면목·상봉동 패션·봉제(C14, C13, C15) 집적지구	면목·상봉동

* 세부내용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8호) 참조

마) 2021년 1월 21일 지정 고시

연번	명칭	범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금속 가공제품(C25),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오정동
2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비금속광물(C23)집적지구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가구(C32) 집적지구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송림동 금속 가공제(C25), 전기장비(C28), 기타기계 및 장비(C29) 집적지구	송현동, 송림동
5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금속 가공제품(C25) 집적지구	팔복동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5가 기타제품(C33)집적지구	충장로 4,5가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C14) 집적지구	서동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집적지구	서교동
9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C10) 집적지구	풍기읍
1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제품(C25) 집적지구	봉담읍

* 세부내용 고시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호) 참조





6)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7)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5. 국가균형발전 단지

▶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 개요

- 가) **기본개념** : 기존 산업·혁신거점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구,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합으로 지정·고시되는 구역
- 나) **조성목적** :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존 산업·혁신거점을 연계, 지역혁신성장거점으로서의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 다) **지정절차**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

2) 주요특징

가) 구성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시도별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존재하는 핵심거점들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혁신거점 육성정책으로서,
- 신규 거점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한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구성하는 방향으로, 각 시·도 주도하에 구성했다.

* 거점간 거리 : 반경 20km(광역시는 10km)내에 모든 거점 위치, 최대 면적 15km²

나) 육성방향

- 지리적 근접성을 갖춘 기존의 산업·혁신거점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구심점으로 육성
 - 신규 거점 개발은 최대한 지양하고,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특구 등 기존에 조성된 거점(12개 유형*)을 최대한 복합하여 구성
 - * ①행복도시, ②혁신도시, ③기업도시, ④경자구역, ⑤외투지역, ⑥연구특구, ⑦첨복단지, ⑧과학기술벨트, ⑨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지역개발사업구역·투자선도지구·지역활성화지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내 거점 상호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거점간 물리적 거리 및 전체 면적을 일정 범위로 설정



다) 지원내용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거점 육성 및 산업 집적화 촉진
- 혁신프로젝트 : 신산업 프로젝트 등 지원예산국비+지방비) 투입
- 금융지원 : 대출금리 우대, 시설자금 용자비율 확대,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 등 융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수행
- 보조금·세제 :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지역으로 지정 및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

3) 인센티브 및 지원제도

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R&D 지원

- 지역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 산학연이 참여하는 대규모·컨소시엄형 R&D 지원
- 1단계('18~'20) 프로젝트의 경우 시도별 연 30억원 규모의 통합형 과제 지원
- 총괄 및 세부과제의 주관기관은 기업의 경우 해당 융복합단지 내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 시도 소재로 지원 자격을 제한

[시·도별 대표분야 및 혁신프로젝트 선정안]

시·도	대표분야(대·중분류)	혁신 프로젝트(1단계 기준)
울산		초소형 전기차
경북	미래차	초소형 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개발
세종	항공	전기차 부품
경남	항공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개발
대구		자율차 서비스
강원	바이오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구축
전북	헬스	항공 부품
제주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
충남		지능형 의료기기
광주	에너지	지능형 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전남	신산업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구축
충북		스마트 농생명
부산	ICT	스마트팜 및 고부가가치 전라식품 상용화
대전	융합	화장품 및 식품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
		수소에너지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개발 및 실증
		에너지 및 미래차
		분산전원을 연계한 빌딩용 전력시스템(BEMS) 개발
		에너지신산업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전원 및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에너지 첨단 부품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개발
		해양 ICT 융합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스마트 안전산업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서비스 지능형플랫폼 개발

나)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R&D 지원

- 네트워크 : 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포럼·연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육성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
- 글로벌연계 : 해외 거점기관과의 채널 구축, 국제 공동 R&D 발굴, 융복합단지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 기업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R&D 사전기획(프리프러덕션), 사업화지원 등

다) 지방투자보조금 우대, 금융 지원 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방투자보조금 우대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매입비, 설비투자금 등 지원 우대
- 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저리융자 지원(BK기업은행 연계)

4) 지정현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총괄현황]

구분	울산	경북	세종	경남	대구	강원	전북	제주	충남	광주	전남	충북	부산	대전
행복도시			○											
혁신도시	○	○		○	○	○	○	○			○	○	○	
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지역				○				○	○					
연구개발특구					○		○			○	○			○
첨단의료 복합단지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							○				○
산업기술단지	○		○	○	○	○		○		○			○	
산업단지	○	○	○	○	○	○	○	○	○	○	○	○	○	○
투자선도지구 등 ¹⁾						○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²⁾					○			○						
기타	○	○	○		○	○	○	○					○	○
총면적(km)	10.1	15.0	11.1	11.6	14.4	14.1	14.8	10.9	14.4	15.0	8.26	14.4	12.7	15.0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제2조제6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2조제9항에 따른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5)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기획팀, 02-6009-3705, 3706, 3708)

6)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8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s://www.ariat.or.kr>)

※ 자료제공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s://www.ariat.or.kr>)

▶ 나. 혁신도시

1) 기본개념

가) 개요

-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2) 혁신도시 특징

- 혁신클러스터 형성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자족성 확보
- 도시통합이미지,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한 환경 경관중심 도시이미지 형성
- 대중교통 중심, 범죄예방디자인기법 도입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위한 복합개발 유도 및 school complex 도입으로 특성화된 도시 유도

3) 산학연 클러스터

가) 목적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 (혁신도시 계획기준)

* 혁신클러스터 용지 = 이전대상 공공기관 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나) 추진근거

- 혁신도시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 등 지역 도시성 (Urbanity)를 살리는 촉매제로 조성(혁신도시 계획기준)

- 지역산업 집중 조성
- 지역혁신주체* 네트워크 중심

* 혁신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항 <17.12.26.개정>

다)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 개발면적 중 7.0%(3,114천㎡)로 구성
- 혁신도시 2단계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전략에 따른 업종 유치 및 관리 강화

* 혁신도시 발전단계 : 1단계(~2015) 공공기관 이전 → 2단계(2015~2020)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3단계(2020~2030) 지역혁신 확산

[혁신도시별 클러스터 현황]

연번	클러스터 면적(천㎡)	클러스터 비전
대구	858	안전안심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광주·전남(나주)	415	호남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거점도시
울산	141	신산업의 집적지
강원(원주)	112	녹색기반의 건강·생명·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 “거점도시 건설”
충북(진천·음성)	684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K-City 모델도시조성 (교육·유희·ICT)
전북(전주·완주)	230	농생명 혁신거점 혁신도시, 금융·ICT 혁신성장 전라북도
경북(김천)	307	그린에너지·IT 융합·첨단교통·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경남(진주)	216	창조적 혁신으로 융합산업 허브 클러스터 육성
제주(서귀포)	151	교육·연수 및 MICE 산업 관광·문화 컨텐츠

4) 지정현황

혁신도시명	면적 (만m)	클러스터 비전	이전기관(개)
부산	93.5	영도구 동삼동, 남구 문현동·대연동, 해운대구 우동 일원	13
대구	421.6	동구 신서동 등 9개동 일원	11
광주·전남	736.1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16
울산우정	298.4	중구 우정동 등 12개동	9
강원원주	359.5	원주시 반곡동	12
충북 진천·음성	689.9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11
전북 전주·완주	985.2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12
경남진주	381.2	김천시 울곡동 일원	12
경북김천	409.3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11
제주서귀포	113.5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8

* 대전, 충남 혁신도시 내용 제외

5) 문의

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 추진단

- 청사건축(044-201-4473)
- 건설현황(044-201-4489)
- 아파트 분양(044-201-4484)
- 종전부동산(044-201-4467)

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다) 혁신도시별 지자체 문의(지자체 대표번호)

- 부산광역시(051-120)
- 대구광역시(053-120, 053-803-0114)
- 광주광역시(062-120), 전라남도(061-287-0011),
나주시(061-339-8114)

* 빛가람 : 광주시 균형발전정책과(061-332-5475),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061-286-8812), 나주시 혁신도시교육과(061-339-4681)

- 울산광역시(052-120)
- 강원도(033-120), 원주시(033-742-2111)
- 충청북도(043-220-2114), 진천군(043-539-3114), 음성군(043-871-1900)

- 전라북도(063-280-2114), 전주시(063-222-1000), 완주군(063-290-2114)
- 경상북도(054-880-2114, 1522-0120), 김천시(054-420-6114)
- 경상남도(055-211-2114), 진주시(055-749-2114)
- 제주도(064-120), 서귀포시(064-120)

6)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https://innocity.molit.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 혁신도시 소속 지자체별 홈페이지
- 네이버 백과사전 “혁신도시”

※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https://innocity.molit.go.kr>)

▶ 다.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1) 개요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특별자치시. 2010년 12월 27일에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 공주시의 일부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폐기된 이후 충청남도 연기군 전 지역, 공주시 장기면과 의당면·반포면의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조성한 신도시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내 조성된 신도시를 말한다. 정부세종청사에 중앙정부기관들이 입주했으며 그 후 혁신도시 사업에 의해 공공기관과 공공 연구소가 입주하였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가) 사업개요 : 행정기능 중심, 다양한 기능이 조화된 복합자족도시

- 사업목적 : 국토의 균형발전(국가경쟁력 제고)
- 사업목표 : 인구 50만(자족도시 완성)
- 총사업비 : 22.5조원(정부 8.5조/나 14조원)
- 건설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식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원에 건설되었다.

[행복도시 면적 및 목표인구]

구분	행복도시광역권	행복도시	세종시
면적	3,597km ²	72.91km ² (서울의 1/8)	464.84km ² (서울의 3/4)
목표인구	약 328만명	약 50만명	80만명

나) 행복도시 주요특징

세계 최초 환상형 도시	6개 복합 자족 기능	대중교통 중심 2링 구조	직주근접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첨단 스마트 시티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람중심 도시

3) 세종시 투자관련 세부정보

가) 투자환경

(1) 세종시 소개

(가) 세종시 개황

-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젊고 활기찬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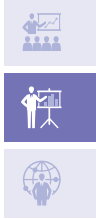
구분	내용
법적 지위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12.7.1. 출범)
면적	465km ²
위치	국토 중심부에 위치(전국 주요 도시 2시간 내외 연결)
국책연구기관 수	15개(KDI, 국토연구원 등)
행정 구역	1읍 9면 14동
사업체 수	13,668개(2018 기준)
행정기관 수	43개(2019 기준, 총리실·기재부·과기부·산자부 등)
세대수	10만 세대(2018 기준, 2012: 4만 2천 세대 → 2018: 10만 세대)
인구	약 34만 명(인구 증가율 1위, 출생률 1위, 평균연령 36.7세(전국최저))

(나) 행정·지리의 중심으로 사업과 투자의 탄탄한 기반 제공

-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
 - 중앙행정기관(43개), 국책연구기관(15개), 이전 완료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협의 중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광역 교통·물류의 중심지
 - 전국 주요도시 2시간 이내
 - 서울-세종 고속도로(2024년 개통, 70분대)
- 최고의 행정·복지·교육·문화 인프라
 - 단층제 광역자치단체(광역+기초 사무 동시 수행)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
 -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대통령기록관, 세종호수공원, 국립수목원 등 조성

(다) 스마트 세종

- 세계최초 SI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7대 기술서비스 분야
 - 스마트 교육시스템, 혁신창업존,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등 조성예정
 - 스마트시티 국제인증 세계 5대 시범도시 선정(18. 3)



-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 도심 여객운송, 공원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 등 실증 추진
 - 혁신적 규제 혁파, 핵심 인프라 구축, 자율차 생태계 조성
 - 미래차 연구센터 설치로 기업의 연구 및 제품 상용화 전주기 지원
-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 SB(Science-Biz) 플라자 신축, 기능지구의 허브로 육성
 - 거점지구(대전)와 연계한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

[스마트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2) 세종시 투자환경

(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

- 지리적 이점 : 세종시는 2개의 KTX, 5개의 고속도로, 3개의 국도를 갖춘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
- 전국연결 도로 및 철도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
 - 서울(자가용 2시간, KTX 40분)
 - 부산(자가용 3시간 30분, KTX 2시간)
 - 광주(자가용 2시간 10분, KTX 1시간)

[세종인근 교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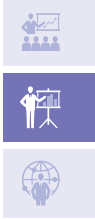
구분	내용
고속도로(5개 노선)	서울 → 세종 (2024년), 세종 → 울진(예정)
항만	당진 평택항(54km)
공항	청주국제공항(21km거리)
중부권 복합물류기지	480천㎡(연간 35만개 컨테이너 처리)
철도(6노선)	KTX 2개, 일반철도 3개 (KTX이용시 서울~세종 53분 소요, 고속도로 이용시 74분 소요)

(나) 인구증가율 1위

- 2030년까지 인구 80만 명 목표
 - 공동 주택공급 : '16~'20년 6만호, '21년~'30년 20만호
- 양질의 인력수급 가능
 - 세종시 인구증가 : '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 '19년 8월 34만 명
 - 배후도시 인구 325만명 : 천안·아산 90만, 대전 150만, 청주 85만
 - 우수연구인력 확보 용이
 - 40개 정부부처, 15개 국책연구기관
 - 고려대 등 3개 대학, 인근 대덕연구단지 등
 - 충청권 내 주변 도시와 긴밀한 기능 연계로 클러스터 형성 및 상생 발전 가능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산단 지역 접근성 우수(2km)
 - 신도시 예정지역과 산단지역 접근성 우수

(다) 아이·여성 친화도시

- 총 150개 학교 단계적 설립
 - '18년 3월 현재 87개교 설립, 국제고·과학고·예술고('18년 개교) 등
- 한국 최초의 미래형 학교, 스마트 스쿨 도입
 - 등하교 관리시스템, U-class시스템, U-전자도서관시스템, U-방과후 학습 시스템 등
- 여성친화도시 인증(여성가족부, '16.12)
-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18.01.31)
-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공식 선포('17)
- OECD 수준의 선진국형 교육환경
 - 학급당 학생수 20~25명
-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 KAIST, 고려대, 코크대(아일랜드), 코넬대(미국)



(3) 투자기업 인센티브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33억 원
- * 단, 해당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세부내용]

지역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시비
지원 우대지역 (세종시)	입지(-) 설비투자 (11% 이내)	입지(20% 이내) 설비투자 (19% 이내)	입지(40% 이내) 설비투자 (24% 이내)	75:25
일반지역	입지(-) 설비투자 (8% 이내)	입지(10% 이내) 설비투자 (11% 이내)	입지(30% 이내) 설비투자 (14% 이내)	65:35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설비투자 (6% 이내)	입지(-) 설비투자 (8% 이내)	입지(9% 이내) 설비투자 (11% 이내)	45:55

* 신증설기업의 경우 입지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입지보조금의 지원기준은 기존 공장 부지 면적 5배이내 지원(단, 해당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

(나) 세제 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구분		내용
국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수도권 기업, 대도시권기업 양동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납입)
지방세	취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 대도시 외) * 단, 이전한 법인(공장)의 부동산 가액이 이전하기 전 법인(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 대도시 외)

● 산업단지 입주기업(수도권 외 지역)

구분		세부내용
지방세	취득세	취득세의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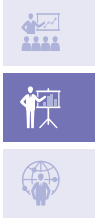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2955호 부칙(제25조 및 제 14조),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의3)

(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저리용자)

구분	지원대상 및 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창업자금 · 경쟁력 강화 자금	시설자금 20억원 이하, 운전자금 4억원 이하	2.98% (변동금리)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하	2.48% (변동금리)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기업 회생 자금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하	2.0% (변동금리)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 안전 자금	운전자금 3~5억원 이하	은행간 약정금리 (변동금리)중 2.0 ~ 3.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라) R&D 자금지원

지원 대상	지원금	지원기간
첨단수송기기부품, 첨단신소재부품,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	연3~5억	최장 3년까지



나) 세종시 산업농공단지 현황

(1) 조성 예정 : 2개소(국가산단 1, 일반산단 1)

구분	산단명	위치	면적 (천㎡)	기간	사업비 (억원)	시행자
1	세종스마트국가	연서 와촌리	2,776	21-27	15,000	나, 市
2	세종복합	전의 신방	829	19-23	1,915	세종복합 산업단지(주)

(2) 조성 중 : 4개소(일반산단4)

구분	산단명	위치	면적 (천㎡)	기간	사업비 (억원)	시행자
1	세종전동	전동 노장	140	18-21	491	市
2	스마트그린	소정고동, 전의읍내	850	17-20	2,443	세종스마트 그린타운(주)
3	벤처밸리	전동 심중	590	17-20	1,293	세종벤처밸리(주)
4	세종테크밸리	4-2생	750	15-20	2,276	나,
계	4개소	-	2,330	-	6,503	-

(3) 조성완료 : 13개소(일반산단9, 농공산단 4)

구분	단지명	조성년도	지정면적 (천㎡)	산업시설 용지면적 (천㎡)	분양면적 (천㎡)	분양률(%)	
일반 산업 단지	조치원	1공구	1988	295	200	200	100
		2공구	1990	170	139	139	100
		3공구	1992	476	420	420	100
		계	-	941	759	759	100
	부강	1995	562	399	399	100	
	소정	1998	273	193	193	100	
	전의산단	1999	481	344	344	100	
	전의2산단	2010	867	591	591	100	
	월산	2008	1,380	955	955	"13.06.30 입주기업체 이전완료 (산단 지정 미해제)	
	명학	2016	838	568	568	100	

구분	단지명	조성년도	지정면적 (천 m)	산업시설 용지면적 (천 m)	분양면적 (천 m)	분양률(%)	
일반 산업단 지	첨단	1공구	2016	421	278	278	100
		2공구	2017	243	165	165	100
		계	-	664	443	443	100
	미래	2018	560	386	283	73	
	소계(9)	-	6,566	4,638	4,535	98	
농공단 지	노장	1987	162	136	136	100	
	부용	1988	202	146	146	100	
	응암	1989	117	94	94	100	
	청송	1988	82	64	64	100	
	소계(4)	-	563	440	440	100	
계	13개소	-	7,129	5,078	4,975	98	

다) 산업단지별 세부 현황(조성예정, 분양중인 산업단지)

(1)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목적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미래 핵심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 조성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일원
면적	약 2,776천㎡(84만평)
사업기간	2021 ~ 2027년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자치시
분양 및 입주시기	2024년 분양, 2025년 입주
유치업종	스마트 산업과 연계한 신소재·부품 업종(C20~23, C25~30) 화학물질·화학제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2) 세종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 투자 유도 및 지역 산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 지원 기능 조성 • 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북부권 균형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산 80-1		
접근성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C(13km), 남천안C(19km), 조치원역(21분), KTX 오송역(24분)		
면적	560,293㎡	사업기간	2013년-2018년
사업시행자	세종미래산업단지(주)	분양가격	110만 원 / 3.3㎡
건폐율/용적률	70%/200% (산업시설용지)	공장신축 가능시기	2017년 (현재 분양중)

(3) 세종테크밸리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행복도시 완성 • BT, ET, IT 중심의 첨단업종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성장 거점 구현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인근)		
접근성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인접(10km),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17km)		
면적	898,466㎡	사업기간	2015년 ~ 2023년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가격	159~243만원 / 3.3㎡
건폐율/용적률	60%/300%	공장신축 가능시기	2018년
전력	33,817kW	용수	42,000㎡/일

(4)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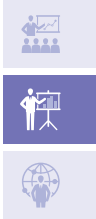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지역과 연계한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단지 구축 • 원지형을 살린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종리 574번지 일원		
접근성	청주IC 14km, 남풍세C 18km, 남천안C 22km		
면적	589,976㎡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사업시행자	세종벤처밸리(주)	분양가격	미정
건폐율/용적률	70%/250% (산업시설용지)	공장신축 가능시기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분양예정)

(5) 세종스마트그린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지원단지 조성으로 종사자 및 이주민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산65번지, 전의면 읍내리 47번지 일원		
접근성	경부고속도로 목천IC(12km), 천안-논산 고속도로 남천안C 및 남풍세IC(7km), 경부선 전의역(3km), KTX 천안아산역(22km), KTX 오송역(22km)		
면적	849,690㎡ (산업단지 697,42㎡, 지원단지 152,27㎡)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사업시행자	세종스마트그린타운(주)	분양가격	미정
건폐율/용적률	70% / 250% (산업시설용지)	공장신축 가능시기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분양예정)

(6) 세종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북부권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인근 노장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부족에 대한 입지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430-4번지 일원		
접근성	청주IC 16km, 남풍세IC 17km, 남천안C 21km		
면적	140,258㎡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사업시행자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가격	미정
건폐율/용적률	70% / 350% (산업시설용지)	공장신축 가능시기	2022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분양예정)



라) 기타시설 현황

(1) 세종 SB플라자

- 기타시설의 경우 제조업종 영위자를 위한 공간이 아닌, 창업, 연구개발 지원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할 필요가 있다.

조성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거점지구(대전)에서 창출된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개발 연구를 통해 사업화하는 과학기술 R&D 핵심 시설 · 산학연 공동연구단 및 기업부설연구소, R&D 벤처·창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북부권 균형발전 촉진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접근성	경부고속도로 청주IC(9km), 조치원역(1km), KTX 오송역(3.7km)		
용도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0,715㎡
사업기간	2014년~2018년	사업시행자	세종특별자치시
건폐율/용적률	6.35%/42.95%	입주 가능시기	2018년 하반기

[세종SB플라자 공간활용계획]

구분	용도	공간
지상 10층	식당, 옥상형 개방 공간	3실
지상 6~9층	기업 입주 공간, 공동회의실, 휴게공간	30실
지상 5층	공동연구장비실, 공동연구시설 공간	7실
지상 3~4층	경제산업 유관기관, 공동회의실	8실
지상 2층	Biz-connect센터(과학사업화 종합 지원), 과학비즈니스 인력양성센터	3실
지하 1층 ~ 지상 1층	비즈니스융합카페, 홍보관, 원스탑서비스존 등	4실

* 입주가능한 기업 산업분야 : 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 연구개발 서비스 등

(2)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조성목적	세종테크벨리에 유망벤처(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육성, R&D 지원 및 (예비)기술기업의 역량강화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4-2생활권 일원(산업 4-1블록)
접근성	경부고속도로 청원IC 인접(10km), 경부고속도로 KTX 오송역(17km)

용도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면적	19,356㎡	사업기간	2015년 ~ 2018년
건폐율/용적률	37.38% / 139.49%	입주 가능시기	2019년 10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간활용계획]

구분	용도
지상 5, 6층	기업입주공간, 회의실, 휴게실
지상 4층	기업(대학 연구소)입주공간, 회의실, 옥상정원
지상 3층	테크놀로지센터, 관리사무실, 산학협력 대학
지상 2층	창업자공간, 산학협력 대학
지상 1층	지원시설(상업시설), 강의실, 멀티팜랩
지하 1층	주차장, 어린이집, 구내식당, 전기실 등

(3) 세종창업키움센터

조성목적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의적 창업보육공간을 조성하여 우리시 창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업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296
공사기간	2018년 6월~2019년 3월
면적	994㎡
공간구성	기업 입주공간, 창업카페, 회의실, 상담실 등 개방형 공간 조성

(가) 세종창업키움센터 내 보육공간 주요 기능

- 성과연계형 창업보육 및 수요자 중심의 네트워킹 지원
- 기업 입주공간 제공 + 투자와 연계된 교육, 멘토링, 컨설팅 지원
- 지역주민과 대학생들의 창업 관련 정보교류, 상담, 회의 공간 제공

4)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21~4122)

5)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등에관한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https://www.sejong.go.kr>)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https://www.naacc.go.kr>)
-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자료제공 : 세종특별자치시(<https://www.sejong.go.kr>)

6. 규제혁신 지구

▶ 가. 규제자유특구

1) 기본개념

가) 기본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나) 도입취지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 필요
 -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구분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좌동		
차이점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X	X	X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동	좌동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동	좌동
	세제·재정 지원	X	X	X

다) 주요특징

(1)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특구에서 사업 참여자가 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2)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특구의 지정필요성, 혁신사업의 필요성과 육성 방안,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특구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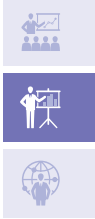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특례 비교]

구분	기존 특화특구	규제자유특구
메뉴판식 특례	128개 적용	좌동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적용: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둘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 확인).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4) 안전대책

규제자유특구에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2) 지정효과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되며, 제2 벤처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제공으로, 집적화를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가) 규제특례 적용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1) 메뉴판식 규제특례

-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2) 규제혁신 3종 세트

구분	내용
규제 신속확인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실증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 (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나)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세부내용]

구분	내용
목적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내용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중 특구 실무지원단(TP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과제를 총괄 과제로 설정하여 특구과제발굴, 성과평가 및 과제별 사업관리·성과·사후관리 등 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다)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 세액 조세 감면 가능

(1) 세제지원

- 지역특구법 제96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 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제한특례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제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2) 부담금 감면

- 지역특구법 제96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 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3) 기대효과

가) 규제 혁신

- 2차례 총 14개 특구 지정으로, 84개 규제특례를 허용
 -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 규제공백과 규제충돌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분야
 - 특정테마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형 특구계획
 - 실증 완료 시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

나) 지역 산업 활성화

- 규제자유특구 실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치, 규제자유특구내 기업 이전
 - 배터리 리사이클링(1,000억원), 디지털헬스케어 기기(10억원) 관련 민간 투자 유치
 - 실증을 위한 제조 및 생산공장 준공
 - 58개 특구사업자 중 58개사 이전(100%, 20년 1월 기준)

4) 지정현황

- 2019년 8월(7개), 11월(7개), 2020년 7월(9개), 3차에 걸쳐 23개 규제자유 특구를 지정

[지정 차수별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정일자	2019년 8월 9일
1차 지정지역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규제해제	규제 특례 48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7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7,000억원 / 고용유발 : 3,500명 / 기업유치 : 400개사 (특구기간 4~5년내 / 지자체 추산)

구분	내용	
2차	지정일자	2019년 11월 12일
	지정지역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해제	규제 특례 2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3건 등 총 26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1조9,000억원 / 고용유발 : 2,200명 / 기업유치 : 140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3차	지정일자	2020년 7월 6일
	지정지역	신규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계농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융합프, 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해제	규제 특례 4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등 총 42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1조 5,000억원 / 고용유발 : 4,390명 / 기업유치 : 174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5)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044-865-9819)

6)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http://rfz.go.kr>)
- 중소벤처기업부(2020), 규제자유특구백서, 중소벤처기업부



▶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1) 제도개요

- 제도배경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지정절차 :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2) 지정 효과

-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3) 지정 현황

- '04년 제도로입 이후, 214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19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지정·운영

[지역별 특구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 (개)	13	7	4	3	3	1	2	19	14	15	18	14	36	28	15	3	195

4) 지역별 세부지정현황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2005년
	노원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중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2007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2014년
	강남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2008년
	관악구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2010년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2015년
	성동구	성동 용·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강서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중랑구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2016년
	도봉구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2017년
	영등포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동작구	동작 직업교육특구	2019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2005년
	기장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2007년
	동구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남구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2010년
	금정구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2012년
	동래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년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2017년
대구	중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004년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북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2006년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2017년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강화군	강화 약쑥특구	2006년
	중구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2011년
	남구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2011년
	동구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2017년
대전	동구,중구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울산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2006년
	남 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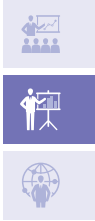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경기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군포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2005년
	양평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2005년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2016년
	고양시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년
		고양 전시문화특구	2010년
	여주시	여주 쌀산업특구	2006년
	양주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2008년
	안산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년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2020년
	가평군	가평 잣산업특구	2011년
	시흥시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2012년
	의왕시	의왕 철도특구	2013년
	남양주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2015년
	수원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2016년
	부천시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2017년
	광명시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2017년
안양시	안양 인문교육특구	2017년	
양주시,포천시, 동두천시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족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2018년	
강원	원주시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2005년
		원주 옷·한지산업특구	2006년
	태백시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2005년
	강릉시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2005년
	화천군	화천 평화·생태특구	2006년
	삼척시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2008년
	영월군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년
	정선군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2010년
	인제군	인제 산나물특구	2011년
		인제 용대항태산산업특구	2014년
	평창군	평창 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군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2014년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강릉시,속초시, 평창군,고성군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2015년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충북	제천시	제천 약초웰빙특구	2005년
	옥천군	옥천 묘목산업특구	2005년
		옥천 옷산업특구	2005년
	충주시	충주 사과특구	2005년
		충주 증원역사문화레포츠포츠특구	2005년
	영동군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2007년
	단양군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2006년
	음성군	음성 다울찬친환경수박특구	2006년
	청주시	청주 직지문화특구	2007년
	보은군	보은 대추한우특구	2008년
	증평군	증평 에듀팜특구	2009년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북 태양광특구	2011년
	진천군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2013년
진천 숲산업클러스터 특구		2020년	
충남	금산군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년
		금산·추부 깻잎특구	2015년
	논산시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년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년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청양군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예산군	예산 황토사과특구	2007년
	홍성·예산군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008년
	홍성군	홍성 유기농업특구	2014년
	서천군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2007년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2009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2020년
	아산시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2007년
	천안시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2008년
서산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년	
부여군	부여 양송이특구	2009년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충남	공주시	공주 알밤특구	2010년
	보령시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2016년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4년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2008년
	고창군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2004년
		고창 경관농업특구	2004년
	완주군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년
	남원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2005년
	진안군	진안 홍삼한방특구	2005년
	부안군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2006년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2007년
	김제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전주시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2010년
	장수군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2011년
	정읍시	정읍 구절초항토자원진흥특구	2015년
	임실군	임실엔치즈·낙농특구	2016년
전남	순천시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2004년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2008년
	여수시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2006년
		곡성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2006년
	함평군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6년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2008년
	장흥군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2006년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2008년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2017년
	강진군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년
	보성군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2009년
		보성 별교과막문화산업 특구	2015년
광양시	광양 국제회평생교육특구	2008년	
	광양 매실산업특구	2008년	
신안군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년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2017년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전남	고흥군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2009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2016년
	영광군	영광 굴비산업특구	2009년
		영광 보리산업특구	2010년
	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2009년
	구례군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2010년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2011년
	나주시	나주 배산업특구	2010년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16년
	해남군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년
	목포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2011년
	진도군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진도 울금산업특구	2018년
영암군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담양군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장성군	장성 편백힐링특구	2016년	
경북	영양군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2005년
		영양 고추산업특구	2007년
	안동시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2005년
	상주시	상주 곶감특구	2005년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년
	영천시	영천 한방진흥특구	2005년
	영덕군	영덕 대게특구	2005년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007년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2016년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년
	김천시	김천 포도산업특구	2006년
		김천 자두산업특구	2006년
	의성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6년
	문경시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6년
	울진군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2006년



시·도	시·군·구	특구명칭	지정 년도
경북	경산시	경산 종묘산업특구	2007년
	영주시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2007년
		영주 힐링특구	2014년
	봉화군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2007년
	포항시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2007년
	청도군	청도 반시나라특구	2007년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012년
	구미시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2008년
	고령군	고령 대가아농촌체험특구	2008년
	칠곡군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청송군	청송 사과특구	2008년
	예천군	예천 곤충산업특구	2009년
경주시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2016년	
경남	창녕군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2005년
		창녕 우포누리 마을·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거창군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2013년
		거창 향노화힐링특구	2016년
		거창 송강기벌리산업특구	2019년
	김해시	김해 평생교육특구	2005년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제주	서귀포시	국도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2004년
		서귀포휴양예술특구	2013년
	제주시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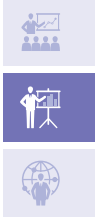
5) 문의

- 중소기업벤처부 지역특구과(042-481-1603)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지자체(지역별 규제특례 문의)

6)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지역특화발전특구별 지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 자료제공 :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



입지관련 참고자료



1. 시·도별 개발계획

▶ 가. 시·도별 산업 발전 및 입지공급 방향

1) 시·도별 산업의 발전 방향

가) 시·도별 성장유망산업 육성 방향

- 시·도별 집적도와 특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유망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 집적도와 특화도가 높은 산업을 지역별 특색에 맞추어 스마트화·융복합화·친환경화 방안 제시
 - 지역간, 산업간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과 고도화 전략 제시

[시·도별 성장유망산업 육성 방향]

지역	육성방향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건강·진단), 정보·통신 등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을 강화하여 혁신성장 신산업의 거점화 추진 • 바이오, IT-제조업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지능화·융복합화를 통해 기계부품, 조선, 자동차 등 주력 기계 부품·소재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추진 • 철강, 섬유 등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헬스케어 분야 클러스터 강화 및 자동차·기계부품 산업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스마트화·첨단화 촉진 • 섬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공정개선 추진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산업 육성과 수도권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시티로 도약 • 일반기계, 철강, 가전 분야 등 지역 특화산업의 제조기반을 토대로 첨단자동차·로봇분야 신산업 육성 촉진

지역	육성방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가전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육성 추진 자동차, 일반기계 분야의 지역 특화산업 집적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촉진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기술기반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R&D 혁신생태계 구축 건강·진단, 센서·측정 분야의 특화산업 집적·연계 강화를 통한 유망 기업 육성 촉진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3대 주력 특화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자동차, 에너지산업의 친환경화·첨단화를 통해 신산업·시장 창출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시티와 산업집적의 연계를 통한 도시형 혁신생태계 구축 ICT 융합을 통한 첨단기기부품 산업 육성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특화추진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기반의 연계·협력형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test-bed 조성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식품·레저휴양 청정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권역(대전)과 연계한 세라믹복합신소재 산업 육성 및 집적 촉진 의료기기 기업 및 R&D 시설 유치를 통한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BT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및 반도체 등 주력 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수송기계소재부품의 친환경화·지능화를 통해 미래형자동차 소재 부품산업으로 구조전환 촉진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헬스, 프리미엄소비재 등 협력권역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디스플레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지역 주력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화학산업의 특화기반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등 신산업 육성 추진 협력권역과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능형기계부품 산업 집중 육성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등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창출 IT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을 통해 일반기계, 조선 등 지역 주력제조업 경쟁력 제고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기반의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주력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디지털-전자-정보산업 메카로 도약 권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자동차, 섬유 등 지역 특화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촉진



지역	육성방향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일반기계, 철강 등 지역 특화산업의 융복합화·스마트화를 통해 지식기반 기계클러스터 허브로 도약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분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청정식품 등 특화산업 육성 및 집적 강화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관광 산업 육성

나) 시·도별 주력산업 발전방향

지역	주력산업 발전방향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바이오 의료 등 서울형 유망 산업 상용화 전진기지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된 양재지역을 AI 중심의 연구·창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여 AI 융합 신성장 산업 육성 도모 (바이오의료) 바이오의료 분야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 및 동북권 균형발전 도모 (IT-제조업 융복합)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융·복합 촉진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메디컬, 지능정보서비스 등 도시형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기계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메디컬)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바이오 기술 응용산업분야의 기술·제품 육성 (클린에너지) 풍력,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부품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발전설비서비스 분야, 원전해체기술 등 중점 육성 (지능정보서비스) 핵심·응용기술개발과 융합을 통한 지역기업의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 도모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제어 융합기술 특화를 통한 기계부품의 기술 개선 및 공정운영의 최적화 추진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헬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헬스케어)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 및 ICT 융합, 신규 기술·제품 발굴을 통한 고용 및 매출 극대화 (분산형에너지) 유망품목 중심의 기술경쟁력 강화, 수요기반 기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매출 향상 지원 (첨단소재부품) 기존 기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공정 개선 지원, R&D사업화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 및 매출 향상 지원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의 성장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자동차) 첨단 자동차 분야의 글로벌 핵심 거점 도약을 위해 첨단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업유치 추진 (로봇) 창조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생태계 조성 및 문화·인력 양성 (바이오) 글로벌 5대 바이오 헬스산업시티 도약

지역	주력산업 발전방향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융합, 가전, 디지털생체의료, 금형 등 연관산업 집적 및 연계 강화 - (디지털생체의료) 의료산업 지역대응 체계 마련,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확보,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의료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 - (스마트가전)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중심의 기술지원과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가전산업의 경쟁력 제고 - (광융합) 광융합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집약형 강소기업 육성 - (복합금형) 산업간 연계·협력으로 금형기술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기술 확보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특구 중심으로 무선통신, 로봇, 바이오기능성소재 등 기술융합 생태계 조성 - (무선통신융합)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타깃기업군 집중지원을 통한 성장의 유도, 기업 간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발전 투자 지원 - (로봇지능화) 로봇지능화산업 타깃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혁신형 신기술기반융합기술 연구와 기업·혁신기관 공동 R&D 촉진 - (바이오기능성소재) 기술기관과의 협력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 바이오헬스케어협회, 창조센터 등과 연계한 유망기업 투자 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조선, 화학 3대 주력산업 구조고도화와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친환경자동차)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민간제안방식의 R&D 및 비R&D 패키지 지원 - (조선해양) 신산업 연계 및 기업보유기술의 Scale-up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정개선 R&D 및 기술 지원 - (첨단화학신소재) 공동협력 R&D를 통한 고부가 제품개발 지원, 수요 연계형 상용화 R&D 지원 강화 - (친환경에너지) 기술역량 기반 확보를 위한 이노비즈 인증지원, 소재-부품-제품 등 가치사슬의 중요도가 높은 핵심기업 선정·지원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수송기계부품, 정밀의료산업 클러스터링 강화 - (첨단수송기기부품)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등 이업종 간 융합얼라이언스 확대 - (정밀의료산업)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현 및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Digital City/거점전략을 통한 융합·지식서비스산업 집적 강화 - (IT융합) 지역산업 특성화를 위한 판교 규모의 신규 클러스터형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및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test-bed 조성 - (지식기반서비스) Digital City 간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주력산업 발전방향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레저휴양 청정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라믹신소재 성장거점화 - (웰니스식품) 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웰니스식품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세라믹복합신소재) 미래대응 기술기반 확보를 통한 세라믹복합신소재 산업·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레저관광산업과 대표산업의 기술융합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과 ICT 산업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다변화 - (디지털헬스케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분야의 첨단기기클러스터 조성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BT 생산·연구 클러스터 강화로 Bio-IT 메카 구축 - (스마트IT부품) 지능사회 촉진을 위한 스마트IT부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수송기계소재부품) 친환경 및 지능형 핵심원천기술 확보로 고부가가치화와 대내·외 경쟁력 강화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역량 집중 및 바이오식품 산업 집적강화 - (차세대디스플레이) OLED·차세대디스플레이 분야 집중육성으로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친환경 자동차부품) 4차산업 융합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의 집중육성 및 성장역량 극대화 - (바이오식품) 천연 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식품, 탄소·복합소재 등 신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 (농생명소재식품) 농생명식품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및 특화자원 수출사업화 확대를 통한 기업 육성 - (지능형기계부품) ICT 융합 기술 및 특화분야의 집중 지원으로 지능형기계부품의 스마트화 기반 마련 - (탄소·복합소재) 탄소·천연복합섬유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복합섬유소재 시장 확대 - (해양설비기자재) 중소형 선박, 친환경 기자재 등의 수요시장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기자재 개발

지역	주력산업 발전방향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에너지산업, 첨단운송기기부품 성장기반 확충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친환경 생물자원 고부가가치화와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첨단운송기기부품) IoT기반 첨단 운송기기 통합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및 부품 고급화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및 바이오소재 육성 기반 조성 - (지능형디지털기기)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연계한 융합 기기 및 부품 분야 중점 육성을 위한 디지털-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구축 - (하이테크성형가공) 단순 생산형 성형에서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술개발 및 유망품목 개발지원 - (바이오부티) 미래성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특화된 웰빙 전통식품과 기능성화장품 중심의 유망품목 기술개발 추진 - (기능성섬유) 경북(소재)-대구(공정)-부산(완제품) 지역 및 스트림 간 연계를 통한 창조적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항공, 조선 등 주력산업 IT 융복합으로 지식기반 클러스터 메카로 전환 - (지능형기계) ICT 융·복합 기술개발로 지능형기계 기술고도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의 조성, 기술기업 지원체계 마련 - (항공) 연구거점의 성장기반 조성, 핵심기술의 국산화율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판로 개척 - (나노융합부품) 나노융합산업 집적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추진, 차세대 나노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항노화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항노화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합산업 육성 및 스마트에너지 연관산업 창출 -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그리드 실증모델 검증 및 서비스제품 창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 (지능형관광콘텐츠) ICT 융합 플랫폼 기반의 전문 기술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청정헬스푸드) 청정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소재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육성



2) 시·도별 입지 공급 방향

시도	입지공급 방향(지역 전략산업 중심)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대림, 운수·영등포 문래, 구로·금천 등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리모델링 및 산업구조 고도화 · 마곡단지를 중심으로 융합신산업(IT, BT, NT, GT)의 Hub 도시 조성 ·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산업, 도심권 도심특화산업, 강남·삼성 등 동남권은 IT 관련 및 사업서비스업 등 권역별 특화산업 입지 공급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권은 기계부품산업, 동부산권은 IT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중부산권은 도시형 서비스 산업입지 고도화 · 신평·장림산단, 사상·금사 공업지역의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 바이오메디컬산업은 지사외국인, 강서보고, 지사2, 오리일반, 지사 글로벌 등에 유치 · 지능형기계부품은 로봇기반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모라도시첨단, 미음 등 집적 · 지능정보서비스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도심권 산단(사상, 신평·장림)의 스마트화 등 IoT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 육성 · 클린에너지산업은 녹산산단을 중심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지사글로벌 등에 집적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국가 및 도시첨단산단에 유망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노후 공업 지역 재정비를 통해 주력산업의 고도화 추진 · 의료헬스케어는 신서혁신도시 도시첨단, 수성의료지구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관련서비스 산업 유치 · 분산형 에너지는 에너지 실증 테스트베드(국가, 테크노폴리스 등) 구축과 실증모델 및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첨단소재부품은 대구3~성서산단 등 도심산단의 재생을 추진하여 정밀성형, 지식서비스, 섬유산업을 집적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의 첨단제조업 맞춤형 토지를 신규 공급 · 특화형 산업단지 공급 및 복합이용 활성화로 업종구조고도화에 대응하고 노후산단 공장 재배치 및 재정비 추진 · 첨단자동차산업은 남동·주안 산단 리모델링 및 검단2, 서운산단 등 신규개발 공급 · 로봇, 바이오, 항공산업은 송도지구(바이오단지,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클러스터단지), 영종 항공일반, 남동도시첨단, IHP도시첨단 등에 집적

시도	입지공급 방향(지역 전략산업 중심)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자동차 밸리,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과 주력산업간 연계에 위해 주요산단에 연접한 산단 조성 및 미분양 산단에 입지 공급 • 스마트가전산업은 주요 대기업이 인접한 진곡, 빛그린산단에 유치 • 복합급형은 타 주력산업이 집적한 첨단, 하남산단 인근 진곡, 평동, 빛그린 등에 집적 • 디지털생체의료, 광융합은 광주첨단,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특구에 집적 • 에너지산업은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추진 •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빛그린산단에 집중 유치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도심형 일반산단(평창, 하소친환경) 등에 주력산업(무선통신융합산업, 로봇지능화, 바이오기능성소재 등) 집적 • 대전 1, 2산단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환경개선 및 업종고도화 추진 • 금속가공, 지능형기계, 광전자융합산업은 재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집적 추진 • 대전형 QWL 밸리조성사업 모델 정립을 통해 노후산단에 대한 기반 시설 지원 강화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주력산업 입지수요는 다소 줄고 미래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육성에 따른 관련 입지공급 강화 • 친환경자동차부품은 미포산단 리모델링을 통해 단품 및 모듈부품 중심, 단위부품 및 소재 가공은 길천, 울산 High Tech Valley 중심으로 유치 • 조선해양산업은 동구, 울주, 남구 지역 등에 신규 공급을 검토 • 첨단화학신소재는 길천산단 및 신규공급을 검토 • 친환경에너지는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조성을 통해 기업 및 연구시설 집적화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인 정밀의료, 첨단수송부품 관련 특화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등 계획입지 위주로 조기 공급 • 북부권은 화장품, 자동차부품 중심의 천안·아산 등과 연계 집적 • 동남권은 첨단수송기기부품, 기계 중심의 대전·충북 등과 연계 집적 • 정밀의료는 세종첨단일반, 세종미래일반 산단 등에 집중 유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산업 특성화 벨트 및 산업배치 전략에 따라 5대 권역별 산업 특성에 따른 산업입지의 효율적 공급 추진 • 경부권역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공급하여 첨단지식서비스산업 유치 • 서해안권역은 기계·장비 등 대규모 기간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노후 산업기반시설 정비 효율화 • 동부권역은 산단 개발이 제한적임으로 산업활성화와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관리 • 경원권역은 전통 제조업 산업구조 개편 지원 • 경의권역은 기업집적시설, 벤처 육성촉진 지구 등 활성화 유도



시도	입지공급 방향(지역 전략산업 중심)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대 권역단위로 기존 미분양 산단 및 기개발 산단을 우선 활용하고 후 평일반, 문막 일반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입지 고도화 추진 웰니스 식품은 강릉과학일반, 남춘천일반, 방림농공, 우천일반 등에 집적 세라믹복합신소재는 강릉과학, 플라즈마일반 산단 중심으로 입지공급 레저휴양지식서비스는 수도권 인접지역 중심으로 IT·SW 기업 집적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발전부품,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산업 중심으로 산업입지 공급 확대 스마트IT부품은 오창과학,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등에 집적 바이오헬스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기 조성된 오송제2생명 활용 및 향후 오송제2국가 등 추가 산단 조성 수송기계소재부품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테크노폴리스 등에 집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산업클러스터에 기업 집적을 유도하고 필요시 신규산단 조성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탕정테크노일반, 탕정일반, 아산스마트밸리 일반, 염치일반산단 등에 관련 기업 유치 친환경자동차부품은 서산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하고 서산오토밸리, 서산테크노밸리일반, 서산남부일반 등에 집적 바이오식품산업은 내륙 및 금강권 중심의 바이오산업벨트로 구축 하고 세종일반, 송선일반산단 등에 기업 집적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첨단 ICT 산업육성 융합클러스터 조성, 성장 산업인 이차전지, ICT융합 등 융복합 산업으로의 변화 추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지역 산업 동향을 감안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방향으로 입지 공급 농생명소재부품은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가 중점 추진 중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첨단과학일반, 익산제4일반, 지평선일반 등에 집적 지능형기계부품산업은 자동차·농기계부품 등 전방산업이 집적한 새만금지구국가, 익산제3일반, 완주테크노밸리제2일반산단 등에 집적 탄소·복합소재는 탄소 특화산단 지정에 따라 익산제4, 익산제3, 정읍 첨단과학, 새만금지구국가 등에 집적 해양설비기자재는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군산 국가산단에 인접한 새만금지구국가, 익산제4일반, 익산제3일반 등에 집적

시도	입지공급 방향(지역 전략산업 중심)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조성된 면적을 포함한 미분양 면적이 많음으로 기 조성 산단 및 미개발 산단 위주로 개발 추진 · 바이오헬스케어소재는 나주혁신, 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등에 집적 · 첨단운송기기부품은 고흥지역에 투자된 우주·항공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영광대마산단 e-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구축 · 에너지신산업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나주혁신산단, 빛그린산단 등에 에너지 관련 소재, 부품, 완제품, 복합분야 가치사슬 구축 · 청색·청정환경은 신금일반, 강진산단, 해룡산단, 황금산단, 장흥바이오산단 등에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자연모사 청정생산기반 조성 등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지정된 단지를 우선 활용하여 산업별 클러스터 촉진 유도 · 지능형디지털기기는 구미국가 확장단지, 구미국가 스마트화를 통해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기존 전자산업의 다각화를 위한 입지공급 · 하이테크 성형가공은 기존 집적지인 경산, 포항 등의 경산제3, 경산제4, 포항블루벨리, 영일만일반 등 기존 분양단지를 활용 · 바이오부티는 경북바이오, 영일만일반, 상주한방, 영주두전 등 바이오·식품산단을 중점 활용 · 기능성 섬유는 경산, 칠곡, 구미 등 대구 인근의 기존 산업집적지에 집중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국가 스마트산단 구축 및 스마트산단 지역 확산을 추진하고 개발 중인 국가산단 등의 조기 공급 추진 · 지능형 기계는 창원국가 스마트산단 구축, 김해서부, 김해대동첨단 등 신규 산업입지 공급 추진 · 항공은 진주사천 항공국가, MRO 신규산단의 조속한 공급 추진, 사천 1·2산단 구조 고도화 추진 · 나노융합부품은 나노국가산단에 관련 기업 및 혁신기관 등을 집중 유치 · 항노화바이오는 서부경남 중심(진주, 거창, 함양, 산청 등)으로 기존 산단 활용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특성을 고려, 제주형 제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입지 공급 · 청정헬스푸드는 제주시 중심의 클러스터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중심으로 공급 · 지능형 관광콘텐츠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심으로 집적 유도 · 스마트그리드는 제주첨단 1·2단지에 IT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신지능형전력서비스, EV충전인프라 등을 제주도내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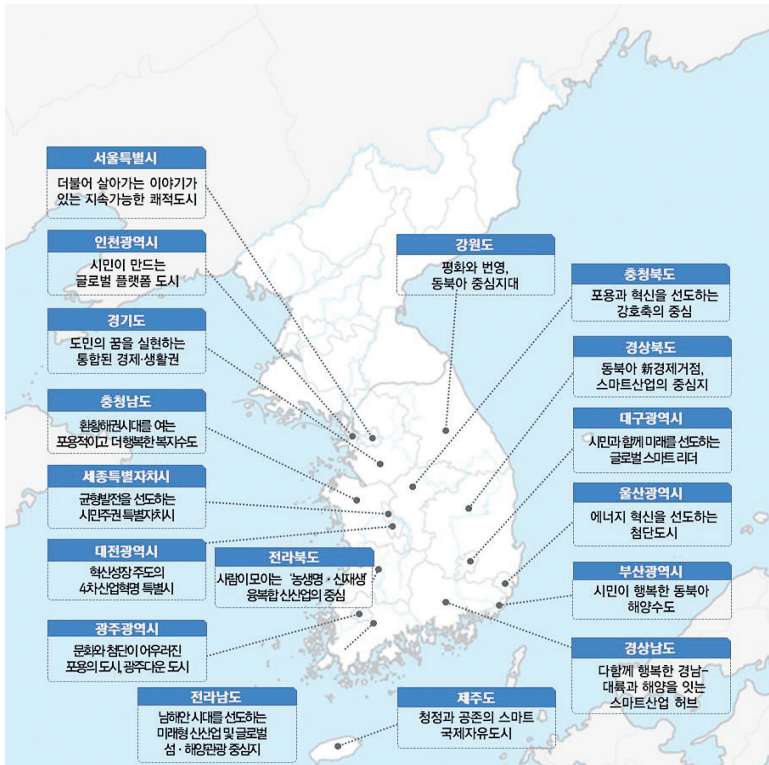
* 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220호)

▶ 나. 시·도별 발전방향(산업부분 요약)

-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 목표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광역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을 촉진·지원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위해 시·도별 목표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자율적·다원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 중앙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검토
- 시·도별 발전목표와 전략은 향후 도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의 근거로 활용되며, 시·도는 제시한 목표와 전략 이행을 위한 노력 추진

* 지역발전방향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추후 정부계획, 타당성 조사,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과제 추진여부 결정

[시·도별 발전 비전]



시도	발전방향
서울	<p>비전 :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지속가능한 쾌적도시</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공간 조성 - 구로·가산 디지털 산업단지로의 산업집적 촉진과 준공업지역 관리
부산	<p>비전 :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태평양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기능 특화를 통한 다핵 연계형 발전거점 육성 - 동남권 선도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가기간산업의 거점 역할을 위해 동남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검토 - 북항 통합개발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철도시설 재배치로 도심공간 구조 개편 •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 및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산업 스마트·저탄소 시스템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녹색기술 산업 유치 - 문현혁신지구 중심으로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검토
대구	<p>비전 :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리더</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성장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 기반의 5+1 전략산업(물·의료·에너지·로봇·미래형자동차+스마트시티) 집중 육성 - 전통 제조업(섬유·기계·안경·뿌리산업 등)에 대한 스마트기술 기반 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생존 경쟁력 강화
인천	<p>비전 : 시민이 만드는 글로벌 플랫폼 도시</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항만 등의 입지적 강점을 충분히 살린 지역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과 산업재생 추진 - 남·북한 긴장 완화에 따른 수도권 서해평화협력시대에 대응



시도	발전방향
광주	<p>비전 :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포용도시, 광주다운 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분야 실증타운 조성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광주 산업생태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빛그린 산단 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구축 -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광 · 융합산업 맞춤형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광주의 기 구축된 가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공기산업으로 대체 육성 - 광주 친환경 자동차 혁신 전진기지 조성, SW기반 커넥티드카 부품산업 육성 및 신산업 벤처생태계 조성 - 수소산업 허브도시 조성
대전	<p>비전 : 혁신성장 주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소 · 벤처기업 육성 및 대전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울산	<p>비전 :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세종	<p>비전 :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혁신기반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국가시범도시(5-1생활권) 조성 - 국가 전략핵심 신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국가산업 단지 조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 국가혁신융합단지(클러스터) 육성 검토 - 청년 창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창업 육성 · 지원 시스템 구축 - 국제적 수준의 MICE산업 육성
경기	<p>비전 :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 · 생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 에너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의 연동화 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격차 완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 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 및 권역별 거점형 창업허브 조성 -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시도	발전방향
강원	<p>비전 :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혁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헬스 · 모빌리티 · 관광 등 스마트 라이프산업의 중점 육성 국가산업단지 및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신성장거점 육성 미래 강원 농도(農道) 실현을 위한 푸드테크 거점 조성 글로벌 평화관광지대 조성 추진 검토 동계올림픽특구 평화관광벨트 및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관광휴양클러스터 구축 힐빙(Heal-Being) 포용 국민여가공간 조성
	<p>비전 :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 산업공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바이오헬스 선도지역 조성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클러스터 거점 구축 및 신에너지기술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존 산업 지능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 · 육성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 농 · 축산업 육성 강소특구, 규제자유특구(스마트안전제어, 바이오의약, 화장품 산업) 추진 정부 시스템 반도체 육성정책과 연계, 반도체 특화지역 거점 구축
충남	<p>비전 :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통합적 지역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도시 공간구조를 형성 및 스마트 도시권(Smart city & region)을 육성 혁신 · 균형성장과 자립적 경제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과 균형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
	<p>비전 :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 ·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신성장 중심지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을 첨단산업 · 문화관광 · 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 - 5개 권역 · 5대 축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국토의 신성장 지대로 도약 전북에 집적화된 농생명 혁신자원의 발전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종자 · 농기계 · R&D로 연계된 농 · 생명 산업벨트 구축 - 정보통신기술(CT)과 생명공학기술(BT)이 융합된 농 · 생명 가치사슬 완성 에너지 · 신기술 융 · 복합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대한민국 신산업지대로 조성 - 친환경 · 지능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연계한 전기 · 수소 자율주행 전진 기지 조성 - 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
전북	



시도	발전방향
전남	<p>비전: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및 글로벌 섬·해양관광 중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 이코노미를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공대 중심 산학연이 융복합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블루 에너지) - 생물·의약 기반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블루 바이오) - 우주항공·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e-모빌리티산업 육성(블루 트랜스포트) -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경북	<p>비전: 동북아 신경제 거점, 스마트산업의 중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신산업 융합 클러스터 조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과 농림어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전략산업 선도기반 구축 - 스마트산업에 대응한 과학기술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구축 -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농·산·어업 육성
경남	<p>비전: 다함께 행복한 경남 - 대륙과 해양을 잇는 스마트산업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진출거점 기반 마련 및 주력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제조업 재도약 및 스마트산업화 확산 - 경남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신산업 스케일-업 지원
제주	<p>비전: 청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조성 - 제주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 전기차 특구 조성 검토 - 의료·힐링·뷰티 등 제주형 웰니스관광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 자료 : 국토교통부(202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부분 발췌

2. 시·도별 입지현황

입지명 / 광역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국가산업단지	○	○	○	○	○	○
일반산업단지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농공단지		○	○		○	
임대전용산업단지			○		○	
국민임대단지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	○		○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경제자유구역		○	○	○	○	
자유무역지역				○		
새만금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첨단의료복합단지			○			
뿌리산업특화단지		○	○	○	○	
물류단지	○	○		○		○
환경산업연구단지				○		
산업기술단지	○	○	○	○	○	○
벤처기업촉진지구	○	○	○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		○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	○	○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		○	○
혁신도시		○	○		○	○
규제자유특구		○	○		○	○
지역특화발전특구	○	○	○	○	○	○



입지명 / 광역시·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국가산업단지	○		○	○	○	○
일반산업단지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농공단지	○	○	○	○	○	○
임대전용산업단지			○	○	○	○
국민임대단지				○	○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	○	○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			
경제자유구역	○		○	○	○	
자유무역지역	○		○	○		
새만금						
기업도시				○	○	○
연구개발특구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	○
첨단의료복합단지					○	
뿌리산업특화단지	○		○		○	
물류단지	○		○	○	○	○
환경산업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	○	○	○	○	○
벤처기업촉진지구	○		○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		○	○	○
혁신도시	○			○	○	○
규제자유특구	○	○		○	○	○
지역특화발전특구	○		○	○	○	○

입지명 / 광역시·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산업단지	○	○	○	○	○
일반산업단지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농공단지	○	○	○	○	○
임대전용산업단지	○	○	○	○	
국민임대단지	○	○	○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	○	○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경제자유구역		○	○	○	
자유무역지역	○	○		○	
새만금	○				
기업도시		○			
연구개발특구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뿌리산업특화단지	○	○	○	○	
물류단지	○		○	○	
환경산업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	○	○	○	○
벤처기업촉진지구	○	○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	○	○	○
혁신도시	○	○	○	○	○
규제자유특구	○	○	○	○	○
지역특화발전특구	○	○	○	○	○



3. 유턴기업 지원제도

▶ 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1) 선정요건

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제조업, 정보통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상) 업종으로,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연구개발업의 생산량 축소는 기준경상연구개발비의 10%~25%이상 축소

다)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국내모기업(국내모기업이 없는 경우, 국내 신청기업의 소유주)의 실질적 지배자가 해외사업장을 실질적 지배(지분 30%이상 보유 등)하고 있을 것

라)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 단, 소분류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하거나 생산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평가를 통해 인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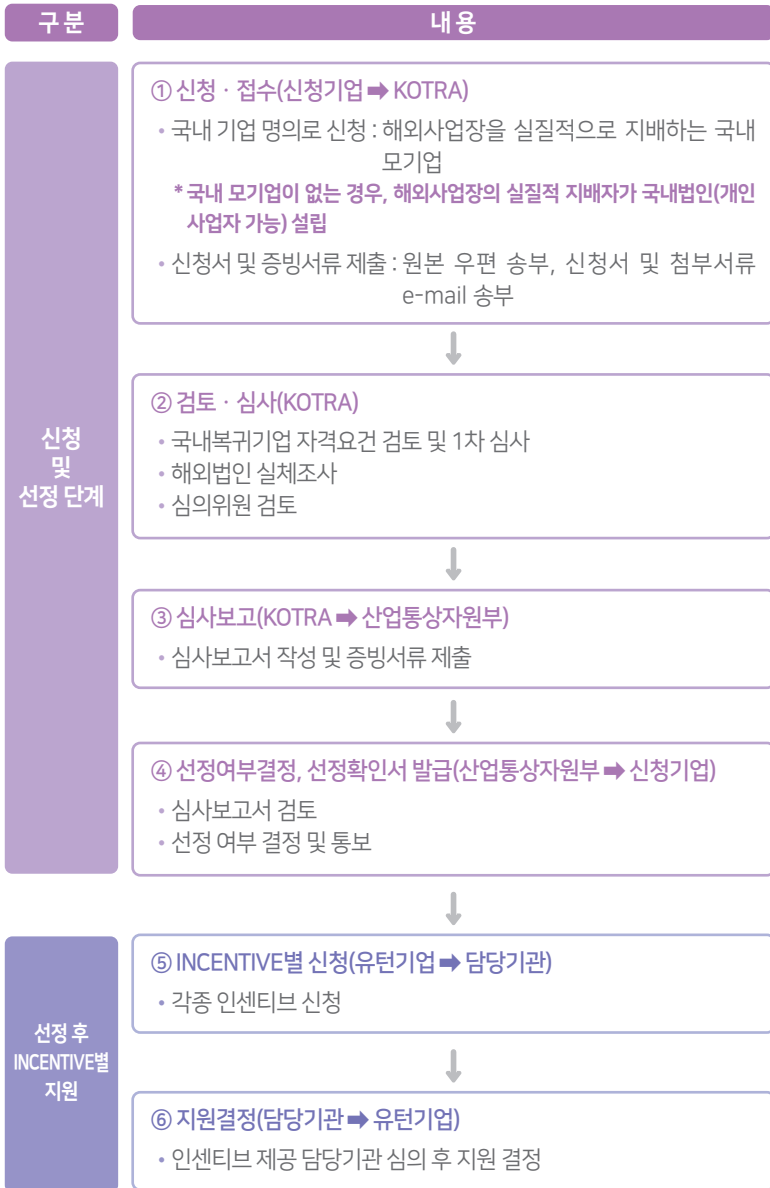
※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혜택(조세,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신청 시점 유의사항

● 신청 시점 기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또는 국내사업장 투자를 이미 완료한 기업은 신청기한이 존재한다.

*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점에, 구조조정 “완료”와 국내투자 “완료”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사업장 투자 준비중인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3)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이전에도 구조조정 컨설팅(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복귀 기업 선정이 되더라도 INCENTIVE 지원기관별 추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4) 신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신청서(스캔) 및 첨부서류 : E-mail 송부(reshoring@kotra.or.kr)
- 신청서(원본) : 우편 송부(서울 서초구 현릉로 13, KOTRA 유턴지원팀)
- 문의 : 02-3460-7361~5

▶ 나. 사후관리

1)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이행완료 기한** :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신청서5호) 및 국내사업장 투자(신청서 6호)를 계획으로 제출한 기업은 선정일 기준으로 해외사업장은 4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는 5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선정일 이전부터 생산량을 축소해 온 기업은 축소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완료

2) 국내복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 해외사업장 축소로 신청한 기업 : 축소완료일의 차기 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 축소 유지
- 국내사업장 기 보유한 기업 : 투자사업장 신·증설완료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 : 보조금 정산 신청일(신청한 달의 1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 다. 인센티브 요약

1) 단계별 지원제도 및 종류



2) 지원제도 세부내용

구분	내용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사업 이용 시, 최대 USD20,000 지급 · 사용하던 중고 자본재, 사용할 신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50~100% 감면 · 이전 운송비, 수수료 등 11~44% 지원
국내사업장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토지매입비용, 건설투자비용, 기계 구입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원 · K-제조업 및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Lv.2, 로봇 제조 활용혁신 등 스마트 공장 보조금을 지원 · 인력 충원 시 고용보조금(중소기업 월60만/1인)과 해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사업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최장 7년, 50~100% 감면과 시설·운영자금 융자, 보증 보험 우대 등, 금융분야에서 지원 · R&D를 지원하고, IP(지적재산권)을 보호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영 애로 등을 상시 경청하며, 국내복귀기업의 성장을 지원

3) 기업유형, 복귀지역별 지원제도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복귀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이외)	수도권 (과밀이내)	비수도권	수도권 (과밀이외)	수도권 (과밀이내)
보 조 금	투자	입지	○	×		×		×
		설비	○	△		○		△
	이전	○			○			
조 세	법인소득세		○	○	×	○	○	×
	관세							
인 력	고용창출장려금		○			×		
	외국인 고용	E-7	모두 지원					
		E-9	○			×		
구조조정컨설팅			○			×		
스마트공장			○			×		
입지지원			○	×	×	○	×	×
금융지원			○			×		
지적재산권			○			×		
보증·보험우대			모두 지원					
R&D								

* 세부요건 및 필요서류 등은 담당기관별 문의 필요
(담당기관 문의 02-3460-7361~5)

※ 자료제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유턴지원팀)

4. 산업안정을 위한 제도

▶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 목적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6년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2018년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범위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

2) 지정기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3)

- 최초 지정시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한번만 연장 가능(최대 4년)

3) 지원내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4)

- 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 나)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 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마)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 바)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지정된 지역별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별도 문의 필요

4) 지정기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세부기준

①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text{(입지계수 } LQ_i = \frac{Y_i^r}{Y_i^n} \Big/ \frac{Y_i^r}{Y_i^n}, Y_i^r : r\text{지역(전국) } i\text{산업 종사자수, } Y_i^{r(n)} : r\text{지역(전국) 전체 종사자수}$$

2.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

3.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text{(다양성지수 } DI_i = \frac{1}{\sum_j (\frac{Q_{ij}}{Q_j})^2} \cdot Q_{ij} : j\text{지역내 } i\text{업종 종사자수, } Q_j : j\text{지역 업종별 종사자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1.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 나. 주된 산업 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2.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역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 나. 지역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0이상 감소
 - 다.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3. 그 밖에 대내외 경제여건변화, 기술변화, 기업활동 등 특정산업 및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지역경제의 침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6) 관련규정, 참고자료 · 사이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 천준혁(2020),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노드미디어

▶ 나. 고용위기지역

1) 목적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집중 지원

2) 지정기준(고시 제4조제1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및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사유) 등의 증감 및 경제·산업·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지정요건]

유형	요건
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그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유형	요건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유형의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수 비율 등 실업지표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위기지역 내 사업주, 근로자 및 실업자 등

- 지원내용 :

- ①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및 재취업
- ② 직업훈련 기회 확대
- ③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 ④ 지역 일자리 창출 등

* 예 : 사업주 훈련지원 및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장 휴업·휴직시 지원수준 인상,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청년센터 설치 등

4) 지원기간(고시 제3조 및 제7조제2항)

- 최초 지원 2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5) 문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6) 관련규정, 참고자료·사이트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2021 외국투자자를 위한 입지가이드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02월

집 필 | 변경현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868-4 (93320)
979-11-6490-869-1 (95320)
(PDF)

|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